농촌마을개발자총괄계획과 면지.pdf 1 2014-01-21 오전 10:15:35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04-01

http://rri.ekr.or.kr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운용 실태평가 및 향후 발전모델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Master Planner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2013. 12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어촌공사
ISO 9001 / ISO 14001 인증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운용 실태평가 및 향후 발전모델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미 영
연 구 원 : 임 상 봉
허 윤 진
위촉연구원 : 장 보 람
조 인 우
윤 석 재

요 약 문

1. 연구과제명 :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운용 실태평가 및 향후 발전모델 연구

2. 연구기간 : 2013. 3. ~ 2013. 12.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운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괄계획가 운용시스템이 안정적·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내용과 방법

4.1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 제도를 파악하고 시범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에 따른 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한다.

○ 제3장에서는 국내·외 총괄계획가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괄계획가 제도가 안정적·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운영지침 및 체계를 보완하여 총괄계획가 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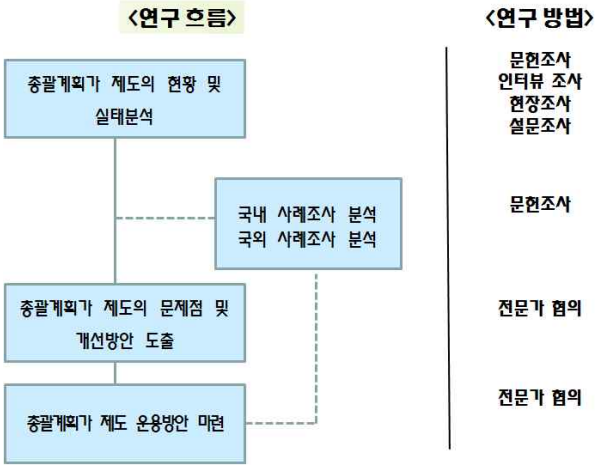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4.2 연구방법

○ 문헌 및 사례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계획가 제도 검토, 총괄계획가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및 사례를 검토한다.

○ 현장조사·설문조사: 총괄계획가 2차 시범지구 8개를 대상으로 3차례의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총괄계획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계획수립자, 지역주민에게 총괄계획가의 주요활동내용,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상의 장·단점, 행정적 지원내용 등을 조사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 1차 현장조사: 2013.5.9.~10, 14~16, 21~23(8일간), 제주, 충남 홍성, 강원횡성, 충북보은, 경북봉화, 경남합천
- 2차 현장조사: 2013.8.5~6, 29~30(4일간), 전남진도, 전북임실, 제주
- 3차 현장조사: 2013. 11.11~21(8일간), 강원횡성, 충남홍성, 충북보은, 경북봉화, 경남합천, 전북임실, 전남진도

○ 인터뷰조사: 1차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 모니터링팀,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문광부 문전성시사업 관련 컨설팅단을 방문하여 관련제도 현황을 파악한다.

5. 연구결과

○ 지금까지의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의 운영실태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소한 1회 교육과 2회 워크샵이 운영되어야 하고, 2회의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 교육, 워크샵, 모니터링 시기는 각 사업 단계별로 <그림 2>와 같이 적정시기·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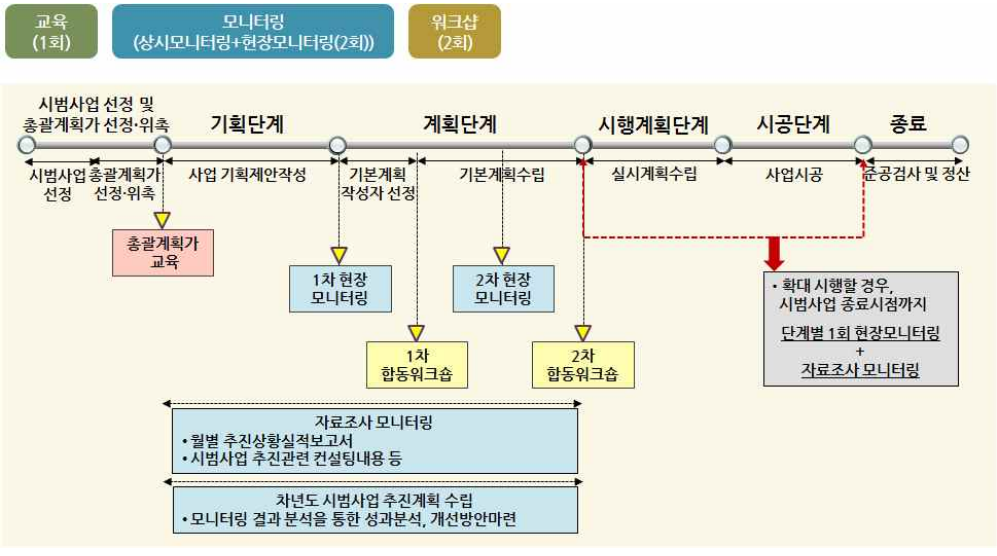

<그림 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 프로세스(안)

○ 총괄계획가 제도 주요 개선방안(안)은 크게 선정 및 위촉, 추진주체, 추진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정 및 위촉부분에서는 인력풀 제공,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 주체 일원화, 총괄계획가 선정 평가기준 구체화, 총괄계획가 충분한 활동기간 확보가 개선되어야 하고,
- 둘째, 추진주체 부분에서는 총괄계획가 권한 강화, 추진단계별 역할 명확화,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협의회 운영방식 개선, 실무계획가 역할 명확화, 지역총괄계획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셋째,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기획제안서 제출방식 개선, 기본계획 수립자 선정과정 개선, 기본계획 승인절차 개선, 총괄계획가 활동횟수 및 보수기준 개선, 사업추진과정 관리강화,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 교육 및 워크숍, 시범사업 정보교류 장 마련,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방법은 (표 1)에서와 같이 업무지침, 모니터링, 컨트롤타워 지원 형식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총괄계획가 제도 주요 개선방안(안)

구분	내용	개선방안	수단		
			업무지침	모니터링	컨트롤타워 지원
선정 및 위촉	총괄계획가 인력풀 제공	- 지자체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총괄계획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인력 풀 제공			○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주체의 일원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 및 위촉	○		
	총괄계획가 선정 평가기준 구체화	- 총괄계획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		
	총괄계획가 충분한 활동기간 확보	- 총괄계획가 선정시기 조정 -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사업종료시까지 확대	○		
추진 주체	총괄계획가 권한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하여 위상확보 - 지자체협조 미흡시 지침 준수토록 조치	○		○
	추진단계별 역할 명확화	- 교육시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명시, 참여주체별 총괄계획가 역할 명시	○		○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 시범사업 추진주체 이견발생 시 조정역할 - 시범사업 추진과정 자문 - 전문분야의 자문 - 컨트롤타워 현장 모니터링 시 모니터링 수행 - 사업지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
	컨트롤타워 신설	- 사업일정, 예산, 추진주체 등에 관한 지구별 시범사업 추진과정 관리 -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 수시 행정지원 및 시범사업 실적보고 자료관리 - 주 민 및 지자체 사업 행정사항 지원	○		

구분	내용	개선방안	수단		
			업무지침	모니터링	컨트롤타워 지원
		- 지자체담당자 및 주민대상 교육활동지원 - 조정자문위원회 운영 - 전문가 풀 제공 - 시범사업 성과 홍보 - 시범사업 백서발간 -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추진협의회 운영방식 개선	- 기존 구성된 위원회 및 협의회 활용	○		
	실무계획가 역할 명확화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 - 행정업무 수행 - 기타 세부 권한 및 역할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조정 가능	○		
	지역총괄계획가 활용방안 마련	- 역할 및 권한, 업무범위 등 제시	○		
추진과정	기획제안서 제출방식 개선	- 기획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시기 제시	○		
	기본계획수립자 선정과정 개선	- 용역발주방식에 대한 총괄계획가 권한 명기	○	○	○
	기본계획 승인절차 개선	- 시범지구에 한해 시·군·구청장 승인	○		
	총괄계획가 활동횟수 및 보수기준 개선	- 활동횟수 및 최대지급가능 수당 제시	○		
	사업추진과정 관리강화	- 지자체 월별 사업추진보고서 작성추가 (내용: 회의안건 및 조치결과 등)			○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지표 제시	○	○	○
	교육 및 워크숍	-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 교육시기 및 프로그램 마련			○
	시범사업 정보교류장 마련	- 시범사업 운영관련 제반사항 공유 -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우수한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	○

목 차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1. 연구의 내용 ····· 4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제도 현황 및 쟁점 ····· 9
제1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 ····· 9
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내용 ····· 9
2.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당면과제 ····· 20
제2절 총괄계획가 제도 개요 ····· 22
1. 제도개념 ····· 22
2. 법적근거 ····· 23
3. 시범사업 추진절차 ····· 26
4. 시범사업 추진주체 및 역할 ····· 28
5. 자격기준 및 운영 ····· 31
6. 보수 ····· 32
7. 조정자문위원회 ····· 32
제3절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 ····· 33
1. 2012년 1차 시범사업 ····· 33
2. 2013년 2차 시범사업 ····· 42
3.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 및 한계점 ····· 95

제3장 국내·외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사례 ····· 109
제1절 국내사례 ····· 109
1. 국토교통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109
2.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 121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 126

제2절 국외사례 ····· 135
1. EU의 LEADER 프로그램 ····· 135
2. 독일 바이에른 주(州) LEADER 사례-지역활동그룹 알트뮐-유라 ·· 146
제3절 소결 ····· 157
1. 국내사례 ····· 157
2. 국외사례 ····· 168

제4장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방안 ····· 173
제1절 총괄 ····· 173
제2절 선정 및 위촉 ····· 176
1. 인력풀제공 ····· 176
2.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주체 일원화 ····· 176
3. 총괄계획가 선정 평가기준 구체화 ····· 177
4. 총괄계획가 충분한 활동기간 확보 ····· 178
제3절 추진주체 ····· 179
1. 총괄계획가 권한 강화 ····· 179
2. 추진단계별 역할 명확화 ····· 179
3.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 181
4. 컨트롤타워 신설 ····· 182
5. 추진협의회 운영방식 개선 ····· 183
6. 실무계획가 역할 명확화 ····· 184
7. 지역총괄계획가 활용방안 마련 ····· 184
제4절 사업추진과정 ····· 185
1. 기획제안서 제출방식 개선 ····· 185
2. 기본계획수립자 선정과정 개선 ····· 186
3. 기본계획 승인절차 개선 ····· 186
4. 총괄계획가 활동횟수 및 보수기준 개선 ····· 187
5. 사업추진과정 관리강화 ····· 188
6.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 ····· 188
7. 교육 및 워크숍 ····· 190
8. 시범사업 정보교류 장 마련 ····· 191
9. 인센티브 제도 마련 ····· 194

참고문헌 ····· 195

표 차 례

(표 2-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 9
(표 2-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 대상사업 ····· 10
(표 2-3) 지역개발계정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대상사업 ····· 10
(표 2-4) 일반농산어촌(117개 시·군) 지역현황 ····· 13
(표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내용 ····· 14
(표 2-6) 유형별사업 주요내용 ····· 14
(표 2-7) 기능별사업 주요내용 ····· 15
(표 2-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사업의 세부내용 ····· 16
(표 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적 ····· 19
(표 2-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 20
(표 2-11)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및 권한 ····· 29
(표 2-1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사업추진 점검기준 및 지표 ····· 33
(표 2-13) 2012년 1차 시범사업지구 선정결과 ····· 34
(표 2-14) 2012년 1차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선정결과 ····· 34
(표 2-15) 1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총괄계획가 ····· 40
(표 2-16) 1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지방자치단체 ····· 40
(표 2-17) 1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총점(총괄계획가+지방자치단체) ·· 40
(표 2-18) 2013년 2차 시범사업지구 선정결과 ····· 42
(표 2-19) 2013년 2차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선정결과 ····· 43
(표 2-20) 2013년 2차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선정일자 ····· 45
(표 2-21) 2013년 2차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현황 ····· 45
(표 2-22) 2013년 2차 시범사업 지자체 전담부서 현황 ····· 46
(표 2-23) 2013년 2차 시범사업 기획제안서 관련사항 ····· 48
(표 2-24) 2013년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작성자 선정관련 사항 ····· 49
(표 2-25) 2013년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역할 ····· 51
(표 2-26) 2013년 총괄계획가 2차 시범사업 추진절차(3월~10월) ····· 53
(표 2-27) 2013년 2차 시범사업 실무계획가 현황 ····· 56
(표 2-28) 2013년 2차 시범사업 지역총괄계획가 활동내용 ····· 57
(표 2-29) 2013년 2차 시범사업 조정자문위원 현황 ····· 58

(표 2-30) 지역개발 총괄계획가 교육 주요 프로그램 내용 ····· 61
(표 2-31) 총괄계획가 2차 합동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 내용 ····· 62
(표 2-32)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대상 설문조사 내용 ····· 63
(표 2-33)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대상 설문조사 내용 ····· 64
(표 2-34)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단점 ····· 65
(표 2-35) 적절한 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 66
(표 2-36)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 66
(표 2-37) 총괄계획가 수행 시 어려웠던 점(중복응답) ····· 67
(표 2-38) 총괄계획가 적정 구성인원 ····· 67
(표 2-39)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선정방식 ····· 68
(표 2-40) 총괄계획가 업무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 ····· 68
(표 2-41) 총괄계획가 1회 활동비 개선의 필요성 ····· 69
(표 2-42) 적정한 총괄계획가 자격조건 ····· 69
(표 2-43) 총괄계획가 관련 실무계획가 관련 사항 ····· 71
(표 2-44) 기획제안서 관련 사항 ····· 73
(표 2-45) 기본계획 작성자 선정 관련 사항 ····· 75
(표 2-46) 기본계획 수립관련 사항 ····· 76
(표 2-47) 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 77
(표 2-48) 모니터링 필요성 및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 ····· 77
(표 2-49)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 78
(표 2-50)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 79
(표 2-51)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 79
(표 2-52)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 80
(표 2-53) 총괄계획가 제도 상 바람직한 컨트롤타워 역할 ····· 81
(표 2-54) 향후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 의향 ····· 81
(표 2-55)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기타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 82
(표 2-56)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단점(중복응답) ····· 83
(표 2-57) 적절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 84
(표 2-58)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활동기간 ····· 84
(표 2-59)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역할(중복응답) ····· 85
(표 2-60) 지역총괄계획가 수행 시 어려웠던 점(중복응답) ····· 85
(표 2-61) 지역총괄계획가 적정 구성인원 ····· 86
(표 2-62) 적정한 지역총괄계획가 자격조건 ····· 86

(표 2-63)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방식 ····· 87
(표 2-64) 지역총괄계획가 업무 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 ····· 87
(표 2-65) 실무계획가 관련 사항 ····· 89
(표 2-66)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 90
(표 2-67) 모니터링 필요성 및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 ····· 91
(표 2-68)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 92
(표 2-69) 조정자문위원회 바람직한 역할 ····· 92
(표 2-70)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 93
(표 2-71)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 93
(표 2-72) 바람직한 컨트롤타워 역할 ····· 94
(표 2-73) 향후 지역총괄계획가 활용 의향 ····· 94
(표 2-74)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기타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 95
(표 2-75) 사업추진 관련 조직(추진협의회)과 운영현황 ····· 100
(표 3-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및 권한 ····· 112
(표 3-2) 단계별 디자인검토 주요내용 ····· 114
(표 3-3) 지방자치단체 추천 디자인 총괄계획가 기준 ····· 116
(표 3-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기준 ····· 120
(표 3-5)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추진주체별 역할 및 권한 ····· 123
(표 3-6) 문전성시 사업 선정기준 ····· 127
(표 3-7) 문전성시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 130
(표 3-8) 문전성시 사업 총괄기획자의 주요업무 ····· 130
(표 3-9) 문전성시 사업 컨설팅단의 주요업무 ····· 132
(표 3-10) 문전성시사업 총괄기획자 자격요건 및 선정 ····· 134
(표 3-11) 문전성시사업 총괄기획자 보수 및 근무 형태 ····· 134
(표 3-12) 리더 프로그램 단계별 비교 ····· 137
(표 3-13) 전통적 농촌정책과 LEADER 프로그램의 비교 ····· 140
(표 3-14) LAG 프로젝트 팀과 LAG 부서의 관할영역 ····· 149
(표 3-15) LAG 프로젝트 선정기준 ····· 153
(표 3-16) 사례별 총괄계획가 유형구분 ····· 158
(표 3-17) 사례별 운영주체 구분 ····· 159
(표 3-18) 사례별 사업자문 및 조정자 역할 수행주체 유형구분 ····· 159
(표 3-19) 국내 총괄계획가 관련 사례 비교 ····· 160
(표 4-1) 총괄계획가 제도 주요 개선방안(안) ····· 174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4
<그림 2-1> 사업 추진 체계도 ····· 18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체계 ····· 18
<그림 2-3> 총괄계획가 제도 법적근거 ····· 26
<그림 2-4>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절차 ····· 27
<그림 2-5>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관련주체 및 추진체계 ····· 28
<그림 2-6>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주체별 역할 ····· 30
<그림 2-7> 총괄계획가 선정 절차 ····· 31
<그림 2-8> 조정자문위원회 운용절차 ····· 32
<그림 2-9> 2012년 1차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절차 ····· 35
<그림 2-10> 2013년 2차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절차 ····· 44
<그림 2-11> 2013년 2차 시범사업 관련 교육 및 워크숍운영 현황 ····· 60
<그림 3-1> 민간전문가의 참여근거 ····· 110
<그림 3-2>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추진절차 ····· 111
<그림 3-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주체 및 추진체계 ····· 113
<그림 3-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추진 절차 ····· 115
<그림 3-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홈페이지 ····· 118
<그림 3-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118
<그림 3-7>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모니터링 수행체계 ····· 119
<그림 3-8>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조직구성체계 ····· 123
<그림 3-9>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구성 및 역할 ····· 125
<그림 3-10> 2011년도 문전성시 사업 추진일정 ····· 128
<그림 3-11> 문전성시 사업 추진체계 ····· 129
<그림 3-12> LEADER 프로그램 7가지 원칙 ····· 137
<그림 3-13> LEADER 지역주의 원칙 ····· 138
<그림 3-14> LEADER의 추진체계 ····· 142
<그림 3-15> 지역활동그룹 ····· 144
<그림 3-16> Altmuehl-Jura LAG 의사결정프로세스 ····· 150
<그림 3-17> LAG 프로젝트 진행도 ····· 154

<그림 3-18> 각 사례별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 163
<그림 3-19> 영주시 지역총괄계획가 및 사업총괄계획가 운영 사례 ····· 164
<그림 3-20>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및 문전성시 사업추진 일정 ····· 165
<그림 3-21>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모니터링 팀 역할 ····· 167
<그림 4-1>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 프로세스(안) ····· 173
<그림 4-2>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추진체계(안) ····· 183
<그림 4-3>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안) ·····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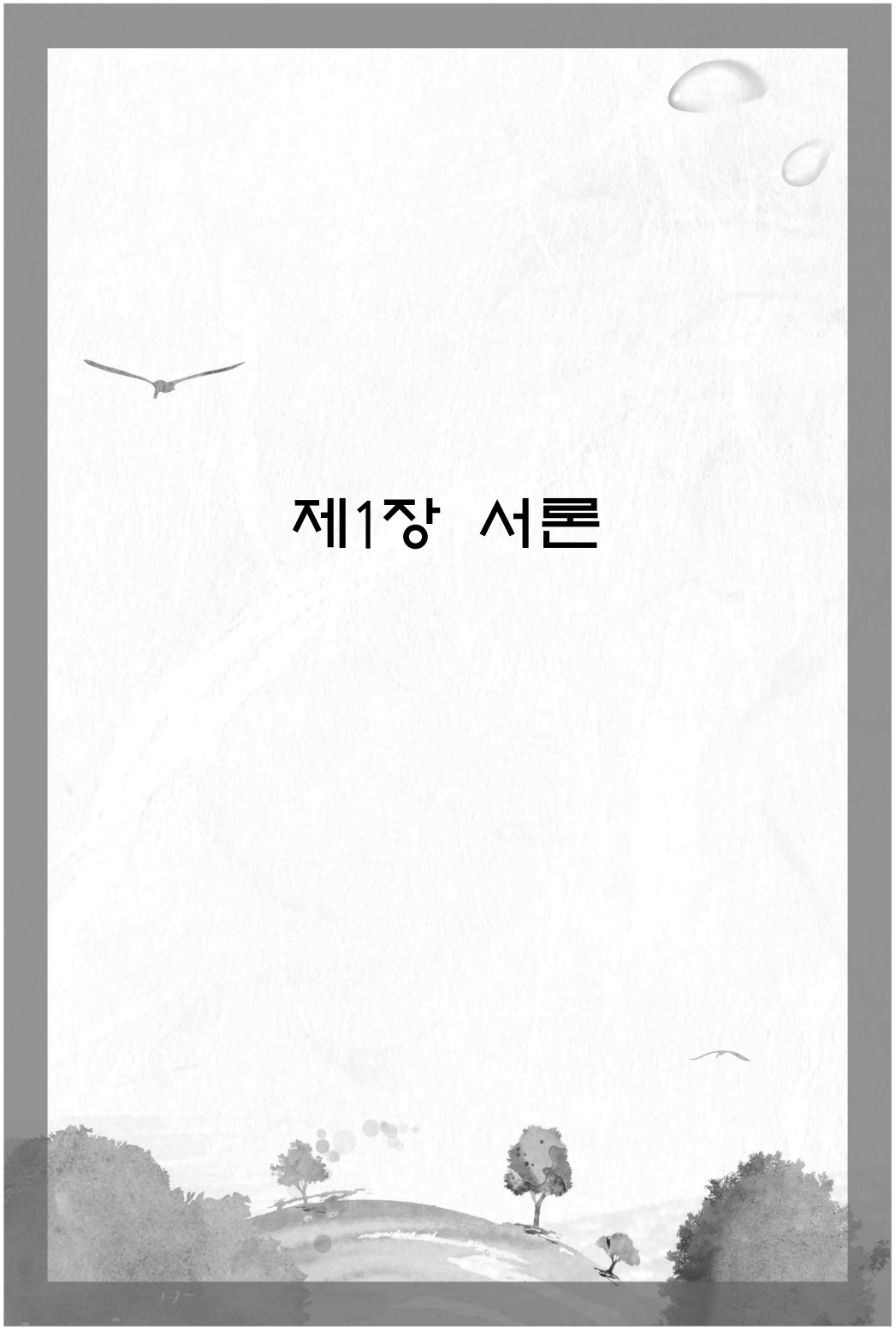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마을개발사업의 획일화를 탈피하고 경관·생태·역사·문화 등 특색있는 농촌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엿다.

○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다학문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의 농촌 지역개발사업에서, 총괄계획가 역할에 대한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 시범사업 대상 : 7개소(원주, 괴산, 예산, 임실, 진도, 의성, 하동
- 시범사업 한계점 : 역량강화 미흡,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 활동 매뉴얼 및 체계적 교육 미흡, 기존 사업의 시군 자문위원과 업무 중복 등

○ 한편, 총괄계획가가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소통의 역할 및 행정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성과도 있었다.

- 지역 출신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지구에 대한 애향심으로 해당 마을의 성격에 맞는 농촌 공간을 구현

○ 이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총괄계획가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조정 작업이 필요하였다.

○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효과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총괄계획가 제도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운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총괄계획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 총괄계획가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총괄계획가 선발 및 선발절차 기준, 교육 프로그램, 활동지침 및 매뉴얼 등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총괄계획가 운용시스템이 안정적·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운영지침을 보완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제2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 제도를 파악하고 시범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에 따른 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을 도출한다.

○ 제3장에서는 국내·외 총괄계획가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괄계획가 제도가 안정적·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운영지침 및 체계를 보완하여 총괄계획가 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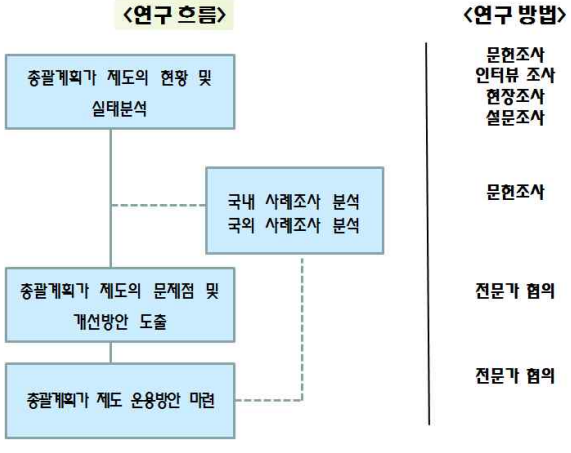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 문헌 및 사례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 제도 검토, 총괄계획가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및 사례를 검토한다.

○ 현장조사·설문조사: 총괄계획가 2차 시범지구 8개를 대상으로 3차례의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총괄계획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계획수립자, 지역주민에게 총괄계획가의 주요활동내용,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상의 장·단점, 행정적 지원내용 등을 조사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 1차 현장조사: 2013.5.9~10, 14~16, 21~23(8일간), 제주, 충남 홍성, 강원횡성, 충북보은, 경북봉화, 경남합천
- 2차 현장조사: 2013.8.5~6, 29~30(4일간), 전남진도, 전북임실, 제주
- 3차 현장조사: 2013. 11.11~21(8일간), 강원횡성, 충남홍성, 충북보은, 경북봉화, 경남합천, 전북임실, 전남진도

○ 인터뷰조사: 1차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 모니터링팀,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문광부 문전성시사업 관련 컨설팅단을 방문하여 관련제도 현황을 파악한다.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제도 현황 및 쟁점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제도 현황 및 쟁점

제1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

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내용

○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포함된 소도읍육성,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부처간 사업간 유사·중복 추진 및 지자체 자율성 제약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지역개발계정 예산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지역개발사업을 통폐합하여 3개 계정 6개 사업군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계정 / 편성방식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④시·도자율편성사업 * 기초생활권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경비
	시·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③부처직접편성사업	⑥부처직접편성사업

- 이 중 지역개발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18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을 선택하였다.

(표 2-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 대상사업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②관광자원 개발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④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국토부	⑲성장촉진지역개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행안부	⑳특수상황지역개발
농식품부	**⑥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⑦농어업기반정비**	국토부	㉑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농진청	⑧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농식품부**	**㉒일반농산어촌개발**
산림청	⑨산림경영자원 육성 ⑩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지경부 중기청	⑪지역특성화산업 육성 ⑫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여성부	⑬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⑭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포함) ⑮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국토부	⑯해양 및 수자원 관리 ⑰대중교통 지원 ⑱지역거점 조성지원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기초생활권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4개의 기초생활권 지역구분(성장촉진, 특수상황,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2-3) 지역개발계정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대상사업

포괄보조사업	내역사업	2010년 기존 내역사업
성장촉진 지역개발 (국토부)	①지역접근성시설지원	①개촉지구 지원 ②도서종합개발
	②성장기반시설지원	
특수상황 지역개발 (행안부)	①기초생활기반확충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접경지역지원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②지역소득증대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③지역경관개선	⑨농촌생활환경정비 ⑩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⑫소규모용수개발
	④지역역량강화	⑬주거환경개선 ⑭개촉지구지원 ⑮산촌생태마을조성

포괄보조사업	내역사업	2010년 기존 내역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국토부)	①기초생활기반확충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지표수보강개발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⑩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⑫소규모용수개발 ⑬주거환경개선 ⑭개촉지구지원 ⑮산촌생태마을조성 ⑯살고싶은도시만들기
	②중심시가지재생	
	③주거지재생	
	④지역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식품부)	**①기초생활기반확충**	**①도서종합개발 ②소도읍육성 ③지표수보강개발 ④살기좋은지역만들기 ⑤어촌종합개발 ⑥신활력지원 ⑦농촌마을종합개발 ⑧전원마을조성 ⑨농촌생활환경정비 ⑩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⑪기계화경작로확포장 ⑫소규모용수개발 ⑬주거환경개선 ⑭개촉지구지원 ⑮산촌생태마을조성**
	②지역소득증대	
	③지역경관개선	
	④지역역량강화	

○ 이 중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

(1) 사업 목적

○ 일반농산어촌지역은 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여 청년층이 도시로 이동하고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을 공동화현상 및 지역사회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National Mininum)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및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참조.

(2) 사업 주요내용

① 기본방향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으로써, 농산어촌의 정주환경 및 기초인프라의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사업은 자연마을↔소생활권↔읍·면소재지↔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정주체계를 감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발전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컨설팅 및 교육,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단위 등 소규모 공동 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함. 기존 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등의 계속사업지구의 경우,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의 통합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한 통합적인 개발과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며, 거점·권역 집중개발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② 법적근거

○ 사업의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근거하고 있다.

③ 사업내용

▌사업대상지역

○ 사업대상지역은 시·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지역으로서, 2012년까지 120개 시군이었으나 화성시, 남양주시, 김해시가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편입되어 2013년부터 일반농산어촌지역은 117개 시·군이다.

(표 2-4) 일반농산어촌(117개 시·군) 지역현황

구 분	117개 시·군
경 기(7)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11)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 남(15)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시, 세종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 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22)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17)	창원시(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 주(2)	제주시, 서귀포시

▌주요 사업내용

○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S/W)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읍(동)면단위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내용

구분	읍(동)면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확충	○	○	○	○
경관개선	○	○	○	○
소득증대		○		
역량강화	○	○		

(표 2-6) 유형별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역계정 (정주환경개선)	1.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		○ 사업비: 읍(동)(100억원 이하), 면(70억원 이하) (국비70%,지방비30%) ○ 사업기간: 4년간 - 농산어촌 거점 읍면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소재지 종합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위한 경우 지원가능(전통시장 정비 등) •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 등
	2.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 사업비: 권역당 50억원 내외 (국비70%,지방비30%) ○ 사업기간: 3~5년간 - 권역당 2개 이상 마을 등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행하는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 •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농산어촌관광의 진흥, 주민공동소득의 증대,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 사업비는 단계별로 편성
	3. 신규마을 조성		○ 사업규모: 소규모 10~19가구(3~5.7억원이내), 20~29가구(12억원이내)~100가구이상(36억원이내) (국비70%,지방비30%) ○ 사업기간: 13년간 -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마을조성, 분산된 마을정비사업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전원마을조성 등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 및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개발, 분산된 마을의 정비
	4.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 환경정비	○ 사업내용 - 종합정비(읍면소재지, 권역단위) 대상지역 이외지역에 개별단위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농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 환경보전, 농어촌체험시설,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등의 시설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농업생산 기반	○ 사업내용 -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등의 농업생산 지원시설

사업명			사 업 내 용
		조성	○ 지원조건(국고 70%, 지방비 30%) -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계속소요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지역 창의 아이 디어	○ 사업비: 20억원 이하 (국비70%,지방비30%) ○ 사업기간: 1~3년간 ○ 시군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 - 경관개선사업 : 소공원(저수지, 해안가, 산, 들녘 등), 마을경관, 가로경관 - 지역공동체사업 : 공동소득, 공동문화 등 - 기타 아이디어사업(기존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사업 등)
		시·군 지역 역량 강화 사업	○ 사업비: 시군별 5천만원 이하 (국비70%,지방비30%) ○ 사업기간: 1년간 ○ 시군 사업추진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내발적 지역개발 동력 확보 - 지역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관계자교육, 박람회참가 등 지원

(표 2-7) 기능별사업 주요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별 주요내용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정보화시설 등 - 농산어촌의 농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소규모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등)시설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 농어촌지역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동휴양시설 및 서비스전달체계, 재해대비시설 등이 해당 ○ 지원제외 :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건축비
② 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 농어촌지역의 불량경관의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민속자료 등의 정비사업 -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 ○ 지원조건 -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10가구 이상의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③ 소득증대	○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체험시설, 폐교임대활용, 생태학습장, 문화체험관 등 - 지역의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공동 농특산물판매장, 공동 소규모가공시설, 공동 저온저장고시설, 공동 농산물선별장 등 ○ 지원조건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 법인)에 한하여 지원, 사업비 총액의 20%는 수익자(주민) 부담

사업의 종류	사업별 주요내용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주민)가 부담
④ 지역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능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계자 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이내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시군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다음연도 예산신청액의 10%범위 내에서 반영(기본계획수립비,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경비 포함 시 10%초과 가능) ○ 지원제외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와 종합사업(하드웨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외의 S/W 단독사업은 지원제외

(표 2-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사업의 세부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펜스, 기타 안전시설 CCTV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개발, 마을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공동생활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등
	농업기반	기계화 경작로,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소득 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 가공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 선별시설, 특산물 공동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	폐교활용, 농산어촌체험시설,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지역경관 개선	마을경관	마을안길 가꾸기, 마을숲 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생울타리조성, 마을조형물, 문화자원 복원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소규모 대체에너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농어촌경관계획수립비,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 등

④ 지원조건

○ 보조사업비의 경우,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70~100억,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50억 내외, 신규마을조성사업 3~36억,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중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20억이하,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0.5억원 이하 수준을 지원(국고 70%, 지방비 30%)하고 있다.

⑤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시·군·구에서는 예산신청 시 유형별·기능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되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신청 및 집행하며,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의 3%이내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대비용내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 자문비,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해외연수, 총괄계획가 지원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본적인 사업추진 체계는 <그림 2-1>과 같으며, 전체적인 사업시행 체계는 <그림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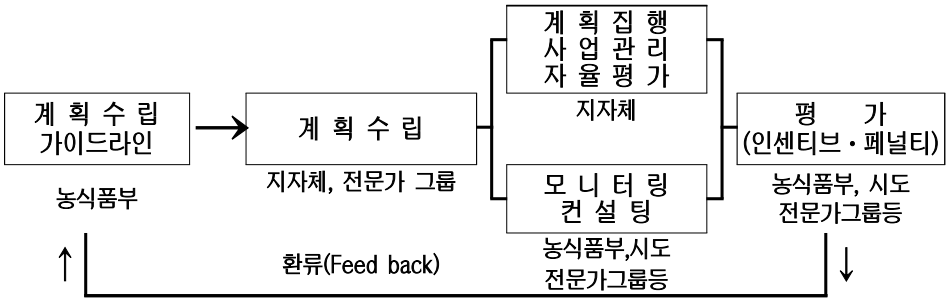

<그림 2-1> 사업 추진 체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체계

⑥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

○ 사업의 조기정착 유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내용 확인,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중점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농산어촌 지역발전 분야관련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및 운영이 미흡한 사업지구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 사업평가는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사업군별 5단계(S(10%), A(15%), B(50%), C(15%), D(10%))로 나누어 상대평가로 진행하고 있다. 이 때 평가결과 우수 시·군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진한 시·군의 경우 예산을 삭감한다.

⑦ 사업추진실적

○ 2013년 현재까지 진행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20개 시·군의 총 1,124지구에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표 2-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실적

유형별	지구수	비고
총계	1,124	-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	311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소도읍육성,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642	*권역단위종합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신규마을조성	171	*신규마을조성및재개발, 전원마을조성, 주거환경개선

자료: 2013년도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관계자 워크숍 발표자료

○ 2012년까지 읍소재지의 84.4%, 면소재지의 15.9%, 마을(里)의 11.2% 수준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2-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시 도		시·군	읍	면	리	비 고
전 국		159	216	1,188	36,590	
일반농산어촌지역(a)		117	167	1,070	32,883	
개발실적	개소수(b)	117	141	170	3,671	*'리'의 개발실적은 권역당 5.7개 리로 계산
	%(b/a)	100.0	84.4	15.9	11.2	

* 행정구역은 '12.1.1.기준(면은 1,198개소 중 면장 없는 지역 10개소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2),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 자료

2.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당면과제

(1) 성과[2)]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권역화(5~6개 마을)하여 소득기반, 생활환경, 경관 등을 종합정비하고 상향식 지역개발 모델로 발전시켰으며, 마을은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과 이주희망 도시민이 공동으로 마을 정비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또한,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생활환경과 생활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2) 당면과제[3)]

○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가 부재하여,

- 각 부서별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이 없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투자 과잉과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지역 간 격차 발생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2012),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포괄보조) 2014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 자료참조.
3) 농림축산식품부(2013), 총괄계획가제도 백서, pp.7~9 참조.

○ 지역의 농촌지역이 총괄적인 공간계획 없이 개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 사업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의 사업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으며, 지역주민 및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는 능력 및 참여가 저조하고, 주체 간 협력시스템도 저조하였다.
○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획일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부재
  - 지역의 문화적, 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진행
  - 취약한 기획능력과 추진부처의 계획수립 및 관리능력 미흡
○ 추진추제의 진정성, 전문성, 다양성이 결여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하여 성공가능성이 미약하였다.
  - 나눠먹기식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희석
  - 대형 건축물 및 화려한 효과 등 가시적인 효과에 치중
  - 잘못된 인식과 관행 및 감독소홀에 의한 사유화 가능성
  - 운영관리계획 소홀에 의한 방치사례 발생
○ 행정절차 위주의 계획 및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 대부분 기반시설은 별도의 디자인 심의과정 없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심으로 추진
  - 기획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체계의 미흡

제2절 총괄계획가 제도 개요

1. 제도개념

1) 추진배경 및 필요성[4)]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 보장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생활권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기초서비스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 이에 따라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지역의 활력 창출 또는 특색 있는 마을로 발전하는 사례가 출현하는 등의 사업 효과가 나타났으나, 사업추진 상 체계적인 계획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획일적, 일회성 사업추진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종합적인 계획 부재
- 지역의 문화적, 자연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업 진행
- 취약한 기획능력과 추진부처의 계획수립 및 관리능력이 미흡
- 행정절차위주의 계획 및 디자인 관리에 따른 디자인과정 미흡
-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 미흡 등

○ 농어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어촌개발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획능력 및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총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2년부터 마을의 경관, 생태, 역사·문화 등을 사전 분석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건강한 다원적 가치를 제고하는 농어촌을 구현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제시할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도입 하였다.

---

4) 농림수산식품부(2013), 농어촌지역의 계획적·통합적 개발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합동 워크숍 교재 자료참고

2) 정의

○ 총괄계획가는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총괄계획가는 시·군·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은 모든 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계획내용과 방식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추진방향 및 목적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한하여, 시범사업이 일회적인 사업에 국한되지 않도록 참여주체가 협력시스템(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파트너쉽 구축 및 상생도모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의 추진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기획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성·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개발 계획수립 정착 및 농어촌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2. 법적근거

○ 총괄계획가 제도는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의거한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과정 및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과정에서 총괄계획가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 성과 목표 및 지표
3.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으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수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52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에서는 총괄계획가의 자격, 업무수행의 범위 및 내용, 운영기간,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2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2.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조정
2.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4.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5. 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④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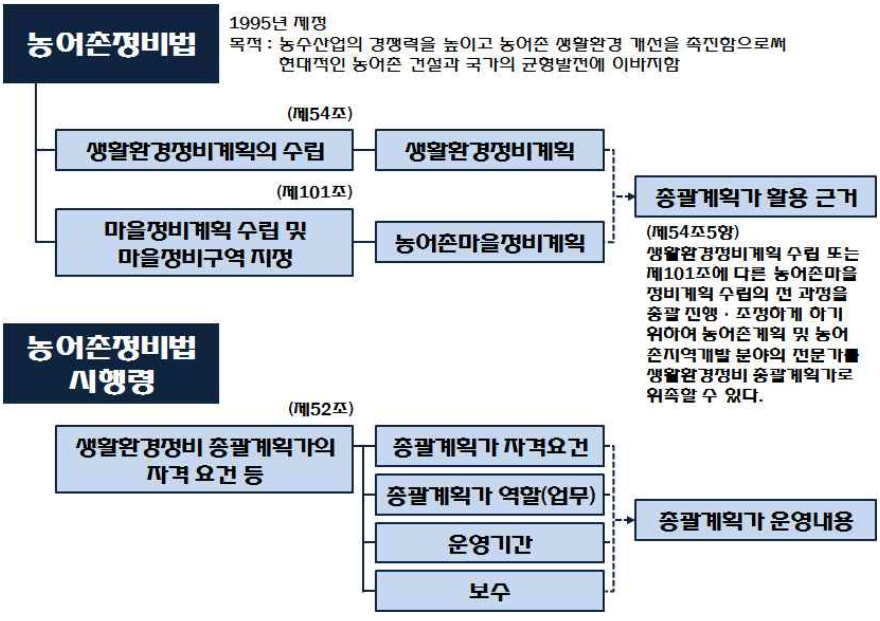

<그림 2-3> 총괄계획가 제도 법적근거

3. 시범사업 추진절차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는 시범사업 사업지구 지정, 총괄계획가 선정·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 시범사업 기획제안 작성, 기본계획 설계방식 결정, 기본계획수립 작성, 시험사업 기본계획안 승인의 순으로 진행된다.

- 추진절차에 따른 자세한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범사업지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사업지구 지정

② 총괄계획가 선정·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추진협의회 구성

③ 시범사업 기획제안 작성: 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지구의 기획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④ 기본계획 설계방식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계획가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시범사업 성격에 합당한 계획수립 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획수립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⑤ 기본계획수립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추진협의회와 협력하여 마스터플랜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조정·보완

⑥ 시범사업 기본계획 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계획가가 제출한 계획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시도지사는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그림 2-4>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절차

4. 시범사업 추진주체 및 역할

1) 추진주체

○ 총괄계획가 제도의 추진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기술지원단,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추진협의회, 기본계획수립자, 조정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총괄계획가 제도 전 과정에 대해 총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총괄계획가를 지원하며 적극 활용한다. 또한, 총괄계획가는 사업의 총괄, 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조정하고, 실무계획가는 총괄계획가를 보좌하며, 조정자문위원회는 시범사업지구를 사업 검토 및 자문, 분쟁발생 시 조정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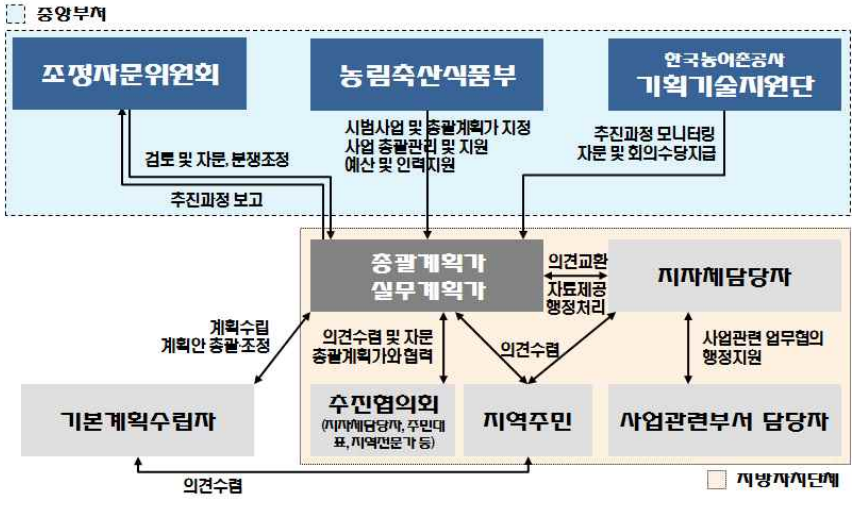

<그림 2-5>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관련주체 및 추진체계

2) 역할

(1) 주체별 기본역할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의 추진주체인 총괄계획가와 실무계획가, 추진협의회, 조정자문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추진주체별 역할 및 권한을 정리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및 권한

구분	역할
총괄계획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진행 및 계획의 주요내용 검토·조정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요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자문 요청 ◦지역주민들에게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에 반영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기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발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기본계획 작성자가 지역의 여건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사전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도
실무계획가	◦총괄계획가 보좌
추진협의회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와 협력 ◦수립된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의견교환 실시
조정자문 위원회	◦총괄계획가가 주기적으로 보고한 추진상황을 토대로 권역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분석 ◦사업종료 후 조사·분석한 사업지구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 운영지침 제시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 및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지속 및 확대 여부 결정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총괄관리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지원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및 필요시 지원조직 구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 정책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 조사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자료제공 ◦담당공무원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성실히 축적하여 향후 사업의 공개적인 평가와 홍보에 이용하고,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기록(사업추진의 과정 및 결과 등)함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실무담당자 변경을 최소화하여 시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순차적인 교체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필요시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 보수와 관련된 제반 행정처리(증빙자료 수집·정리·보고)에 관한 사항

(2) 추진절차에 따른 주체별 역할

① 시범사업 지구 지정		
⬇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 시범사업지구 선정공고 및 심사·선정 지자체 ▌ ◦ 시범사업지구 신청 및 추천
② 총괄계획가 선정·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		
⬇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 총괄계획가 모집공고 및 심사·선정 ◦ 합동오리엔테이션 개최 지자체 ▌ ◦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 위촉 ◦ 추진협의회 구성
③ 시범사업 기획제안서 작성		
⬇	역할	지자체 ▌ ◦ 총괄계획가 사전조사 행정지원 ◦ 추진협의회 회의 행정지원 ◦ 기획제안서 평가 및 방향수립 총괄계획가 ▌ ◦ 예비계획서 검토 ◦ 대상지 사전조사 ◦ 기획제안서 작성 추진협의회 ▌ ◦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④ 기본계획 설계방식 결정		
⬇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 제1차 조정자문위원회 개최 지자체 ▌ ◦ 과업지시서 작성 ◦ 계약방식 결정 ◦ 계획수립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총괄계획가 ▌ ◦ 발주방식 검토 추진협의회 ▌ ◦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조정자문위원회 ▌ ◦ 기획제안서, 과업지시서, 용역 발주방식 검토, 자문
⑤ 기본계획수립 작성		
⬇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 제2차 조정자문위원회 개최 지자체 ▌ ◦ 기본계획서 작성·조정·보완 총괄계획가 ▌ ◦ 기본계획 총괄·조정·관리 - 합리적인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분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검토 추진협의회 ▌ ◦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⑥ 시범사업 기본계획 승인		
⬇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 합동보고회 개최 ◦ 시범사업지구 기본계획 승인 ◦ 시범사업 완료보고서 평가 지자체 ▌ ◦ 총괄계획가가 제출한 계획안 평가 ◦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제출 ◦ 시범사업 완료보고서 작성 총괄계획가 ▌ ◦ 사업계획제안서 제출

<그림 2-6>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주체별 역할

5. 자격기준 및 운영

1) 자격기준

○ 총괄계획가의 자격 및 지원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2조1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항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①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③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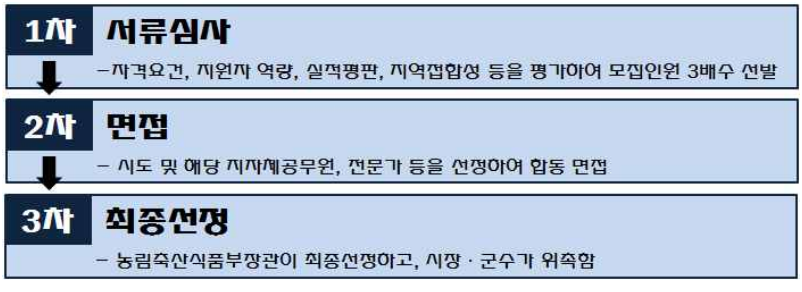

<그림 2-7> 총괄계획가 선정 절차

2) 운영

○ 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지구 기획제안단계부터 기본계획 승인시까지 운영하나 시범사업에 한하여 당해년도 11월까지 운영한다.

6. 보수

○ 시범사업인 경우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의 보수는 관련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농식품부가 직접 지급하고, 보수지급과 관련한 증빙자료 취합의 행정처리 업무는 해당 지자체가 담당한다.

○ 보수는 자문비, 회의수당 및 교통비로 구분한다.

- 자문비
  - · 총괄계획가: 4시간이상 300,000원/회, 4시간미만 200,000원/회
  - · 실무계획가: 4시간이상 200,000원/회, 4시간미만 150,000원/회
- 회의참석: 2시간이상 100,000원/회, 2시간미만 70,000원/회
- 교통비: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하되, 해당시군 사업비로 집행

7. 조정자문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사업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의견서 제공 및 후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 조정자문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하고, 조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총괄계획가 자격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며, 사업지구별 2명 이상의 조정자문위원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조정자문위원회 운용절차는 <그림 2-8>과 같으며, 현장 모니터링 시 필요한 사업추진 점검기준 및 지표는 (표 2-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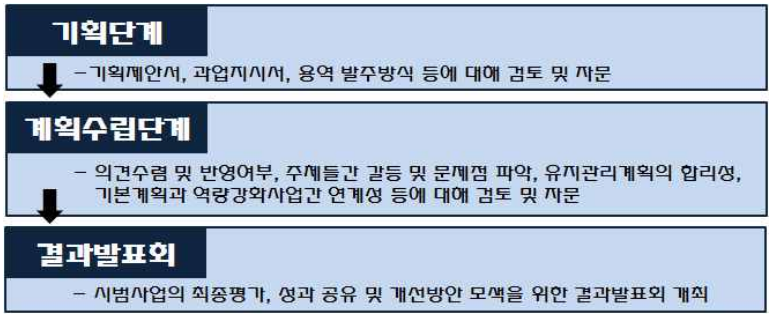

<그림 2-8> 조정자문위원회 운용절차

(표 2-1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사업추진 점검기준 및 지표

구분	기준	지표
유연성	주민욕구에 대한 대응성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주민의견 반영이나 여론수렴의 정도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지자체 건축도시 및 농어촌경관조성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효율성	사업추진의 진척도	사업계획의 시간적 적절성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투입자원의 관리실태
집행	거버넌스체계의 구축과 활용	총괄계획가 활용의 적절성
		민-관-학 협력체계의 구축
		피드백 체계의 구축·개선 노력
	지자체의 대응 노력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행정조직 구성
		지자체장의 관여정도
성과	보고서의 신뢰성	기획제안보고서의 정확성·신뢰성
		완료보고서의 정확성·신뢰성
		국내외 정보·자료의 활용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참여인력의 전문성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노력

제3절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

1. 2012년 1차 시범사업[5)]

1) 시범사업 및 총괄계획가 선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도입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2012년 1차 시범사업은 주민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획일성 탈피를 위해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에 적용하여 추진하였으며, 7개도(경기, 제주 제외)의 추천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지구를 선정하였다.

5) 2012년 1차 시범사업의 운영실태 및 성과의 경우, 2012년 11월부로 사업이 종료되어 자료구득 및 사업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2012년 1차 시범사업에서 운영한 교육 및 워크숍자료와 총괄계획가제도 백서(농림축산식품부, 2013.4)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였음

(표 2-13) 2012년 1차 시범사업지구 선정결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원주 치악산권역	괴산 송면권역	예산 황새권역	임실 대리만족 권역	진도 금골권역	의성 산수유권역	하동 코스모스 권역
소득, 경관	인프라	소득, 경관, 인프라	경관, 인프라	소득, 인프라	경관, 인프라	소득, 경관, 인프라

○ 2012년 1차 시범사업지구 7개를 대상으로 총괄계획가를 공개모집하였다.

- 모집기간: 2012. 2. 15(수) ~ 2. 27(월), 13일간
- 모집방법: 직접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이력서(별첨 이력카드 서식으로 작성)
  최종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이력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관·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장의 추천서 (단체의 추천인 경우 단체소개서 첨부)

○ 공개모집 결과 총 65명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인터뷰 심사(지자체참여)를 통해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조경, 경관, 건축 등의 대학교수 등 총 7명을 최종 선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였다.

(표 2-14) 2012년 1차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선정결과

강원 원주 치악산권역	충북 괴산 송면권역	충남 예산 황새권역	전북 임실 대리만족권역	전남 진도 금골권역	경북 의성 산수유권역	경남 하동 코스모스권역
상지대 배중남교수	청주대 원세용교수	공주대 이경진교수	전북대 손재권교수	선건축사 사무소 서재형대표	영남대 도현학교수	우리지역 개발연구소 김경희대표

2) 1차 시범사업 활동내용

○ 2012년 1차 시범사업은 총괄계획가 선정이후 총괄계획가 제도의 이해와 조기정착 도모를 위한 합동워크숍과 사업지구 상호간 추진상황 발표

및 문제점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합동보고회,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회의,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중간보고 및 점검, 2012년도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운영결과보고회 등의 순으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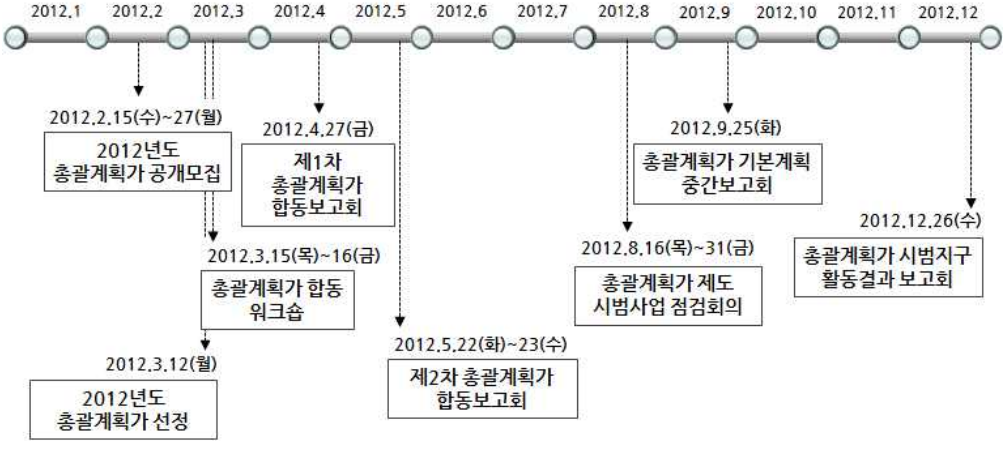

<그림 2-9> 2012년 1차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절차

(1) 총괄계획가 합동 워크숍

○ 목적

- 권역정비 사업지구의 경관,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여 농촌다운 마을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 실시하는 총괄계획가 제도의 이해와 조기정착 도모

○ 개요

- 일시: 2012년 3월 15일 ~ 16일
- 장소: 충북 괴산군 갈은권역 숲체험관
-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등 5명, 도, 시군 담당자 14명, 총괄계획가 7명, 전담인력 7명, 추진위원장 7명 등 21명, 조정자문위원 7명, 사례발표자 3명, 한국농어촌공사 5명

○ 주요내용

-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배경 및 역할 이해
-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설명 및 마을개발 사례발표
- 각 시범지구 예비계획서에 대한 분임토의 및 발표

(2) 제1차 총괄계획가 합동보고회

○ 목적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총괄계획가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지구 상호간 추진상황 발표 및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마을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 개요
- 일시: 2012년 4월 27일 13:30-18:20
-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1층 종합상황실
-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등 4명, 각 도 담당자 7명, 시군 담당자 7명,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 각 7명, 조정자문위원 7명, 한국농어촌공사 8명

○ 주요내용
- 시범지구 자원조사 및 권역특성 분석
-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등을 담은 기획안과 추진상황 등
- 당해 권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논의

(3) 제2차 총괄계획가 합동보고회

○ 목적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권역별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서로 발표하고,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으로 동제도의 원활한 추진도모

○ 개요
- 일시: 2012년 5월 22일 ~ 23일
- 장소: 전남 진도군 소포권역 푸르미체험관
-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등 3명, 각 도,시·군담당자 14명,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 각 7명, 조정자문위원 7명, 한국농어촌공사 9명

○ 주요내용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발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등 추진
- 각 시범지구 별 추진상황 점검
- 총괄계획가 제도 발전에 대한 토론

(4)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점검회의

○ 목적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개요

- 일시: 2012년 8월 16일 ~ 31일
- 장소: 예산 황새권역, 괴산 송면권역, 진도 금골권역, 하동 북천 코스모스권역, 임실 대리만족권역, 의성 산수유권역, 원주 치악산권역
- 점검위원: 김승근 교수, 이유직 교수, 김석수 박사

○ 점검내용

- 지자체 추진협의회 구성
- 총괄계획가 기획제안서 작성
- 실무계획가 기본계획수립참여
- 계획수립자 계획수립정도
- 추진협의회 적정성여부 등

○ 조정위원회 총괄의견 결과

사업명	내용
강원 원주 치악산권역	· 전반적으로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업무지침을 숙지하지 않음 · 총괄계획가의 업무 중 '조정'과 '자문' 역할이 부족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업체는 기존의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함 · 상당수의 추진위원들이 점검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열의를 보여줌
충북 괴산 송면권역	· 예비계획서 검토, 기획제안서 작성, 마스터플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음 ·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와의 협의, 추진협의회 정례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참여 주체별 협력시스템을 만들지 않음 · 총괄계획가와 용역사의 '총괄계획가 업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적절 · 총괄계획가가 조정위원의 조정에 대한 수용의사를 보이지 않음 · 용역사의 용역수행능력의 보강이 요구됨 · 전반적으로 총괄계획가와 용역사는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주체들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충남 예산 황새권역	· 공식적인 협의체인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협력시스템(거버넌스)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며 이미 구축됨

사업명	내용
	· 지자체의 전폭적지지 의지가 있음 · 총괄계획가가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의지가 분명하며, 5개년 로드맵을 구상하여 진행 중임 · 용역사가 기본계획 수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주민은 사업내용 이해가 부족하나, 사업주체와 신뢰가 있음 · 교원대 황새복원센터와의 관계개선 노력에 시간과 지원이 필요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전북 임실 대리만족 권역	· 지자체의 준비가 철저하고, 제도 지원하는 등 사업에 적극참여 · 총괄계획가의 업무조정 능력과 사업전반의 이해 폭이 넓음 · 용역사에 의해 지역자원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 중 · 추진위원장의 리더쉽이 강하고 주민요구는 많아, 사무장의 업무수행능력이 필요 (지자체, 총괄계획가, 추진위원장의 협력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주체간의 협력이 견고한 측면이 있음. 사업진행과정과 준공 후 권역의 공동체 형성에도 관심이 필요함)
전남 진도 금골권역	· 지자체와 총괄계획가의 사업의지와 노력이 대단함 · 지자체는 군 기본방향을, 총괄계획가는 주민의견을 반영 노력함 · 안농마을의 그룹 홈과 역사관 사업에 대해 지자체(철거)와 주민(정비)의 입장차가 큼 · 총괄계획가의 기획제안 시 안농마을 관련 사업을 지자체와 미 협의하면서 갈등 발생 · 총괄계획가가 기획제안과 용역사 협의 시 무리한 사업추진을 인정하고, 지자체 권고에 따라 용역사 협의 월1회를 받아들임 · 총괄계획가의 기획제안서를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고 용역사와 안농마을 사업을 변경함 - 지자체 : 총괄계획가와의 갈등원인이었던 안농마을의 현황을 조사·기록하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하기로 합의 - 총괄계획가 : 지자체와의 협의없이 기획제안서를 주민에게 발표한 것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추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기로 함 - 기본계획 용역사 : 월1회 회의를 월2회로 늘리고, 수시로 협의 - 역량강화사업 용역사 :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함
경북 의성 산수유 권역	· 지자체(과장, 담당자)에서 사업내용을 전혀 몰라 점검이 이루어 지지 않음 · 총괄계획가의 예비계획서 검토, 기획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수정이 없거나 부족함 · 총괄계획가, 지자체, 용역사, 주민의 협력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주민의 회의 참석 및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 (추진위원장, 사무장 불참. 경관계획용역사 불참. 총괄계획가 지각 참석)

사업명	내용
경남 하동 북천 코스모스 권역	· 지자체가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의 내용을 모름 · 총괄계획가가 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사업추진의 부진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 사업주체(지자체, 총괄계획가, 추진위원회) 모두 공식적 협의과정이 없음 · 사업주체(지자체, 총괄계획가, 추진위원회) 모두 향후 계획 없음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모두 자체 발주하고 있으며,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짐. 또한, 현 건설과 계장과 현 재무과 경리담당이 7월부터 업무를 맡게 되면서, 혼선발생. 총괄계획가의 조정 및 자문역할이 부적절함)

(5) 총괄계획가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 목적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중간보고 및 점검을 통해 11월까지 내실 있는 보고서를 완료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2012년 9월 25일 13:40-18:00
- 장소: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등 4명, 각 도 담당자 7명, 시군 담당자 14명,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 각 7명, 조정자문위원 3명, 한국농어촌공사 5명

○ 주요내용

- 예비계획서 검토결과
- 기본계획 발주 및 현재까지 수립한 기본계획(경관계획)내용 등

○ 총괄계획가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

① 총괄계획가

전체적으로 상위 3개권역의 경우, 90점대로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매우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위 4개권역의 경우에는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다소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표 2-15) 1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총괄계획가

순위	1	2	2	4	5	6	7
권역명	진도군 금골권역	임실군 대리만족권역	예산군 황새권역	원주시 치악산권역	의성군 산수유권역	괴산군 송면권역	하동군 북천코스모스권역
점수	97	90	90	63	59	42	38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순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총괄계획가의 평가순위와 비슷한 순위를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상위 3개권역의 경우, 총괄계획가 제도의 취지 및 진행방향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위 4개권역의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및 실행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6) 1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지방자치단체

순위	1	1	3	4	5	6	7
권역명	임실군 대리만족권역	진도군 금골권역	예산군 황새권역	원주시 치악산권역	괴산군 송면권역	의성군 산수유권역	하동군 북천코스모스권역
점수	95	95	85	47	42	38	33

③ 총점(총괄계획가+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평가순위를 살펴보면, 진도군 금골권역 192점(1위), 임실군 대리만족권역 185점(공동1위), 예산군 황새권역 175점(3위), 원주시 치악산권역 110점(4위), 의성군 산수유권역 97점(5위), 괴산군 송면권역 84점(6위), 하동군 북천코스모스권역 71점(7위)으로 나타남

(표 2-17) 1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평가-총점(총괄계획가+지방자치단체)

순위	1	2	3	4	5	6	7
권역명	진도군 금골권역	임실군 대리만족권역	예산군 황새권역	원주시 치악산권역	의성군 산수유권역	괴산군 송면권역	하동군 북천코스모스권역
점수	192	185	175	110	97	84	71

④ 권역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및 향후 추진방향

사업명	향후 추진방향
원주시 치악산권역	총괄계획가가 사업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방관하여 신뢰가 무너짐 → 업무독려를 위한 경고가 필요함
의성군 산수유권역	사업주체 모두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 발주 방식이 불투명함 → 사업 진척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괴산군 송면권역	총괄계획가가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갈등 수습 능력을 상실함 → 해촉 후 전담 조정위원의 파견이 필요함
하동군 북천코스모스권역	총괄계획가와 지자체의 사업 이해와 의지가 극히 저조함 → 사업 추진을 위해 교체가 필요함

(6)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활동결과 보고회

○ 목적

- 2012년도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운영결과,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2013년도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2012년 12월 26일 11:30-17:30
- 장소: 충남 공주시 소랭이권역
-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등 3명, 각 도 담당자 및 시군담당자 14명, 시범지구 추진위원장 7명, 총괄계획가·실무계획가·조정자문위원 등 21명, 한국농어촌공사 4명

○ 주요내용

- 계획수립 사례 발표
- 총괄계획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총괄계획가 제도 문제점 주요내용

- 도와 의견이 상충될 시 의견조정 곤란(기본계획 최종 승인관련)
-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의 전공위주로 기본계획이 디자인될 가능성 우려
- 계획수립자와의 역할분담 설정 미흡
- 추진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원화 구조에 따른 문제점 발생
- 기본계획수립자가 기존의 관행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총괄계획가와의 협력미흡

- 실무계획가의 업무범위의 불명확함에 따른 정체성 모호
- 총괄계획가의 업무내용이 총괄계획가의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업무수행 어려움
- 권역주민과의 소통 및 중재역할이 필요(외부기관 모니터링필요)
- 실적에 의한 활동비만 지급하며,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2. 2013년 2차 시범사업[6)]

1) 시범사업 및 총괄계획가 선정

○ 2013년 2차 시범사업은 지역총괄(시·군전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참여 공모 결과 총 16개 시·군(지역총괄 2개소, 권역·면 14개소)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최종으로 8개 시·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하였다.

(표 2-18) 2013년 2차 시범사업지구 선정결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횡성 강림면정비사업	보은 산대권역	홍성 오누이권역	임실 지역총괄	진도 지역총괄	봉화 한약우권역	합천 쌍책권역	제주 세계자연유산권역
소득, 경관	인프라	생태,문화,역사	지역총괄	지역총괄	인프라, 경관	소득, 경관, 체험	인프라, 경관

○ 2013년 2차 시범사업지구 6개를 대상으로 총괄계획가를 공개모집하였으며, 지역총괄계획가는 별도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 모집기간: 2013. 1. 23(수) ~ 2. 6(수), 15일간
- 모집방법: 직접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이력서(별첨 이력카드 서식으로 작성)
  최종 학력 증명서

6) 2013년 2차 시범사업의 운영실태 및 성과의 경우, 2013.5.9~10, 14~16, 21~23(8일간) 1차 인터뷰조사(제주, 강원횡성, 충북보은, 경북봉화, 경남합천), 2013.8.5~6, 29~30(4일간) 2차 인터뷰조사(전남진도, 전북임실, 제주), 2013.10.11~22(11일간) 3차 인터뷰조사(총괄계획가 시범사업 행정절차 파악 e-mail조사), 2013.11.11~21(8일간) 4차 인터뷰조사(강원횡성, 충남홍성, 충북보은, 경북봉화, 경남합천, 전북임실, 전남진도)와 2013.2.20~22, 10.24~25 총괄계획가 교육 및 워크샵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음

경력 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이력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총괄계획가 지원 소견서

○ 총괄계획가는 지자체 추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였으며,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시·도 및 해당 지자체공무원, 전문가 등 합동면접 후 최종 선발하였다.
- 평가는 제출서류 등을 통해 자격요건, 소통 및 리더쉽 등 역량, 사업실적 평판, 시범지역에 대한 적합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였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6~7명 정도 총괄계획가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지자체 합동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였다.

○ 공개모집 결과 총 20명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및 2차 인터뷰 심사(지자체, 전문가 등 참여)를 통해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8명의 총괄계획가를 최종 선발하였다.

(표 2-19) 2013년 2차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선정결과

강원 횡성 강림면정비사업	충북 보은 산대권역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전북 임실 지역총괄	전남 진도 지역총괄	경북 봉화 한약우권역	경남 합천 쌍책권역	제주 세계자연유산권역
디자인 연구소이선 김종대대표	청주대 박중신교수	공주대 정남수교수	전북대 손재권교수	선건축사 사무소 서재형대표	문화경관 연구소 윤진옥소장	경상대 김영주교수	제주관광대 최재권교수

2) 2차 시범사업 활동내용

○ 2013년 2차 시범사업은 <그림 2-10>과 같이 총괄계획가 선정 후 1회 교육과 조정자문위원회의 1회 현장자문, 2회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2회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총괄·진행 및 조정하는 총괄계획가의 세부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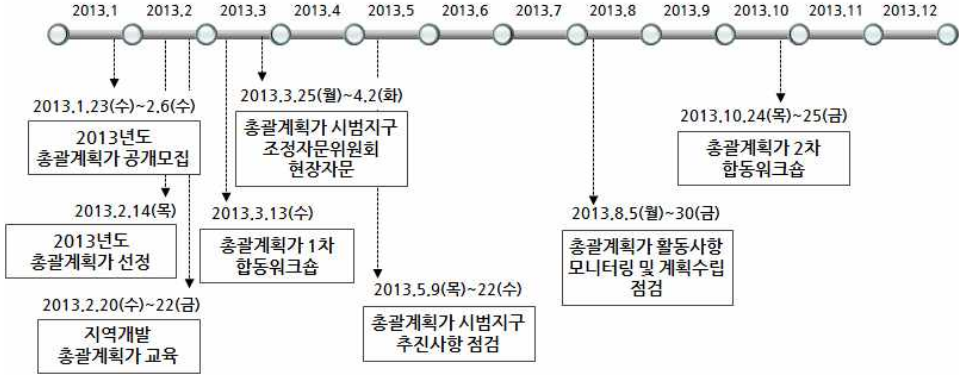

<그림 2-10> 2013년 2차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절차

(1) 총괄계획가 위촉

○ 총괄계획가 및 지역총괄계획가는 사업(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또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및 시·군당 1인이 선정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정하고 지자체가 위촉하였다.

○ 시범사업별 총괄계획가 위촉일자에 대한 분석 결과, 총괄계획가 선정(2013.2.14) 이후 시·군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까지 최소 11일에서 최장 55일까지 소요되었으며, 평균 28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 특히, 충북 보은 산대권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총괄계획가를 늦게 위촉함(55일 소요)에 따라 선정에서 위촉까지 걸린 소요기간동안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총괄계획가의 운영기간은 시범사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11월까지 운영하게 되어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총괄계획가를 늦게 위촉하게 되면 지연기간 만큼 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이 줄어들어, 시간적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2-20) 2013년 2차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선정일자

사업명	선정일자	위촉일자	소요기간
강원 횡성 강림면정비사업	2013. 2. 14	2013. 3. 12	26일
충북 보은 산대권역		2013. 4. 10	55일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2013. 2. 25	11일
경북 봉화 한약우권역		2013. 3. 25	39일
경남 합천 쌍책권역		2013. 2. 28	14일
제주 세계자연유산권역		2013. 3. 6	20일
전북 임실 지역총괄		2013. 3. 18	32일
전남 진도 지역총괄		2013. 3. 12	26일

(2) 시범사업 관리체계

①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구청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9~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 각 시범사업별 추진협의회 구성시기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추진협의회는 공통적으로 전문가 및 공무원,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표 2-21) 2013년 2차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현황

사업명	구성일자	구성현황
강원 횡성 강림면정비사업	2013. 5. 31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로 병행운영
충북 보은 산대권역	2013. 4. 22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 전문가(경관, 건축사, 조경),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2013. 3. 14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민간단체 (풀무학교 및 유기농협회)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경북 봉화 한약우권역	2013. 5. 16	읍면및권역발전협의회 위원, 공무원, 주민대표,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경남 합천 쌍책권역	2013. 2. 28	전문가(농업경제, 건축, 조경), 공무원, 주민대표,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제주 세계자연유산권역	2013. 4. 12	전문가(관광개발, 공공디자인,생태), 공무원, 주민대표,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등 여러주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원활히 운영되는 추진협의회도 있었지만, 추진협의회 구성 시 일부 지자체는 주민들이 추진협의회 구성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한 시범지구도 있었으며, 별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군의 지역발전협의회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시범지구도 있었다.

- 경북 봉화의 경우, 주민들이 기존에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협의회를 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추진협의회 구성 시 총괄계획가와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진협의회 구성이 늦어졌다.
- 강원 횡성의 경우, 별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 위원을 재정비하여 횡성군지역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시범사업에서 추진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기존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시·군에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추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읍면 및 권역발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직과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대체로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았다.

② 시범사업 전담조직

○ 시범사업을 전담하는 행정부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2) 2013년 2차 시범사업 지자체 전담부서 현황

사업명	담당부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주요업무			
		총괄	기획	사업시행	예산편성 및 집행
강원 횡성	기획감사실	○			
충북 보은	지역개발과	○	○	○	
충남 홍성	건설교통과	○	○	○	○
경북 봉화	농촌개발과	○	○	○	○
경남 합천	기획감사실	○	○	○	○
제주시	건설과			○	
전북 임실	건설과		○	○	○
전남 진도	지역개발과	○	○	○	○

(3) 시범지구 기본계획수립 추진과정

① 사업 기획제안

○ 기획제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성검토서(예비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총괄계획가는 관련 계획 및 사업을 검토하고 경제적·공공적 측면에서 추진사업의 과업범위 및 추진방향을 조정하는 내용의 기획제안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 총괄계획가는 기획제안서 작성을 위해 예비계획서 검토 및 사전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예비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권역특성에 맞는 자원발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은 적절하나 사업계획의 내용과 사업비 배분, 주민의견 반영정도, 향후 유지관리 부분은 예비계획서 상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총괄계획가가 제출한 기획제안서 내용 및 제출일자, 제출시기를 검토한 결과 업무지침 상 총괄계획가는 작성된 기획제안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시기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획제안서 작성내용 및 제출방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 시·군·구청장과 협의된 기획제안서는 기획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데 반영된다. 따라서 기획제안서 작성시간 및 제출방법, 협의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될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지침 상 기획제안서 제출시기 및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23) 2013년 2차 시범사업 기획제안서 관련사항

사업명	기획제안서 작성내용	제출일자 방법	기타
강원 횡성 강림면 정비사업	· 사업목표 검토 및 실천전략설정 · 시설계획 · 자원조사 · 시설운용계획 · 기본계획방향	-	기본계획용역이 기 발주된 사항이라 기본계획수립 방향에 대한 제안서가 아닌 자문결과에 대하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함
충북 보은 산대권역	· 예비계획서 검토 · 지역현황조사 · 주민의견 수렴 및 청취 · 기획제안 - 발전방향 및 비전설정 - 사업추진방향 및 체계 - 주민의견 취합 및 세부사업 연계방안 - 세부사업내용 및 고려사항 -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 및 예산(안)	· 제출일자 : 2013. 6. 4 · 제출방법 : 군수보고	총괄계획가가 기획제안서를 작성하고 부군수까지 보고하였으나, 이후 군수보고 일정이 늦어져 최종제출일자가 늦어짐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 지역현황 및 비전 · 마을별 발전방안 · 예상되는 어려움 · 사업추진방안 · 기본계획 발주방안	· 제출일자 : 2013. 3. 14 · 제출방법 : 주민 및 지자체담당자 대상 발표	-
경북 봉화 한약우권역	· 권역특성 · 주요사업(예비계획내용) · 사업검토 및 조정(안) ·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 권역발전 기본방향 - 총괄계획가 역할 방향	-	기획제안서 작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 발표하여 총괄계획가가 기획제안서 내용을 발표하는 것보다 기본계획수립자와 함께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기획제안서를 발표하지 않음
경남 합천 쌍책권역	· 기본현황 · 목표/전략 · 프로그램 제안 - 세부항목 별 사업내용 검토(예비계획/기획제안/반영여부/비고)	· 제출일자 : 2013. 3. 27 · 제출방법 : 지자체제출	-
제주 세계자연 유산권역	· 예비계획서 분석 및 마을 단위별 발전방향 · 권역 마을별 공간구상 · 사업검토 및 기획제안	· 제출일자 : 2013. 4. 9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지자체제출	-

② 기본계획 작성자의 선정

○ 총괄계획가는 사업지구 기획제안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작성자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방식을 검토하고, 시군구청장은 총괄계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작성 및 계약방식을 결정한다. 이 때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평가에 총괄계획가를 심사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총괄계획가 위촉 전 이미 기본계획 수립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농어촌공사에 일괄수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발주 방식 및 과업지시서 검토, 업체선정에 대한 사항에 총괄계획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 총괄계획가 위촉 전 기본계획 수립자가 선정된 강원 횡성과 제주의 경우, 총괄계획가가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만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검토,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만 참여하였다.
- 또한, 지자체에서 농어촌공사에 일괄수탁 한 충북 보은과 경북 봉화의 경우 총괄계획가가 하도급업체 선정 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발주방식 협의, 계약 시 제안평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표 2-24) 2013년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작성자 선정관련 사항

사업명	기본계획 작성자 선정과정 상 총괄계획가 활동내용	기타
강원 횡성 강림면 정비사업	·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발주방식 협의	총괄계획가 위촉 전 기본계획용역 발주 계약 체결
충북 보은 산대권역	·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발주방식 협의 · 계약시 제안평가 심사위원 활동	총괄계획가 위촉 전 2월 중 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일괄수탁 체결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발주방식 협의 · 계약시 제안평가 심사위원 활동	
경북 봉화 한약우권역	· 과업지시서 자문 및 계약시 제안평가 심사위원 활동	총괄계획가 위촉 전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타권역사업과 일괄 발주
경남 합천 쌍책권역	·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발주방식 협의 · 계약시 제안평가 심사위원 활동	
제주 세계자연 유산권역	· 지역역량강화사업 관련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발주방식 협의	총괄계획가 위촉 전 1월 기본계획용역 발주 계약 체결

③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단계 시 총괄계획가는 추진협의회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이 설정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분,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총괄계획가는 공통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기본계획수립 뱡향 조정 및 내용보완, 사업주체(주민, 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 간 갈등 조정,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였다.

○ 각 시범지구별로 총괄계획가의 역량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진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특성 및 관련사업 연계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내실화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획수립 내용에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표 2-25) 2013년 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역할

사업명	총괄계획가 역할
강원 횡성 강림면정비사업	·주민들과 함께하는 계획진행 방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유도 (사업목표 검토 및 실천전략 설정→시설계획검토→자원조사→시설운용계획→기본계획) ·총괄계획가와 사업주체 간(지자체, 지역주민, 기본계획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자) 주기적으로(매주 월요일)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조정 ·지역역량강화사업 조기 추진
충북 보은 산대권역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수립관련 기본방향 및 내용자문, 현장답사 ·기본계획 수립 전 예비계획서 검토→주민간담회→기획제안서작성을 통해 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내용 재조정 ·추진위원회 등의 마을회의 참석하여 주민의견 수렴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 제안하여 기본계획 수립 [마을별 공모사업 수요조사→1차워크샵(제안사업 10여개로 축소)→2차워크샵(공모제안발표 후 7~8개 공모팀 선정)→공모팀별 지역역량강화(교육,견학,컨설팅)→3차워크샵(6~7개 사업우선순위 선정)→6~7개 사업 세부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 운영관리방안 등)→세부사업계획 완료 후 공청회 실시→최종 5~6개 사업 권역사업으로 시행]
경북 봉화 한약우권역	·사업추진 관련주체 간 의견조정 및 권역 발전방향 자문 ·주민의 상향식 사업의 잘못된 이해로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교육을 통해 사업이해 도모 ·지역의 고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기본계획 수립 유도 ·추진위원회 등의 마을회의 참석하여 주민의견 수렴
경남 합천 쌍책권역	·상위계획 및 연계사업과의 조화를 통한 권역의 발전방향 제시 (산림청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 발현) ·계획주체들의 이해관계 및 균형 도모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갈등 해소 ·사업 종료 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컨설팅
제주 세계자연유산권역	·시설계획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수행자가 참석하는 월 4회 총괄계획가 회의 실시 ·주민요구사항 분석→기본계획수립자 제안→검토→수정사항 제시→회의에서 보안내용 확인하는 순으로 기본계획수립 진행 ·주민간담회 및 마을회의 등에 수시로 참석하여 주민의견 수렴

○ 하지만, 일부 시범지구에서는 총괄계획가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총괄계획가와 기본계획수립자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초기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총괄계획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총괄계획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또한, 총괄

계획가가 권역사업의 이해 및 행정사항 등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여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 지침 상 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기본계획수립자가 총괄계획가를 지자체담당자, 또는 자문위원 정도로 생각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어 총괄계획가가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지역주민들이 초기에 총괄계획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총괄계획가는 자문만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거나 또 하나의 시어머니로 인식하는 등 총괄계획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일부 총괄계획가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가 처음으로서, 사업의 성격 및 내용, 프로세스, 행정처리 등의 숙지 미흡으로 이를 파악하는데 일정시간을 소요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기한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해야 하는 지자체와 기본계획수립자의 불만이 있었다.

○ 총괄계획가 시범지구의 기본계획 승인 시, 시·군·구청장이 심의하고 시·도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시·도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는 총괄계획가가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이 자칫 부족한 결과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시·도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시 주민들은 총괄계획가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했는데, 자문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권역현황을 둘러보고 자문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

(표 2-26) 2013년 총괄계획가 2차 시범사업 추진절차(3월~10월)

지자체명	2월 이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공통사항	•총괄계획가 선정(농식품부, 2.14) •지역개발총괄계획가 교육(농식품부, 2.20~22)	•총괄계획가합동워크숍(농식품부, 3.13)	•조정자문위원회 현장자문(3.25~4.2)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추진사항 모니터링(1차, 5.9~23)			•총괄계획가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계획수립점검(2차, 8.5~30)		•총괄계획가합동워크숍(농식품부, 10.24)
제주시 세계자연유산 권역		1단계_총괄계획가 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	2단계_시범사업 기획제안 작성	4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작성					
	•위탁계약(2012.10) •기본계획 용역착수(1.16)	•총괄실무계획가 위촉(3.6)	•기획제안서 제출(4.9) •추진협의회 구성(4.12) •과업지시서(안)검토 및 통보(4.10~26)			•역량강화사업 시행용역 제안서평가(7.26)	•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8.29)	•기본계획중간보고회(9.29)	•추진협의회 회의개최(10.2)
	-	MP활동횟수(9)	MP활동횟수(3)	MP활동횟수(6)	MP활동횟수(7)	MP활동횟수(7)	MP활동횟수(7)	MP활동횟수(4)	MP활동횟수(8)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1단계_총괄계획가 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	2단계_시범사업 기획제안 작성	3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 발주방식 결정			4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작성			
	•총괄계획가 위촉(2.25) •실무계획가 위촉(3.4)	•기본계획수립방향 및 발주방식 회의(3.6) •기획제안서 제출 및 추진협의회 구성(3.14)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계획, 역량강화 계약 심사 의뢰/자문(4.4/12)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 계획, 역량강화 수의계약 방침결정(4.22)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 계획, 역량강화 용역계약(6월초)	•기본계획 및 경관형성 계획, 역량강화 착수보고회(7.15)			
	-	MP활동횟수(5)	MP활동횟수(1)	MP활동횟수(4)	MP활동횟수(1)	MP활동횟수(6)	MP활동횟수(4)	MP활동횟수(4)	MP활동횟수(4)

지자체명	2월 이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공통사항	•총괄계획가 선정(농식품부, 2.14) •지역개발총괄계획가 교육(농식품부, 2.20~22)	•총괄계획가 합동워크숍(농식품부, 3.13) •조정자문위원회 현장자문(3.25~4.2)		•총괄계획가 사범지구 추진사항 모니터링(1차, 5.9~23)			•총괄계획가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계획수립점검(2차, 8.5~30)		•총괄계획가 합동워크숍(농식품부, 10.24)
강원 횡성 강림면소재지		1단계_총괄계획가 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	2단계_시범사업 기획제안 작성		3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 발주방식 결정	4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12.11) •용역업체 사업수행 능력 심사공고(12.12) •입찰공고(13.1.17) •계약(13.1.31)	•총괄실무계획가 위촉(3.12) •기본계획 착수보고회(3.12)		•추진협의회 구성(5.31)	•역량강화사업 과업 지시서 검토(6.24)	•역량강화사업 과업지시서 검토 및 업체 선정(7.1) •역량강화사업 용역계약(7.18) •기본계획중간보고회, 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7.26)			
		MP활동횟수(2)	MP활동횟수(5)	MP활동횟수(2)	MP활동횟수(4)	MP활동횟수(2)	MP활동횟수(3)	MP활동횟수(2)	MP활동횟수(1)
충북 보은 산대권역			1단계_총괄계획가 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	2단계_시범사업 기획제안 작성		3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 발주방식 결정	4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작성		
	•보은지사 위탁계약(2월 중)		•총괄실무계획가 위촉(4.10) •추진협의회 구성(4.22)		•기획제안 제출(6.4) •과업지시서 내용검토자문(6.12) •용역발주공고(6.18)	•용역제안서 평가선정(7.8) •용역업체 계약(7.15) •기본계획착수보고회(7.18)			
	-	MP활동횟수(6)	MP활동횟수(10)	MP활동횟수(5)	MP활동횟수(6)	MP활동횟수(4)	MP활동횟수(5)	MP활동횟수(6)	MP활동횟수(8)

<table>
<tr><th>지자체명</th><th>2월 이전</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r>
<tr><td>공통사항</td><td>•총괄계획가 선정(농식품부, 2.14)
•지역개발총괄계획가 교육(농식품부, 2.20~22)</td><td>•총괄계획가 합동워크숍(농식품부, 3.13)</td><td colspan="2">•조정자문위원회 현장자문(3.25~4.2)</td><td>•총괄계획가 시범지구 추진사항 모니터링(1차, 5.9~23)</td><td></td><td>•총괄계획가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계획수립점검(2차, 8.5~30)</td><td></td><td>•총괄계획가 합동워크숍(농식품부, 10.24)</td></tr>
<tr><td rowspan="3">경남 합천 쌍책권역</td><td>1단계_총괄계획가 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td><td>2단계_시범사업 기획제안 작성</td><td colspan="2">3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 발주방식 결정</td><td colspan="5">4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작성</td></tr>
<tr><td>•총괄실무계획가 위촉(2.28)
•추진협의회 구성(2.28)</td><td>•기획제안서 제출(3.27)</td><td>•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3.29~4.2)
•용역발주공고(4.12)</td><td>•용역발주 재공고(5.7)
•용역제안서 평가선정(5.23/30)
•용역업체 착수보고회(5.31)</td><td>•용역업체 계약(6.3)</td><td></td><td>•기본계획중간보고회(8.2)</td><td></td><td>•권역발전협의회 개최 및 계획수립자료 수정보완(10.4)</td></tr>
<tr><td>-</td><td>MP활동횟수(4)</td><td>MP활동횟수(1)</td><td>MP활동횟수(5)</td><td>MP활동횟수(4)</td><td>MP활동횟수(5)</td><td>MP활동횟수(3)</td><td>MP활동횟수(3)</td><td>MP활동횟수(4)</td></tr>
<tr><td rowspan="3">경북 봉화 한약우권역</td><td></td><td>1단계_총괄계획가 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td><td>3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 발주방식 결정</td><td colspan="4">4단계_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작성</td><td></td><td></td></tr>
<tr><td></td><td>•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3.18~25)
•총괄실무계획가 위촉(3.25)
•기본계획용역발주공고(3.27)</td><td>•용역제안서 평가선정(4.16/22)
•용역업체 계약(4.24)</td><td>•기본계획 착수보고회(5.13)
•추진협의회 구성(5.16)</td><td></td><td>•기본계획중간보고회(7.31)</td><td></td><td></td><td></td></tr>
<tr><td>-</td><td>MP활동횟수(2)</td><td>MP활동횟수(2)</td><td>MP활동횟수(2)</td><td>MP활동횟수(5)</td><td>MP활동횟수(4)</td><td>MP활동횟수(3)</td><td>MP활동횟수(4)</td><td>MP활동횟수(5)</td></tr>
</table>

(4) 실무계획가 활동내용

○ 실무계획가는 업무지침 상 총괄계획가가 필요로 하는 실무전문가로서 가능한 총괄계획가의 전문분야와 겹치지 않도록 선정 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추천하면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는 총괄계획가를 보좌하도록 되어있다.

○ 실무계획가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총괄계획가가 시·군·구청장에게 추천하여 선정되었으며, 총괄계획가와 실무계획가의 전공분야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27) 2013년 2차 시범사업 실무계획가 현황

사업명	실무계획가	선정방법	전공분야 (총괄계획가/실무계획가)
강원 횡성 강림면정비사업	한양대학교 박노천 겸임교수	총괄계획가 추천	건축/조경
충북 보은 산대권역	사)도코모모 코리아 권순찬 간사	총괄계획가 추천	건축/건축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추사AMD 송동현 대표	총괄계획가 추천	농촌계획/친환경농산물유통
경북 봉화 한약우권역	한국문화경관연구소 박장순 연구원	총괄계획가 추천	조경/도시계획
경남 합천 쌍책권역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원 최영완 연구원	총괄계획가 추천	농촌계획/농촌계획
제주 세계자연유산권역	광장건축사무소 송일영 전무	총괄계획가 추천	건축/건축
전북 임실군	전북대학교 장동헌 조교수	지역총괄계획가 추천	농촌계획/유통
전남 진도군	송정건축사무소 박성진 대표	지역총괄계획가 추천	건축/건축

○ 2차 시범사업에서의 실무계획가는 총괄계획가와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 본인의 전공분야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는 행정업무 처리(회의록작성, 공문처리, 업무연락 등), 주민의견 수렴, 총괄계획가 부재 시 역할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지역총괄계획가 활동내용

○ 지역총괄계획가는 1차 시범지구의 총괄계획가 2명이 2차 시범사업에서 지역총괄계획가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 1차 시범사업에서의 전북 임실 대리만족권역의 총괄계획가였던 손재권 교수가 임실 지역총괄계획가로 선정·위촉되었으며, 전남 진도 금골권역의 총괄계획가였던 서재형건축사가 진도 지역총괄계획가로 선정·위촉되었다.

○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은 초기에 '농업농촌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업무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위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업무범위 등이 업무지침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지역총괄계획가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지자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지역총괄계획가를 전담해야하는지, 지역총괄계획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 2차 시범지구에서의 지역총괄계획가는 역할 및 권한, 업무범위 등에 대한 업무지침 미비로 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지자체 요청 시 각 사업별 자문역할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업무범위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시·군의 지역총괄계획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28) 2013년 2차 시범사업 지역총괄계획가 활동내용

사업명	지역총괄계획가 활동내용
전북 임실군	·권역단위종합사업(5개) 추진 시 사업이해 증진 및 갈등조정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시 전문가 자문 ·임실군 농업농촌발전 5개년계획 수립자문
전남 진도군	·진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진도군 자체 총괄계획가 제도 확대 및 업무지침 제안 ·금골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자문 ·안농마을 리모델링사업 총괄계획가 역할 수행

4) 조정자문위원회 모니터링 활동내용

○ 조정자문위원회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분석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추진협의회 분쟁발생시 조정역할과 총괄계획가가 보고한 추진상황을 토대로 권역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차 시범사업의 조정자문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지구별로 정, 부로 2명의 조정자문위원이 담당하고 있다.

(표 2-29) 2013년 2차 시범사업 조정자문위원 현황

지자체	사업명	조정자문위원	
강원	횡성 강림면소재지	임상철 상지대학교 교수	오형은(부)
충북	보은 산대권역	김승근 강동대학교 교수	임상철(부)
충남	홍성 오누이권역	이경진 공주대학교 교수	조용준(부)
전북	임실 지역총괄	황한철 한경대학교 교수	이경진(부)
전남	진도 지역총괄	조용준 조선대학교 교수	김승근(부)
경북	봉화 한약우권역	도현학 영남대학교 교수	이유직(부)
경남	합천 쌍책권역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	도현학(부)
제주	제주 세계자연유산권역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황한철(부)

○ 2차 시범사업에서 조정자문위원 모니터링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각 사업지구별로 담당 조정자문위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초기 1회 현장점검에 그쳐 각 사업지구별로 조정자문위원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 또한, 시범지구 추진사항 점검 2회는 3명의 조정자문위원이 모든 사업지구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 일회성 현장점검으로 총괄계획가를 지원하고 사업지구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검토·자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1)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현장자문

○ 목적

- 총괄계획가 시범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계획가제도 업무지침에 따라 조정자문위원의 현장자문(예비계획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함

○ 개요
- 일시: 2013년 3월 25일(월) ~ 4월 2일(화)
- 장소: 강원 횡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홍성군, 경북 봉화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 점검자: 조정자문위원 6인

○ 점검내용
- 사업지구현황 및 특징
- 예비계획서 검토 및 자문

(2)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추진사항 점검

○ 목적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도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사항과 시군담당자, 추진위원장, 기본계획수립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수렴 및 대안 제시로 총괄계획가 제도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 개요
- 일시: 2013년 5월 9일(목) ~ 22일(수) 8일간
- 장소: 강원 횡성군, 충북 보은군, 충남 홍성군, 경북 봉화군, 경남 합천군, 제주 제주시
- 점검자: 조정자문위원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농어촌공사 기술본부 기획기술지원단 정진택차장 등 2명, 농어촌연구원 김미영계장 등 2명

○ 점검내용
- 시군담당자, 추진위원장, 기본계획수립자 등 면담
- 추진협의회 구성여부,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 등 파악
-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문제점 등 점검 및 자문

(3) 총괄계획가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계획수립 점검

○ 목적

- 총괄계획가 활동사항 모니터링과 권역단위 기본계획수립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총괄계획가 제도의 개선방향 제안과 '13년도 계획일정에 늦지 않도록 추진사항을 독려하고 총괄계획가 제도 조기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 개요
- 일시: 2013년 8월 5일(월) ~ 30일(금) 11일간
- 장소: 전라남도 진도군 등 8개 시·군
- 점검자: 조정자문위원 이유직 부산대학교 교수, 김승근 강동대학교 교수,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농어촌공사 기술본부 기획기술지원단 정진택차장 등 2명, 농어촌연구원 김미영계장 등 2명

○ 점검내용
- 총괄계획가 활동사항 모니터링
- 기본계획수립 추진사항

5) 교육 및 워크숍운영

○ 2013년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괄계획가 교육 1회와 합동워크숍 2회가 개최되어 총 3회의 교육 및 워크숍이 개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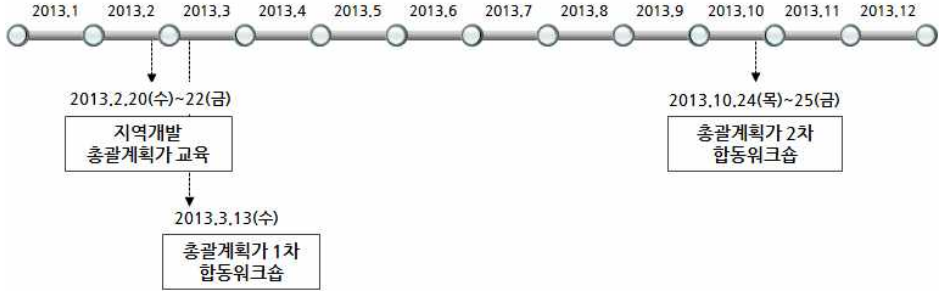

<그림 2-11> 2013년 2차 시범사업 관련 교육 및 워크숍운영 현황

(1) 지역개발 총괄계획가 교육

○ 목적
-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교육 참여자 간 정보 교류 및 논의의 장 마련

○ 개요
- 일시: 2013년 2월 20일 ~ 22일
- 장소: 충남 금산군 신안권역 희망센터
-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등 3명, 각 도 담당자 및 시군담당자 14명, 시범지구 추진위원장 7명, 총괄계획가·실무계획가·조정자문위원 등 21명, 한국농어촌공사 4명

○ 주요내용
- 총괄계획가 도입 취지, 책임과 역할 인식
- 기본계획수립 절차 상 유의사항 파악, 계획 내용의 질적 향상도모
- 지역역량강화 및 주민 주도 계획 수립 방안
- 지역 지원 발굴 활용,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정보공유 및 상호토론

(표 2-30) 지역개발 총괄계획가 교육 주요 프로그램 내용

20일(수)	21일(목)	22일(금)
· 등록 및 입교식 · 농어촌지역개발 정책방향 · 총괄계획가 활동 사례 ·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취지	·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 · 지역역량강화 추진 방향 · 갈등의 이해와 관리 · 퍼실리테이터 기법 · 계획수립방향 토론	· 계획수립 기법 · 통섭의 리더쉽

(2) 총괄계획가 1차 합동 워크숍

○ 목적
-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지역의 관계자에 대해 동 사업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주체별 역할정립을 통해 시범사업의 조기정착 도모

○ 개요
- 일시: 2013년 3월 13(수)
- 장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소랭이권역
-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등 3명, 도 담당자 8명 및 시군 담당과장 8명, 한국농어촌공사 기획기술지원팀장 등 3명, 공사 업무관계자 13명, 총괄계획가 8명, 실무계획가 8명, 추진위원장 6명, 조정자문위원 8명

○ 주요내용
- 정부의 농산어촌 지역개발정책방향 설명
- 총괄계획가 제도 운용에 따른 주체별 역할 및 추진업무 설명
- 총괄계획가와 지자체 등의 업무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
- 2012년 총괄계획가 운용사례 발표 등

(3) 총괄계획가 2차 합동 워크숍

○ 목적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지구의 추진형황 발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향 제시

○ 개요
- 일시: 2013년 10월 24일 ~ 25일
- 장소: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권역
- 참석대상: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등 3명, 지자체담당자 9명, 총괄계획가 8명, 실무계획가 8명, 조정자문위원 2명, 한국농어촌공사 5명

○ 주요내용
- 2013년 총괄계획가 활동성과(8개 지구, 총괄계획가)
- 현장에서 바라본 총괄계획가 제도(8개 지구, 지자체담당자)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농어촌연구원)
- 분임토의(총괄계획가 제도 개선방향)

(표 2-31) 총괄계획가 2차 합동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 내용

24일(목)	25일(목)
· 총괄계획가 활동 사례 발표 (총괄계획가 발표) · 현장에서 바라본 총괄계획가 제도 (지자체공무원 발표) · 총괄계획가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농어촌연구원)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사례발표 (가시리권역 위원장) · 총괄계획가제도 개선방향 팀별토론 (1팀: 총괄계획가, 2팀: 지자체담당자) · 팀별 토론회의 내용 발표 · 가시리권역 현장견학

6)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지역총괄계획가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조사일시: 2013년 11월 11일(월) ~ 12월 2일(월)
- 조사대상: 2013년 8개 시범사업의 지자체 담당자 및 총괄계획가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6개, 지역총괄계획가 시범지구 2개)

○ 설문 주요내용

①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내용

(표 2-32)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자체 담당자	총괄 계획가
제도운영의 효과성	· 총괄계획가 제도도입 후 장점	○	
	· 총괄계획가 제도도입 후 단점	○	
제도운영의 효율성	· 적절한 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	○
	·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	○
	· 총괄계획가 역할 수행 시 어려운 점		○
	· 총괄계획가 적정 구성인원	○	○
	· 적절한 총괄계획가 자격조건	○	○
	·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선정방식	○	○
	· 총괄계획가 업무형태 및 적절활동 빈도	○	○
	· 총괄계획가 활동비 개선의 필요성	○	○
	· 실무계획가 관련 내용	○	○
	· 추진협의회 구성 필요성	○	○
시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운영사항	· 기획제안서 작성내용	○	○
	· 기획제안서 작성시간	○	○
	· 기획제안서 제출방법	○	○
	·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검토기간	○	○
	· 총괄계획가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반영여부	○	○
	· 기본계획수립단계 시 회의참석여부 및 회의 시 역할	○	○
제도만족도 및 개선사항	· 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	
	· 시범사업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	○

구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자체 담당자	총괄 계획가
	· 컨트롤타워 역할	○	○
	· 모니터링 필요성	○	○
	· 조정자문위원회 바람직한 역할		○
	· 총괄계획가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및 개선사항		○
	· 향후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여부	○	
	·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	○	○

② 지역총괄계획가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내용

(표 2-33)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조사대상	
		지자체 담당자	총괄 계획가
제도운영의 효과성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도입 후 장점	○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도입 후 단점	○	
제도운영의 효율성	· 적절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	○
	·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활동기간	○	○
	·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역할	○	○
	· 지역총괄계획가 역할 수행 시 어려운 점		○
	· 지역총괄계획가 적정 구성인원	○	○
	· 적절한 지역총괄계획가 자격조건	○	○
	·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방식	○	○
	· 지역총괄계획가 업무형태 및 적절활동 빈도	○	○
	· 지역총괄계획가 활동비 개선의 필요성	○	○
	· 실무계획가 관련 내용	○	○
	· 추진협의회 구성 필요성	○	○
제도만족도 및 개선사항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	
	· 시범사업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	○
	· 컨트롤타워 역할	○	○
	· 모니터링 필요성	○	○
	· 조정자문위원회 바람직한 역할		○
	· 총괄계획가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및 개선사항		○
	· 향후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활용여부	○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	○	○

(2) 조사결과

① 총괄계획가

▌제도운영의 효과성

○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단점
- 지자체담당자들은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40.0%)>사업주체 간 갈등조정(26.7%)>다양한 주체 참여기회 확대(20.0%) 등의 순으로 장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단점으로는 사업추진 기간연장(60.0%)>사업주체간 갈등확대(20.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34)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단점

□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점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특성 및 관련사업 연계 등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40.0 (6)
사업추진 기간단축	0.0 (0)
사업주체(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 주민)간 갈등조정	26.7 (4)
다양한 주체(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참여기회 확대	20.0 (3)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가능	13.3 (2)
기타	0.0 (0)
계	100.0 (15)

□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단점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기존(총괄계획가 도입 전) 기본계획과 차이 없음	0.0 (0)
사업추진 기간연장	60.0 (3)
사업주체(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 주민)간 갈등확대	20.0 (1)
기타	20.0 (1)
계	100.0 (5)

▌제도운영의 효율성

○ 적절한 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 적절한 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는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 모두 '예비계획 수립 전'이라는 응답이 각각 83.3%,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5) 적절한 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예비계획 수립 전	83.3 (5)	66.7 (4)
기본계획 수립 전	16.7 (1)	33.3 (2)
실시계획 수립 전	0.0 (0)	0.0 (0)
기타	0.0 (0)	0.0 (0)
계	100.0 (6)	100.0 (6)

○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활동기간은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 모두 '전체 사업기간 동안(예비계획단계~준공단계)'라는 응답이 각각 50.0%,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6)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예비계획서 수립 단계까지만	0.0 (0)	0.0 (0)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까지	0.0 (0)	0.0 (0)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까지	33.3 (2)	0.0 (0)
전체 사업기간 동안(예비계획~준공)	50.0 (3)	100.0 (6)
기타	16.7 (1)	0.0 (0)
계	100.0 (6)	100.0 (6)

기타의견: 기본계획수립~준공단계

○ 총괄계획가 수행시 어려웠던 점

- 총괄계획가 역할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역할 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7) 총괄계획가 수행 시 어려웠던 점(중복응답)

구분	총괄계획가(%,명)
주민역량이 부족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음	15.4 (2)
사업절차 및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7.7 (1)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0.0 (0)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역할 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음	38.5 (5)
총괄계획가를 지원해 주는 조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15.4 (2)
지자체의 협조(행정, 법적 검토)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15.4 (2)
기타	7.7 (1)
계	100.0 (13)

○ 총괄계획가 적정 구성인원

- 총괄계획가 역할 수행 시 적정 구성인원은 지자체담당자, 총괄계획가 모두 '2명'이라는 응답이 각각 66.7%,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8) 총괄계획가 적정 구성인원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1명	33.3 (2)	0.0 (0)
2명	66.7 (4)	50.0 (3)
3명	0.0 (0)	33.3 (2)
4명이상	0.0 (0)	16.7 (1)
계	100.0 (6)	100.0 (6)

- 적정 구성인원에 따른 사유

· 지자체 의견

→ 2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100.0%(4)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중복응답): 지역계획 또는 지역개발 37.5%(3), 건축 12.5%(1), 환경 12.5%(1), 도시개발 12.5%(1), 경관 12.5%(1), 유통 12.5%(1)

· 총괄계획가 의견

→ 2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독단적 의견방지 62.5%(5), 행정적 지원필요 37.5%(3)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 농어촌지역개발분야 유경험자 42.9%(3), 건축 28.6%(2), 행정 14.3%(1), 각 마을에서 요구되는 전문분야 14.3%(1)

○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선정방식

- 총괄계획가 선정은 지자체담당자, 총괄계획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이라는 응답이 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9)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선정방식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해당지자체 위촉	0.0 (0)	16.7 (1)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	83.3 (5)	83.3 (5)
해당 지자체 선정 및 위촉	16.7 (1)	0.0 (0)
기타	0.0 (0)	0.0 (0)
계	100.0 (6)	100.0 (6)

○ 총괄계획가 업무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

- 바람직한 총괄계획가 업무형태는 지자체담당자, 총괄계획가 모두 '비상근'이라는 응답이 각각 83.3%,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활동빈도수는 지자체담당자, 총괄계획가 모두 '월 4회'라는 응답이 각각 66.7%,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0) 총괄계획가 업무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

□ 업무형태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상근직	0.0 (0)	33.3 (2)
비상근	83.3 (5)	50.0 (3)
기타	16.7 (1)	16.7 (1)
계	100.0 (6)	100.0 (6)

기타의견: 상근(1회)+비상근(4회)

□ 활동빈도수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월2회	16.7 (1)	16.7 (1)
월4회	66.7 (4)	50.0 (3)
월6회	0.0 (0)	16.7 (1)
월8회	16.7 (1)	16.7 (1)
계	100.0 (6)	100.0 (6)

○ 총괄계획가 1회 활동비 개선의 필요성

- 총괄계획가 1회 활동비 관련하여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 모두 ‘개선 필요’라는 응답이 각각 83.3%, 66.7%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1) 총괄계획가 1회 활동비 개선의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현재 활동비 유지	16.7 (1)	33.3 (2)
개선필요	83.3 (5)	66.7 (4)
계	100.0 (6)	100.0 (6)

- 개선이 필요한 이유

· 지자체 의견

→ 개선이 필요한 이유: 형평성 확보 필요, 만약, 상근직일 경우, 상근직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필요, 활동비에 교통비 포함하여 지급, 1회당 활동비가 아닌 월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요망, 활동비(자문, 회의) 구분 모호 등

· 총괄계획가 의견

→ 개선이 필요한 이유: 활동비(자문비, 회의비) 구분 모호, 기타(현재 활동비 구조는 연구나 리서치에 대한 부분이 계상되지 않음)

○ 적정한 총괄계획가 자격조건

- 총괄계획가 자격조건은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기타’ 의견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괄계획가의 경우 ‘현재 자격조건 유지’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2) 적정한 총괄계획가 자격조건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현재 자격조건 유지	16.7 (1)	66.7 (4)
기타	83.3 (5)	33.3 (2)
계	100.0 (6)	100.0 (6)

- 기타 의견

· 지자체 의견

→ 실무경력 항목의 경우 농촌개발사업 참여 경력만 인정바람, 현장 활동경험자·마을사업참여 경험 우대, 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해본 유경험자, 현재 자격조건을 유지하되 실무경력을 5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역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필요있음

· 총괄계획가 의견

→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삭제 등

○ 실무계획가 관련 사항

- 지자체에서는 실무계획가를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을 위해 위촉했다는 의견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총괄계획가 업무보좌' 의견이 37.5%로 나타났다.
- 실무계획가는 100.0% '총괄계획가 추천'에 의해 선정·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실무계획가의 전공은 농학, 건축공학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시공학 16.7%, 조경학 16.7% 순으로 나타났다.
- 실무계획가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경력은 '4년이상' 50.0%, '2년미만' 33.3%, '2년이상~3년미만' 16.7% 순으로 나타났다.
- 향후, 총괄계획가 제도 상에서 실무계획가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83.5%,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 지자체 의견

→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62.5%>행정업무 보좌 37.5% 순으로 나타남

· 총괄계획가 의견

→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35.7%>행정업무 보좌 28.6%>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21.4%>기타 14.3%(의사결정의 균형성 확보, 현 총괄계획가 제도에서는 실무계획가 역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으로 현체계에서는 협의 조정, 컨설팅의 위치에 머물고 있어 실무라는 용어가 맞지 않음)순으로 나타남

- 또한,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자격조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총괄계획가의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이 없는 현 체제'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자체와 총괄계획가 간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조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한해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 모두 실무경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의견

→ 농어촌 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실무경력(현장경험)이 있는 자 80.0%(4)>총괄계획가와 동일 20.0%(1) 순으로 나타남

· 총괄계획가 의견

→ 농어촌 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실무경력(현장경험)이 있는 자 100.0%(2)

(표 2-43) 총괄계획가 관련 실무계획가 관련 사항

□ 지자체에서 실무계획가 위촉한 이유(중복응답)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 업무보좌	37.5 (3)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62.5 (5)
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0.0 (0)
기타	0.0 (0)
계	100.0 (8)

□ 실무계획가 추천주체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 추천	100.0 (6)
주변 전문가의 추천	0.0 (0)
지자체에서 직접 추천	0.0 (0)
계	100.0 (6)

□ 현재 실무계획가 전공

구분	총괄계획가(%,명)
도시공학(도시계획, 설계 등)	16.7 (1)
농학(농촌계획, 농업경제 및 경영 등)	33.3 (2)
건축공학	33.3 (2)
조경학	16.7 (1)
계	100.0 (6)

<계속>

□ 실무계획가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경력

구분	총괄계획가(%,명)
없음	0.0 (0)
2년 미만	33.3 (2)
2년 이상 ~ 3년 미만	16.7 (1)
3년 이상 ~ 4년 미만	0.0 (0)
4년 이상	50.0 (3)
계	100.0 (6)

□ 실무계획가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필요하다	83.3 (5)	100.0 (6)
필요하지않다	16.7 (1)	0.0 (0)
계	100.0 (6)	100.0 (6)

□ 실무계획가 자격조건 마련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별도의 자격조건이 없는 현 체제	16.7 (1)	66.7 (4)
자격조건 마련	83.3 (5)	33.3 (2)
계	100.0 (6)	100.0 (6)

▌시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운영사항

○ 기획제안서 관련 내용

- 지자체에서는 총괄계획가가 기획제안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획제안서는 '공문'으로 제출한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기획제안서 작성 시 어려운 사항을 물어본 결과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33.2% 중 어려운 이유로는, 짧은 기획제안서 작성 소요기간 때문 100.0%이라고 응답하였다.
-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기획제안서 작성 소요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적정 기획제안서 작성 소요시간을 '2개월' 50.0%, '1개월' 33.3%, '2주일' 16.7% 순으로 응답하여, 지자체담당자는 기획제안서 작성 소요시간을 1~2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괄계획가의 경우 실제 기획제안서 작성 시 걸린 소요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7일이내'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획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질문에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예비계획서 검토 후 사업방향 제시 및 사업내용 일부 변경'의 응답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괄계획가의 경우 '예비계획서 검토 후 사업방향 제시 및 사업내용 일부 변경'과 '향후 사업지역에 대한 총괄계획가의 계획(일정, 회의방식, 발주방식 등) 제시'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적절한 기획제안서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본계획 수립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4) 기획제안서 관련 사항

□ 기획제안서 제출 대상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자체담당자	0.0 (0)
시장·군수·구청장	50.0 (3)
주민	33.3 (2)
기타	13.7 (1)
계	100.0 (6)

기타의견: 기본계획용역이 기 발주된 사항이라 기본계획수립 방향에 대한 제안서가 아닌 자문결과에 대하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함

□ 기획제안서 제출 방법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공문	33.3 (2)
e-mail	16.7 (1)
발표(보고회)	16.7 (1)
기타	33.3 (2)
계	100.0 (6)

기타의견: ①기획제안서 제출안함, ② e-mail+발표(보고회)

□ 기획제안서 작성 시 어려운 점

구분	총괄계획가(%,명)
어려움이 있었다	33.3 (2)
어려움이 없었다	66.7 (4)
계	100.0 (6)

□ 기획제안서 작성 적정 소요시간(지자체담당자, 총괄계획가)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3일 이내	0.0 (0)	16.7 (1)
7일 이내	0.0 (0)	50.0 (3)
2주일	16.7 (1)	0.0 (0)
1개월	33.3 (2)	16.7 (1)
2개월	50.0 (3)	16.7 (1)
계	100.0 (6)	100.0 (6)

□ 기획제안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예비계획서 검토 후 사업방향만 제시	0.0 (0)	16.7 (1)
예비계획서 검토 후 사업방향 제시 및 사업내용 일부 변경	83.3 (5)	33.3 (2)
향후 사업지역에 대한 총괄계획가의 계획(일정, 회의방식, 발주방식 등) 제시	16.7 (1)	33.3 (2)
기타	0.0 (0)	16.7 (1)
계	100.0 (6)	100.0 (6)

- 기타의견: 가장 바람직한 것은 ③사업지역에 대한 총괄계획가의 계획 제시이나 결재권상에 있지 않으면 소용없음

□ 적절한 기획제안서 작성 시기

구분	총괄계획가(%,명)
예비계획서 수립전	16.7 (1)
예비계획서 수립후	0.0 (0)
기본계획 수립전	66.7 (4)
기타	16.7 (1)
계	100.0 (6)

- 기타의견: 총괄계획가가 예비계획서 단계부터 관여한다면 기획제안서는 필요없음. 단, 단계별로 기본계획, 실시계획 피드백은 있어야 함

○ 기본계획 작성자 선정관련

- 총괄계획가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자문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에 지자체담당자들은 '모두반영'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반영못함' 33.3%, '과업지시서 자문만 반영' 16.7%순으로 나타났다.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일괄수탁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자 선정과 총괄계획가 위촉 시기 불일치'와 '총괄계획가 선정 이전에 발주됨'이라고 응답하였다.

- 기본계획 용역업체 제안평가 시 총괄계획가 심사위원 활동에 대해 '참여' 했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미참여'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미참여 사유로는 '총괄계획가 위촉 전 기본계획 용역업체가 이미 선정됨'으로 응답하였다.
-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검토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기간에 대해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의 경우 '2주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33.3%,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5) 기본계획 작성자 선정 관련 사항

□ 총괄계획가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자문 반영여부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모두반영	50.0 (3)
발주방식만 반영	0.0 (0)
과업지시서 자문만 반영	16.7 (1)
반영못함	33.3 (2)
계	100.0 (6)

□ 기본계획 용역업체 제안평가에 총괄계획가 심사위원 활동여부

구분	총괄계획가(%,명)
참여	66.7 (4)
미참여	33.3 (2)
계	100.0 (6)

□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검토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기간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3일	16.7 (1)	16.7 (1)
1주일	0.0 (0)	0.0 (0)
2주일	33.3 (2)	66.7 (4)
3주일	16.7 (1)	0.0 (0)
한달	0.0 (0)	0.0 (0)
기타	33.3 (2)	16.7 (1)
계	100.0 (6)	100.0 (6)

○ 기본계획 수립관련

- 기본계획단계 회의 시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의 경우 '거의 모든 회의 참석'에 대한 응답비율이 각각 66.7%,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회의 시 지자체담당자는 '행정 및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 46.2%, '의견청취' 38.5%, '회의록 작성' 15.4% 순으로 비중을 두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계획가는 '사업주체간 갈등조정' 및 '계획수립 내용 보완 및 조정' 각각 26.1%, '다양한 주체 의견수렴' 21.7%, '행정 및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 17.4%,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각각 4.3% 순으로 비중을 두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6) 기본계획 수립관련 사항

□ 기본계획단계 회의 참석여부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거의 모든 회의 참석	66.7 (4)	83.3 (5)
격주로	16.7 (1)	0.0 (0)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정도만 참석	0.0 (0)	0.0 (0)
기타	16.7 (1)	16.7 (1)
계	100.0 (6)	100.0 (6)

-기타의견: 착수, 추진협의회 회의(필요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정도만 참석

□ 회의 시 역할(중복응답)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사업주체간 갈등조정	0.0 (0)	26.1 (6)
의견청취	38.5 (5)	0.0 (0)
행정 및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	46.2 (6)	17.4 (4)
회의록 작성	15.4 (2)	4.3 (1)
계획수립 내용 보완 및 조정	0.0 (0)	26.1 (6)
다양한 주체 의견수렴	0.0 (0)	21.7 (5)
기타	0.0 (0)	4.3 (1)
계	100.0 (13)	100.0 (23)

- 기타의견: 세부사업별 아이디어 제시, 타권역 사례 제시 등

▌제도 만족도 및 개선사항

○ 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 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에 대해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만족'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만족' 및 '보통' 응답이 각각 16.7% 순으로 나타나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7) 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 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매우만족	16.7 (1)
만족	66.7 (4)
보통	16.7 (1)
불만족	0.0 (0)
매우 불만족	0.0 (0)
계	100.0 (6)

○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모니터링관련 사항

- 시범사업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00.0%,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모니터링의 적절한 시기는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 모두 '분기별 1회'라는 응답이 각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8) 모니터링 필요성 및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필요하다	100.0 (6)	83.3 (5)
필요하지 않다	0.0 (0)	16.7 (1)
계	100.0 (6)	100.0 (6)

-모니터링 필요한 사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총괄계획가 제도도 완전하지않음.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현, 컨트롤타워는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단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사업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월 1회	0.0 (0)	0.0 (0)
분기별 1회	83.3 (5)	83.3 (5)
사업단계별 1회	16.7 (1)	0.0 (0)
기타	0.0 (0)	16.7 (1)
계	100.0 (6)	100.0 (6)

-기타의견

①총괄계획가

: 분기별 1회가 적당하나 모니터링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피검, 수검의 분위기가 아닌 함께 모색하고 발전방향을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이루어짐

○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관련 사항

- 시범사업 관련 추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담당자들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났으나, 총괄계획가의 경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0.0%,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50.0%로 나타났다.
-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주민의 의사를 물을때도 있지만, 전문분야에서는 대표자들이 모여 결정하는 방식이 더 유리함', '외부전문자문가 활용이 매우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경우 '주민측 혼란야기', '권역발전협의회와 중복'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49)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필요하다	0.0 (0)	50.0 (3)
필요하지 않다	100.0 (6)	50.0 (3)
계	100.0 (6)	100.0 (6)

□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에 총괄계획가 포함여부(필요하다는 응답자에 한해)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포함되어야 한다	0.0 (0)	33.3 (1)
포함되지 말아야한다	0.0 (0)	66.7 (2)
계	0.0 (0)	100.0 (3)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추진협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내는 조직으로 이해했을 때 이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입장에서는 총괄계획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더 활동하기 유리하다고 판단됨

○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향후 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범사업 사업추진 주체 간 분쟁발생 시 조정역할' 28.6%, '기본계획수립 시 조정자문위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자문' 28.6%, 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 28.6%로 고루 응답하였다. 따라서 총괄계획가들은 모든 항목에 대해 조정자문위원의 역할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0)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 조정자문위원회 바람직한 역할(중복응답)

구분	총괄계획가(%,명)
시범사업 사업추진 주체 간 분쟁발생시 조정역할	28.6 (2)
기본계획수립 시 조정자문위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자문	28.6 (2)
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	28.6 (2)
기타	14.3 (1)

-기타의견: ①교육(상/하반기) 등으로 자연스럽게 시행, ②총괄계획가 요청시 조정회의 참석

○ 총괄계획가 교육 및 워크숍 관련사항

- 시범사업 추진 시 운영했던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이상이라는 응답이 33.4%로 나타났다.
- 향후 교육 및 워크숍 시 추가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총괄계획가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및 '기존 총괄계획가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브리핑', '기획제안 발표'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표 2-51)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구분	총괄계획가(%,명)
매우 만족	16.7 (1)
만족	16.7 (1)
보통	50.0 (3)
불만족	0.0 (0)
매우 불만족	16.7 (1)
계	100.0 (6)

-기타의견: 교육(상/하반기) 등으로 자연스럽게 시행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83.3%, 100.0%로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 모두 의견공유 창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견공유 창구 운영방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응답이 지자체 담당자 및 총괄계획가 각각 37.5%,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2)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필요하다	83.3 (5)	100.0 (6)
필요하지 않다	16.7 (1)	0.0 (0)
계	100.0 (6)	100.0 (6)

□ 의견공유 창구 운영방법(중복응답)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온라인 커뮤니티(홈페이지, 블로그 등)	37.5 (3)	44.4 (4)
유선전화	0.0 (0)	11.1 (1)
e-mail	0.0 (0)	0.0 (0)
정기적인 회의	25.0 (2)	22.2 (2)
컨트롤 타워 자문	37.5 (3)	22.2 (2)
계	100.0 (8)	100.0 (9)

○ 바람직한 컨트롤타워 역할

-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지자체담당자들은 '총괄계획가 교육' 18.8% 항목에 가장 큰 의견을 보였으며, 총괄계획가의 경우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한 지원 및 자문' 18.5% 항목에 가장 큰 의견을 보였다.
- 또한,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공통적으로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자문', '총괄계획가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제공', '지속적인 워크샵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로 의견이 모아졌다.

(표 2-53) 총괄계획가 제도 상 바람직한 컨트롤타워 역할

□ 바람직한 컨트롤타워 역할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총괄계획가(%,명)
사업 발주방식에 대한 지원 및 자문 (기본계획, SW, 경관계획 수립 발주 등)	9.4 (3)	18.5 (5)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자문 (기본계획단계의 내용 수준범위 등)	15.6 (5)	14.8 (4)
총괄계획가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제공	12.5 (4)	14.8 (4)
백서 발간	9.4 (3)	11.1 (3)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12.5 (4)	11.1 (3)
지속적인 워크샵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12.5 (4)	14.8 (4)
총괄계획가 교육	18.8 (6)	11.1 (3)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	9.4 (3)	3.7 (1)
계	100.0 (32)	100.0 (27)

○ 향후 총괄계획가 활용 의향

- 지자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 의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3.3%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2-54) 향후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 의향

□ 향후 총괄계획가 활용 의향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있다	83.3 (5)
없다	16.7 (1)
계	100.0 (6)

-향후 총괄계획가 제도 활용의향 없는이유: 특별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음

○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기타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관해 물어본 결과는 아래과 같다.

(표 2-55)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기타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구분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 선정관련 사항	· 총괄계획가 자격조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전담자문(부문별 자문이 아닌) 5회이상 참석한 자 요건 추가바람 · 총괄계획가는 지역개발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활용하고, 실무계획가를 건축전공자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음 · 총괄계획가의 자격조건을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농촌지역 개발의 다양한 분야를 볼 줄 아는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총괄계획가 선정과정 상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도록 규정추가바람 · 총괄계획가 위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개선바람 · 실무계획가는 농촌 지역개발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총괄계획가 운영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사업 확정 시점)에 선정, 본 사업이 착수되는 년도 이전에 기획제안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하고 착수년도 6월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총괄계획가를 추천하기 위한 인력풀 제공 필요
사업진행과정 관련사항	· 총괄계획가 기획제안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필요 · 기본계획수립자 선정 시 총괄계획가 참여방안 강화 · 총괄계획가 계획수립 시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구조 재설계 필요 · 총괄계획가 제도 상 추진협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진협의회 보다 실무계획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음 · 총괄계획가 시범지구에 한해, 도승인→시·군승인으로 변경바람 · 총괄계획가 시범지구의 예외적용성 높이는 방안 건의(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지침 및 기준의 과감한 적용 또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 총괄계획가 활동횟수 및 실적 개선필요(지자체담당자 동반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 · 총괄계획가의 지위 상향 필요(ex: 부군수급) · 총괄계획가 제도 확대필요 · 향후,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총괄계획가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 사업후반기에는 비용지급의 어려움이 예상됨 · 총괄계획가 보수 지급 시 회의와 자문의 구분이 모호함으로 고정급 제도 도입이 필요함
컨트롤타워 관련 사항	·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운영 필요 · 컨트롤타워의 상시조직 운영을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및 현장지원·문제점 피드백 기능부여 바람
교육 및 워크숍 관련 사항	· 총괄계획가 워크숍 운영시 사업개편방향 소개 프로그램 추가 · 총괄계획가 워크숍 및 교육은 운영기간 동안 1~2회의 워크숍 및 교육으로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총괄계획가 선정 후 기획제안서 제출 이전까지 최소 3~4회의 합동 워크숍 및 교육이 필요함 · 총괄계획가 관련 워크숍은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정도 시기에 갖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서로 진행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② 지역총괄계획가

▌제도운영의 효과성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단점

- 지자체담당자들은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사업주체 간 갈등조정(25.0%), 다양한 주체 참여기회 확대(25.0%)를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단점으로는 '기존(지역총괄계획가 도입 전) 기본계획과 차이없음' 응답이 50.0%, '기타-단점없음' 응답이 50.0%로 나타났다.

(표 2-56)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단점(중복응답)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점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특성 및 관련사업 연계 등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12.5 (1)
사업추진 기간단축	12.5 (1)
사업주체(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 주민)간 갈등조정	25.0 (2)
다양한 주체(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참여기회 확대	25.0 (2)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가능	12.5 (1)
기타	12.5 (1)
계	100.0 (8)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단점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기존(총괄계획가 도입 전) 기본계획과 차이 없음	50.0 (1)
사업추진 기간연장	0.0 (0)
사업주체(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 주민)간 갈등확대	0.0 (0)
기타	50.0 (1)
계	100.0 (2)

-기타의견: 단점없음

▌제도운영의 효율성

○ 적절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 적절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는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전년도 12월이라는 의견을 주었으며, 지역총괄계획가의 경우 당해연도 1월 또는 지자체 필요성에 따라 시기조정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표 2-57) 적절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구분	적절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 의견
지자체담당자	· 전년도 12월
지역총괄계획가	· 당해년도 1월 · 지자체 필요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여 선정(위촉)해야 함

○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활동기간

-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을 '2년' 100.0%이라고 응답한 반면, 총괄계획가의 경우 '2년' 50.0%, '3년' 50.0%로 응답하였다.

(표 2-58)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활동기간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6개월	0.0 (0)	0.0 (0)
1년	0.0 (0)	0.0 (0)
2년	100.0 (2)	50.0 (1)
3년	0.0 (0)	50.0 (1)
기타	0.0 (0)	0.0 (0)
계	100.0 (2)	100.0 (2)

○ 지역총괄계획가의 바람직한 역할

-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에 대해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의 경우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응답이 각각 40.0%,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9)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역할(중복응답)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 자문	40.0 (2)	33.3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별단위)신청 및 관리	20.0 (1)	16.7 (1)
포괄보조 5개년 사업 총괄 관리	20.0 (1)	16.7 (1)
타 부처와 연계사업 발굴 및 관리	20.0 (1)	16.7 (1)
기타	0.0 (0)	16.7 (1)
계	100.0 (5)	100.0 (6)

- 기타의견
  ① 지역총괄계획가
  : 해당 지자체 발전에 관한 사항 전반,
  지역총괄계획가 단계별 역할
  1단계: 해당 지자체 전반에 관한 현황 파악
  2단계: 진단 및 처방
  3단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4단계: 해당지자체 장치 발전방향 제안

○ 지역총괄계획가 수행시 어려웠던 점

- 지역총괄계획가 역할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역할 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40.0%, '지역총괄계획가를 지원해 주는 조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40.0%로 나타났다.

(표 2-60) 지역총괄계획가 수행 시 어려웠던 점(중복응답)

구분	지역총괄계획가(%,명)
주민역량이 부족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음	0.0 (0)
사업절차 및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0.0 (0)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0.0 (1)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역할 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음	40.0 (2)
지역총괄계획가를 지원해 주는 조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40.0 (2)
지자체의 협조(행정, 법적 검토)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0.0 (0)
기타	0.0 (0)
계	100.0 (5)

○ 지역총괄계획가 적정 구성인원

- 지역총괄계획가 역할 수행 시 적정 구성인원에 대해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1인', '2인' 의견이 각 50.0%로 나타났으며, 지역총괄계획가의 경우 '2인', '3인' 의견이 각 50.0%로 나타났다.

(표 2-61) 지역총괄계획가 적정 구성인원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1명	50.0 (1)	0.0 (0)
2명	50.0 (1)	50.0 (1)
3명	0.0 (0)	50.0 (1)
4명이상	0.0 (0)	0.0 (0)
계	100.0 (2)	100.0 (2)

- 적정 구성인원에 따른 사유

· 지자체 의견

→ 1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분야의 경력(현장경력): 인건비절감/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담당분야/3년 미만

→ 2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분야의 경력(현장경력):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도시계획, 조경/3-5년

· 지역총괄계획가 의견

→ 2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 독단적 의견반영 방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행정적지원 필요, 업무분담 등/지역경제, 경관, 건축 등

○ 적정한 지역총괄계획가 자격조건

- 지역총괄계획가 자격조건은 지자체담당자와 지역총괄계획가 모두 '현재 자격조건 유지'라는 응답이 각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62) 적정한 지역총괄계획가 자격조건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현재 자격조건 유지	100.0 (2)	100.0 (2)
기타	0.0 (0)	00.0 (0)
계	100.0 (2)	100.0 (2)

○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방식

-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은 지자체담당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 50.0%, '해당 지자체 선정 및 위촉' 50.0%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총괄계획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 의견을 100.0%로 제시하였다.

(표 2-63)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방식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해당지자체 위촉	0.0 (0)	0.0 (0)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	50.0 (1)	100.0 (2)
해당 지자체 선정 및 위촉	50.0 (1)	0.0 (0)
기타	0.0 (0)	0.0 (0)
계	100.0 (2)	100.0 (2)

○ 지역총괄계획가 업무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

-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업무형태는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비상근'이라는 응답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총괄계획가의 경우 '비상근' 50.0%, '기타' 50.0% 이라고 응답하였다.
- 또한, 활동빈도수는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월2회' 50.0%, '월6회' 50.0%로 응답하였으며, 총괄계획가의 경우 '월6회' 50.0%, '기타' 50.0% 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64) 지역총괄계획가 업무 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

□ 업무형태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상근직	0.0 (0)	0.0 (0)
비상근	100.0 (2)	50.0 (1)
기타	0.0 (0)	50.0 (1)
계	100.0 (0)	100.0 (2)

-기타의견: 주 2일 상근+필요시 활동

□ 활동빈도수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월 2회	50.0 (1)	0.0 (0)
월 4회	0.0 (0)	0.0 (0)
월 6회	50.0 (1)	50.0 (1)
월 8회	0.0 (0)	0.0 (0)
기타	0.0 (0)	50.0 (1)
계	100.0 (2)	100.0 (2)

-기타의견: 무제한(업무량에 따라)

○ 실무계획가 관련 사항

- 지자체에서는 실무계획가를 '지역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을 위해 위촉했다는 의견이 100.0%로 나타났다.
- 실무계획가는 100.0% '지역총괄계획가 추천'에 의해 선정·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실무계획가의 전공은 도시공학(도시계획, 설계 등) 50.0%, 농학(농촌계획, 농업경제 및 경영 등) 50.0%로 나타났다.
- 실무계획가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경력은 '4년이상' 50.0%, '2년미만' 50.0%로 나타났다.
- 향후,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상에서 실무계획가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 50.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50.0%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실무계획가 역할이 애매모호 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총괄계획가는 100.0% 실무계획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나타냈다. 그 이유로, '업무협력(분야별)', '총괄계획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인력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의 경우 모두 '자격조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00.0%로 제시하였다. '자격조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한해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 지자체 의견

→ 농어촌 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실무경력(현장경험)이 있는 자 100.0%(2)

· 총괄계획가 의견

→ 총괄계획가 자격조건과 동일 50.0%(1), 농어촌 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실무경력(현장경험)이 있는 자 50.0%(1)

(표 2-65) 실무계획가 관련 사항

□ 지자체에서 실무계획가 위촉한 이유(중복응답)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 업무보좌	0.0 (0)
지역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100.0 (2)
지역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0.0 (0)
기타	0.0 (0)
계	100.0 (2)

□ 실무계획가 추천주체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 추천	100.0 (2)
주변 전문가의 추천	0.0 (0)
지자체에서 직접 추천	0.0 (0)
계	100.0 (2)

□ 현재 실무계획가 전공

구분	지역총괄계획가(%,명)
도시공학(도시계획, 설계 등)	50.0 (1)
농학(농촌계획, 농업경제 및 경영 등)	50.0 (1)
건축공학	0.0 (0)
조경학	0.0 (0)
계	100.0 (2)

□ 실무계획가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경력

구분	지역총괄계획가(%,명)
없음	0.0 (0)
2년 미만	50.0 (1)
2년 이상 ~ 3년 미만	0.0 (0)
3년 이상 ~ 4년 미만	0.0. (0)
4년 이상	50.0 (1)
계	100.0 (2)

□ 실무계획가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필요하다	50.0 (1)	100.0 (2)
필요하지 않다	50.0 (1)	0.0 (0)
계	100.0 (2)	100.0 (2)

□ 실무계획가 자격조건 마련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별도의 자격조건이 없는 현 체제	0.0. (0)	0.0 (0)
자격조건 마련	100.0 (2)	100.0 (2)
계	100.0 (2)	100.0 (2)

▌제도 만족도 및 개선사항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에 대해 지자체담당자의 경우 '매우만족' 응답이 50.0%, '보통' 응답이 50.0%로 나타났다.

(표 2-66)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매우만족	50.0 (1)
만족	0.0. (0)
보통	50.0 (1)
불만족	0.0 (0)
매우 불만족	0.0 (0)
계	100.0 (2)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관련 모니터링관련 사항

- 시범사업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50.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50.0%로 나타났다.
- 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에 한해 모니터링의 적절한 시기를 물어본 결과 지자체담당자와 총괄계획가 모두 '분기별 1회'라는 응답을 100.0%로 제시하였다.

(표 2-67) 모니터링 필요성 및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필요하다	50.0 (1)	50.0 (1)
필요하지 않다	50.0 (1)	50.0 (1)
계	100.0 (2)	100.0 (2)

-모니터링 필요한 사유
① 지자체담당자
: 총괄계획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감독

② 지역총괄계획가
: 업무에 대한 조정, 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모니터링 필요하지 않은 사유
① 지역총괄계획가
: 요청시 자문

□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월 1회	0.0 (0)	0.0 (0)
분기별 1회	100.0 (1)	100.0 (1)
사업단계별 1회	0.0 (0)	0.0 (0)
기타	0.0 (0)	0.0 (0)
계	100.0 (1)	100.0 (1)

-기타의견
①총괄계획가
: 분기별 1회가 적당하나 모니터링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피검, 수검의 분위기가 아닌 함께 모색하고 발전방향을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이루어짐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관련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관련 사항
- 시범사업 관련 추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담당자 및 지역총괄계획가는 '필요하지 않다' 각각 100.0% 응답하였다.
-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의 경우 공통적으로 '기존의 발전협의회와 역할 중복'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2-68)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의 필요성

□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필요하다	0.0 (0)	0.0 (0)
필요하지 않다	100.0 (2)	100.0 (2)
계	100.0 (2)	100.0 (2)

-필요하지 않은 이유

① 지자체담당자

: 권역발전협의회와 중복, 행정적인 시간낭비 및 협의위원의 역할 미비 등

② 지역총괄계획가

: 추진위원회, 권역발전협의회에서 처리, 기존의 발전협의회 활용

○ 조정자문위원회 바람직한 역할

- 지역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향후 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범사업 사업추진 주체 간 분쟁발생 시 조정역할' 항목에 대해 100.0%로 응답하였다.

(표 2-69) 조정자문위원회 바람직한 역할

□ 조정자문위원회 바람직한 역할

구분	지역총괄계획가(%,명)
시범사업 사업추진 주체 간 분쟁발생시 조정역할	100.0 (2)
기본계획수립 시 조정자문위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자문	0.0 (0)
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	0.0 (0)
기타	100.0 (2)

○ 지역총괄계획가 교육 및 워크숍관련사항

- 시범사업 추진 시 운영했던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만족' 50.0%, '매우 불만족' 50.0%로 나타났다.
- 향후 교육 및 워크숍 시 추가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선정 전)총괄계획가 양성 교육: 총괄계획가 실무, 사례, 현장교육 등','(선정 후) 총괄계획가 업무교육: 현장교육(최소 2박3일)'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2-70)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 교육 및 워크숍 만족도

구분	지역총괄계획가(%,명)
매우 만족	0.0 (0)
만족	50.0 (1)
보통	0.0 (0)
불만족	0.0. (0)
매우 불만족	50.0 (1)
계	100.0 (2)

○ 지역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에 대해 지자체담당자 및 총괄계획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각각 100.0%로 응답하였다.
- 의견공유 창구 운영방법으로는 지자체담당자 및 지역총괄계획가는 공통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정기적인 회의', '컨트롤타워 자문'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표 2-71)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 의견공유 창구 필요성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필요하다	100.0 (2)	100.0 (2)
필요하지 않다	0.0 (0)	0.0 (0)
계	100.0 (2)	100.0 (2)

□ 의견공유 창구 운영방법(중복응답)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온라인 커뮤니티(홈페이지, 블로그 등)	25.0 (1)	25.0 (1)
유선전화	0.0 (0)	0.0 (0)
e-mail	25.0 (1)	0.0 (0)
정기적인 회의	25.0 (1)	50.0 (2)
컨트롤 타워 자문	25.0 (1)	25.0 (1)
계	100.0 (4)	100.0 (4)

○ 바람직한 컨트롤타워 역할

-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에 대해 지자체담당자들은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자문' 항목에 가장 큰 의견을 보였으며(28.6%) , 총괄계획가의 경우

‘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지속적인 워크샵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항목에 가장 큰 의견을 보였다(각 25.0%).

(표 2-72) 바람직한 컨트롤타워 역할

□ 바람직한 컨트롤타워 역할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지역총괄계획가(%,명)
사업 발주방식에 대한 지원 및 자문 (기본계획, SW, 경관계획 수립 발주 등)	14.3 (1)	12.5 (1)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자문 (기본계획단계의 내용 수준범위 등)	28.6 (2)	0.0 (0)
총괄계획가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제공	14.3 (1)	12.5 (1)
백서 발간	14.3 (1)	12.5 (1)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0.0 (0)	25.0 (2)
지속적인 워크샵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14.3 (1)	25.0 (2)
총괄계획가 교육	14.3 (1)	12.5 (1)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	0.0 (0)	0.0 (0)
계	100.0 (7)	100.0 (8)

○ 향후 지역총괄계획가 활용 의향

- 지자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활용 의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100.0%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2-73) 향후 지역총괄계획가 활용 의향

□ 향후 지역총괄계획가 활용 의향

구분	지자체담당자(%,명)
있다	100.0 (2)
없다	0.0 (0)
계	100.0 (2)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기타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 지자체담당자 및 지역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관해 물어본 결과는 아래과 같다.

(표 2-74)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기타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구분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지역총괄계획가 선정관련 사항	· 시·군에서 지역총괄계획가를 추천하기 위한 인력풀 구축마련 시급 · 지역총괄계획가는 (사업)총괄계획가와는 다르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함(너무 한 분야에 치우칠 필요없음) · 지역개발관련 업무를 종사한 경험이 있고 현재 퇴직한 인력(공무원 등)을 총괄계획가 또는 지역총괄계획가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사업진행과정 관련사항	·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가 불확실함
컨트롤타워 관련 사항	· 정기적인 회의필요(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지역총괄계획가, 컨트롤타워 등)
교육 및 워크숍 관련 사항	· 예비 지역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양성 · 지역총괄계획가의 교육강화 필요(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 필수)

3.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 및 한계점

1) 시범지구 운영에 따른 성과

▌주민참여 유도 및 활성화로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

- 총괄계획가는 기본계획수립 시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공모제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공모(제안)하여 평가·선정하고, 총괄계획가가 자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 홍성 오누이권역의 총괄계획가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주민참여 공모제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
> · 주민참여 공모제방법은 마을주민이 사업내용을 제시하여 공모를 하고, 제시한 사업에 주민이 직접 어떠한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인가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하며, 각 사업팀을 구성하여 팀별 선진지 견학과 교육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후, 사업제안 평가를 통해 방식임
> · 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여 주민스스로가 사업내용을 제안하고 평가·선정함으로써 주민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이 강화됨

- 또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총괄계획가가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에 찾아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역할 및 중재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합의점 도출로 향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기 추진되고 있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출

- 총괄계획가는 권역사업과 연계사업과의 조화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기본계획을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사업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 ·경남 합천 쌍책권역의 총괄계획가는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사업과 본 권역사업 간의 유사·중복사업이 없도록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
> -쌍책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2억으로 쌍책면 성산리 외 2개리에 해당하는 권역으로서 지리적으로 권역의 중앙에 쌍책중학교(2010년 폐교)가 위치하고 있음
> -쌍책중학교는 2013년 3년간(2014~2016) 총사업비 52억의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따라서, 본 권역사업의 총괄계획가는 사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연계사업과의 기능 및 역할을 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총괄·조정함
> : 다라국 휴(休) 체험관(권역사업) : 전통문화체험 및 힐링 공간 등 활용
> 목재문화체험장(연계사업) : 전시 및 목재체험을 중심으로 활용

- 해당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총괄계획가는 지역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수립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특성에 맞는 실무계획가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보완하였으며, 권역사업으로 추진될 경관형성계획을 권역에 기 추진되고 있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및 수립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충남 예산 황새권역은 권역사업 이외에 황새 서식지복원을 위해 8개 사업에 77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황새 자연증식 종합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예산 황새권역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황새와 공생하는 친환경 생태권역'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총괄계획가는 권역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자 선정 시 심사기준을 제시함. 본 권역은 황새와 공생하는 권역이므로 생태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인력이 있는 회사가 선정되도록 함
· 본 권역사업은 권역주변 여타사업(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 무한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황새 고향서식지조성사업 등)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본 권역사업만을 위한 경관형성계획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경관형성계획을 권역사업에서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추후 발주 하도록 협의함
· 또한, 실무계획가를 황새복원센터 사무국장을 선정하여 총괄계획가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어 사업을 이끌어감
  * 실무계획가는 사업전부터 권역에서 친환경보급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있고, 황새 야생방사 사업을 잘 알고 있는 황새복원센터 사무국장임(황새복원센터와의 교감도 고려)

- 또한, 총괄계획가가 권역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여 자문함으로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 경북 의성 산수유권역의 총괄계획가는 작승폐교를 활용하여 권역센터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주민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커 지지부진 하고 있던 중 총괄계획가인 도현학 교수님에게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의성교육지청과 협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폐교를 무상임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협력적 사업추진 체계구축으로 합리적인 의사소통 가능

- 총괄계획가는 지역주민, 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등이 주기적으로 함께 회의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총괄계획가가 회의를 리드하면서 사업주체 간 의견수렴 및 조정, 합의도출 함으로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 가능토록 하였다.

· 횡성 강림면소재지 총괄계획가는 총괄계획가, 주민, 지자체담당자(총괄부서 및 사업시행부서), 용역사(기본계획+역량강화) 등이 한자리에 모여 주기적으로(매주 월요일) 목표 및 사업내용에 대해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함
· 회의 시에는 총괄계획가가 주도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주제에 대해 사업주체별(주민, 지자체, 용역사 등)로 고루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함
· 회의주제에 대해 사업주체 간 갈등 및 이견이 발생한 경우, 주제에 대한 대안을 2~3가지를 제시하도록 하여 선택하도록 함

▌현재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검토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독려

- 지역총괄계획가는 시·군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자문 및 조언활동 수행하였다.

· 임실 및 진도 지역총괄계획가는 군에서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읍면소재지)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계획수립단계,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 등)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언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독려함

2) 한계점

(1)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 활동기간 관련

▌총괄계획가 선정에서 위촉까지 기간지연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계획가의 선정을 2012년 3월초에서 2013년 2월초로 조기 추진하였으나, 시·군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까지 평균 28일[7]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이 줄어들어 시간적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7) 2013년 총괄계획가 2차시범사업의 경우 총괄계획가 선정(2013.2.14)이후 시군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까지 최소 11일에서 최장 55일까지 소요되었으며, 평균 28일정도가 소요됨.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개선 필요

- 현재 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이 기획단계부터 기본계획수립 종료까지로써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이 실시설계과정에서 원안대로 명확하게 반영될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총괄계획가의 투입시점은 기본계획수립 전으로 총괄계획가가 사업초기에 만든 예비계획부분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비계획서를 부정하거나, 주민과의 갈등발생이 발생함으로 투입시점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2) 사업추진주체 관련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 및 협의회와 시범사업의 추진협의회 이원화 구조에 따른 문제점 발생

- 각 시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 시·군에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추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읍면 및 권역발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 하지만 총괄계획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새롭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함에 따라 일부 주민대표만 추진협의회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기존에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읍면 및 권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어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일부 주민대표 참여, 전문가 중복자문)되어 추진협의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시범사업에서의 추진협의회가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지역주민, 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 등)를 대상으로 추진협의회 필요성 및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표 2-75) 사업추진 관련 조직(추진협의회)과 운영현황

사업명	명칭	기능 및 역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역할 ①사업신청을 위한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 참여 ②읍면발전협의회 참여 ③사업대상지 선정 후 기본계획수립 지원 ④공동시설,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해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구성방법 - 주민회의를 통해 3~5인의 대표를 선정하되, 마을대표,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은 가급적 참여
	읍면발전위원회 또는 권역발전위원회	·기능 및 역할 ①신규 사업신청서 작성지원 ②사업 시행 단계별 내용 협의·지원 - 지역특성 및 개발과제 도출 지원,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부문별 기본계획(안)협의,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사업 추진방안 협의 ·구성방법 - 주민대표, 여성지도자,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사회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시장군수 등 20인 이내로 구성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기능 및 역할 ①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②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와 협력 ③수립된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의견교환 ·구성방법 - 해당지자체담당자, 시범사업 관련기관 담당자, 주민대표, 민간단체 등 지역전문가를 기반으로 9~12인 이내로 구성

▌컨트롤타워 부재

- 현재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추진 총괄 및 운영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총괄계획가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1,2차 시범사업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총괄계획가 및 조정자문위원 활동내역 관리,

모니터링 및 워크숍개최 지원 등의 행정지원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시범사업추진을 총괄 및 운영 지원하는 역할로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실무계획가 역할 모호

- 총괄계획가 제도 업무지침에 따르면 실무계획가의 역할은 '총괄계획가를 보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좌에 관한 명확한 역할 규정이 어렵고 자격조건 및 역할과 업무, 권한 등이 없어 실무계획가로서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 총괄계획가와 실무계획가의 전공분야가 다른 경우 실무계획가는 기본계획 수립 시 본인의 전공분야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업무 처리(회의록작성, 공문처리, 업무연락 등),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같은 실무계획가이나 역할의 차별성이 존재하였다.

(3) 사업추진과정 관련

▌기획제안서 제출방식 개선필요

- 총괄계획가 선정 이후, 예비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역자원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짧은 기간 내에 2인의 인력으로 기획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총괄계획가의 보수지급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기본계획 수립자 선정 시 총괄계획가가 제시한 기획제안결과를 토대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제안이 늦어지면 과업발주가 지연되어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기획제안서의 작성방식,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수립자 선정 후 총괄계획가가 위촉됨으로서 사업취지에 맞는 기본계획수립자 선정의 어려움

- 이미 기본계획수립자가 선정된 후 총괄계획가가 선정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 및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의 업체가 선정된 경우 총괄계획가가 기획제안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우며, 총괄계획가가 기본계획수립을 총괄·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결국 부실한 계획수립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우수한 기본계획수립자 선정은 계획의 질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계획가가 발주방식검토 및 업체 선정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의 선정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기본계획 승인관련 문제점

- 시범지구의 기본계획 승인은 시·군청장이 심의하고 시·도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시·도차원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총괄계획가와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이 자칫 부족한 결과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도의 의견과 상충될 경우 사후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 역할 및 권한의 명확한 해석필요

-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상 사업단계별로 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이 불명확함에 따라, 총괄계획가가 기본계획수립과정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괄계획가 주도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계획수립 주체(지자체, 지역주민, 기본계획수립자)사이에서 총괄계획가를 자문위원, 또는 시어머니로 인식하고, 총괄계획가는 계획수립자를 평가와 지시 관계로 인식하여 계획수립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또한, 기본계획수립자의 선정 시 총괄계획가가 계약방식, 선정 등의 권한을 강조할 경우 지자체 및 일괄수탁을 담당한 농어촌공사에서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총괄계획가 활동횟수 및 보수기준 모호

- 현재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실적에 의한 활동비만 지급하여 총괄계획가 업무수행에 따른 기획제안서 작성, 자료수집, 서류정리 등의 업무에 대한 활동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보수지급 시 자문과 회의의 구분이 모호 한 실정이다.

- 또한, 지침 상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월 8회로 권장하고 있으나 사업단계별, 사업특성 및 상황에 따라 총괄계획가의 활동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실정에 맞지 않았다. 따라서 활동횟수는 평균 횟수로 제시하되 사업단계별로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다만, 적정업무량 초과 시 최대지급가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 제도 홍보 필요

- 시범사업 초기 지자체와 기본계획수립자의 경우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총괄계획가를 자문위원정도로 생각하여 총괄계획가 지원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기본계획수립자의 경우 기 진행된 계획수립과정의 업무 매뉴얼과 총괄계획가시범사업 진행과정의 견해 차이(업무체계 다양화)에 의하여 업무에 혼선을 빚으며 그 과정에서 총괄계획가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 시범사업 지역주민 또한 총괄계획가를 지자체담당자, 자문위원 정도로 인식하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총괄계획가가 주민의견 및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향후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에서는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 사전에 지역주민 및 기본계획수립자에게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4) 지역총괄계획가 관련

▌지역총괄계획가 역할 및 권한 등에 대한 지침부재

- 2차 시범사업에서 지역총괄계획가를 선정·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업무범위 등이 지침에 제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지역총괄계획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지자체는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야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였다.
- 따라서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업무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5) 조정자문위원회 모니터링 관련

▌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필요

- 1차 시범사업에서는, 조정위원회 개최 후 후속조치가 미비하였고, 업무지침상 조정위원회의 역할로서, 조정위원을 파견하여 기본계획 심의·조정·승인절차를 수행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았다[8].
- 2차 시범사업에서는, 권역별로 2인의 조정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권역별 담당 조정자문위원의 현장점검은 1회에 그쳤으며, 이후 2회 시범지구 추진사항 점검은 3명의 조정자문위원이 모든 사업지구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으로 수행되어 일회성 현장점검으로 총괄계획가를 지원하고 사업지구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검토·자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조정자문위원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관리 방식 개선필요

- 현재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은 조정자문위원이 기획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의 최종평가 및 성과공유 개선방향 모색은 시범사업 결과발표회에서 이루어졌다.
- 모니터링은 시범사업의 추진과정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방법 마련을 통해 사업을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추진과정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장 마련 필요하다.

(6) 교육 및 워크숍관련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총괄계획가 선정 후 개최된 교육내용은 일반적인 이론교육에 치우치고, 워크숍의 경우 1회성 단기개최로 인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8)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제도 백서(2013), pp.279.

공유시간이 충분치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생산적인 효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향후 총괄계획가 교육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총괄계획가 제도와 관련된 프로세스, 지침, 매뉴얼, 법률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사전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워크숍은 충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기적 개최 필요하다.

제3장

국내·외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사례

제3장 국내·외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사례

제1절 국내사례

1. 국토교통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1)]

1) 총괄계획가 도입배경

○ 국토교통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2007년 건축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국토환경 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9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디자인 기획능력 향상 및 국토환경의 디자인 가치 향상,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 활용, 신규 정책기법 및 시스템(기획제안, 건축디자인기준 적용 등)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관련 정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지나친 성과위주의 디자인 프로세스로 인한 디자인 품질 저하, 잦은 설계 변경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었으며, 행정의 순환보직에 의한 인사체계로 인해 일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9년부터 시범사업 수행과정에 민간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 기획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단계까지 디자인의 일관성 확보를 유도하였다(서수정 외, 2012).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서의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시공, 유지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디자인총괄계획가와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해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검토위원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활용,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추진관련 기준을 담은 업무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본 지침에서 시범사업의 일관성

1) 국토교통부(2012),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업무지침 참조

확보와 디자인 품질제고를 위해 디자인 총괄계획가 제도와 디자인검토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담고 있다.

2) 용어정의 및 법적근거

(1) 용어정의

○ 디자인총괄계획가 제도: 디자인총괄계획가가 기획단계부터 마스터 플랜 수립, 설계, 시공, 유지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것
○ 디자인검토 제도: 디자인검토위원이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디자인검토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계별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2) 법적근거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상의 민간전문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건축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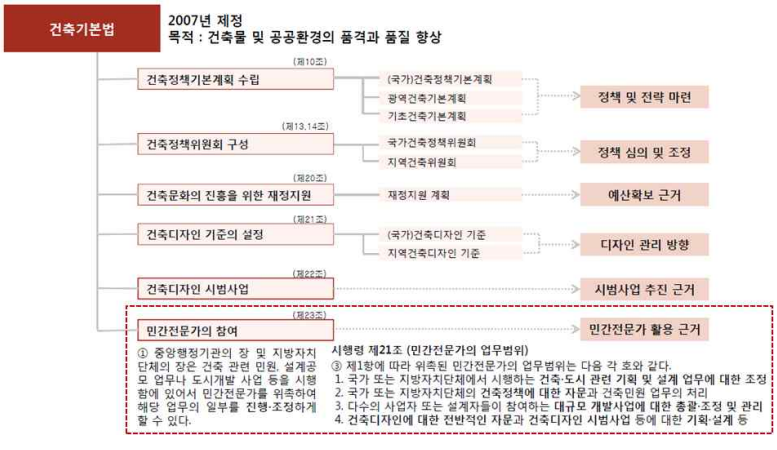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2), 2012 AURI 건축도시포럼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포럼자료

<그림 3-1> 민간전문가의 참여근거

○ 또한,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전문가를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총괄·조정 등의 업무 담당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시범사업 선정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1건만 응모가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모 계획서 작성 시에는 지역 현실여건이 반영된 공모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모제안서 작성 시부터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선정 평가는 서면심사(70점), 현지평가(30점) 및 가점사항 등을 토대로 1.5배 이내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을 지정한다.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5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시범사업은 전년도 10월에 공모하여, 12월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평가 및 후보를 선정하고 당해 연도 1월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당해 연도 12월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로 사업을 진행한다.

추진단계	일정
시범사업 공모 (평가기준 확정 및 통보)	´13.10월말
⬇	
시범사업 공모 마감 (평가자료 접수 마감)	´13.12월초
⬇	
선정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 및 후보선정 (서면심사 및 현지평가)	´13.12월말
⬇	
국건위 심의 및 시범사업 지정	´13.1월초
⬇	
예산 교부	´13.1월중
⬇	
시범사업 성과평가	’14.12월

<그림 3-2>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추진절차

4) 사업 추진주체 및 역할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추진주체[2]는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 검토위원, 추진협의회,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주요 추진주체별 역할 및 권한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및 권한

구분	역할
디자인 총괄계획가	◦기획안 작성을 주관하고 계획수립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총괄·조정 ◦시범사업 성격에 따라 계획수립 및 설계단계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고, 용역수행주체의 선정과정에 의견제시 ◦계획수립 및 조정방식, 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설계 및 시공단계의 설계변경 및 기타 계획안 수정·변경의 검토·승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함 ◦기타 세부권한 및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 조정이 가능함
디자인 검토위원	◦시범사업의 기획부터 시공단계까지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디자인검토를 통해 추진단계별로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조언자 역할 수행 ◦디자인총괄계획가와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 업체 등과의 이견 발생 시 조정자의 역할 수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추진협의회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 제시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시범사업 홍보 및 사업정보관리 ◦시범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시범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자료구축 ◦그 밖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모니터링팀	◦시범사업 계획 수립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문제점, 시사점 도출을 통해 사업 수정·보완에 필요한 의견서를 지자체 제공 ◦모니터링을 위한 디자인검토회의 참석, 사업대상지 답사, 서면 및 유선을 통한 진행사항 파악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정 지원

2) 2009년에는 총괄계획가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디자인실무계획가를 선정하여 운용하였으나 계획수립자 및 실무진이 총괄계획가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디자인실무계획가의 역할이 모호하고 총괄계획가나 디자인 검토위원의 역할과 차별성이 없자 2010년도에는 디자인 실무계획가를 폐지하였음(염철호, 오주형, 차미희, 조은경, 2012,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연구, 국토해양부, p.117)

구분	역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 시범사업 업무지침 제시 ◦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등 민간전문가 지원 ◦ 계속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시범사업의 총괄관리 및 행정지원, 홍보
지방자치 단체	◦ 디자인총괄계획가의 효율적 역할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 시범사업의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및 필요시 지원조직 구성 ◦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디자인검토 회의에 대한 일정, 예산, 행정 등 전반적인 준비 ◦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조경 등의 조성사업과 연계방안 마련 및 사업간 네트워크 구축 ◦ 계획수립을 위한 해당 지역의 디자인정책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 조사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 ◦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지역 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필요시)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실무담당자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순차적인 교체를 통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 계획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결정에 있어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을 수용하며, 용역주체의 선정과정에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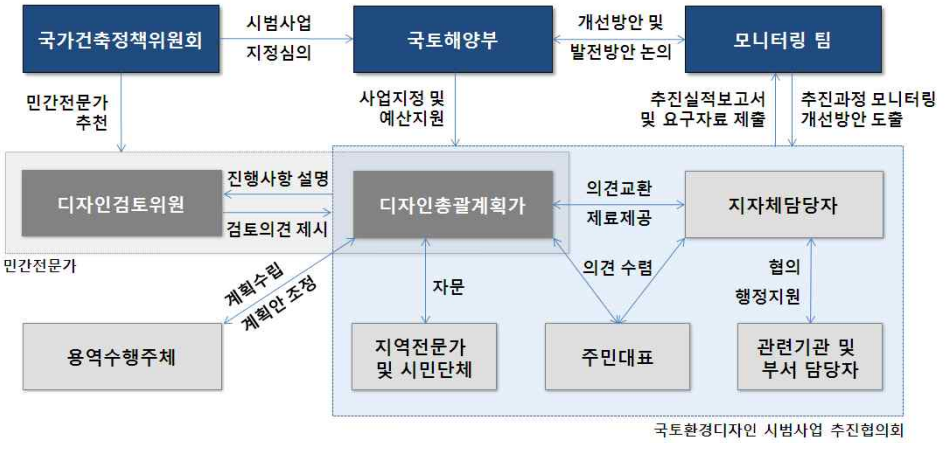

출처: 국토해양부(2012),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업무지침

<그림 3-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주체 및 추진체계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서는 사업단계별로 디자인검토위원이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디자인검토회의는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디자인총괄계획가, 지자체담당자, 디자인검토위원 2인, 계획수립자, 모니터링팀의 전원참석을 전제로 총 3차에 걸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계별 디자인검토회의의 주요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단계별 디자인검토 주요내용

구 분		디자인검토 내용
기획 단계 (1차 검토)	현황분석의 충실성	◦지역의 현황분석 및 잠재력 분석의 충실성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 건축·도시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 분석의 실효성
	계획범위 및 방향설정 등의 적절성	◦선정취지와의 부합성 ◦지역의 현황 및 관련사업·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의 범위 및 방향 설정의 적절성 ◦지역의 수요 및 현황에 따른 기능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파급효과 ◦전체 사업예산 편성내용
	발주계획의 적절성	◦발주방식의 타당성 ◦과업내용, 응모업체 자격조건 등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절성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 (2·3차 검토)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
	계획안의 적정성·합리성	◦선정취지 및 시범사업 기획안과의 부합성 ◦사업규모 및 기능, 형태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타 건축·도시 조성관련 사업으로의 시너지효과 가능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향후 실행·관리방안의 합리성
	계획수립과정의 협력적 설계진행 여부	◦사업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적 설계체계구축 현황, 각 분야 전문가 의견 반영 과정 및 결과 ◦추진협의회 운영 내용 및 결과

※ 2011년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추진절차 및 모니터링 결과에 의거하여 작성('2011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 연구' 참조)

출처: 서수정외, 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그림 3-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업추진 절차

5) 총괄계획가 자격 및 위촉

○ 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 당 1인을 위촉하며, 시범사업 공모 시 사업 성격에 적합한 예비 총괄계획가를 지정하여 응모[3]하거나, 시범사업 선정 후 총괄계획가 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격검증 및 타 지자체와의 중복성·적정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지정하고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 이 때, 지자체장은 총괄계획가 선정 시「지자체 추천 총괄계획가 기준」에 의거하여 추천해야 하며, 이는 (표 3-2)와 같다.

(표 3-3) 지방자치단체 추천 디자인 총괄계획가 기준

구분	세부내용
건축·도시 조성 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지역만들기 등 각종 사업을 전담한 코디네이터 또는 총괄계획가 ◦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 관련 마스터플랜, 지역활성화 계획, 경관계획 수립 등의 책임자로 참여했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선임된 공공건축가, 코디네이터, 디자인 어드바이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등의 심의위원이 아닌 지역의 건축·도시 조성을 위해 별도로 위촉한 외부전문가

○ 디자인검토위원은 해당 지자체별 2인으로 구성운영하며,「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를 준용하여 건축·도시·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 다만,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은 비상근직으로 원래의 보직과 겸업할 수 있으나 위촉기간 동안 다른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의 디자인총괄계획가나 디자인검토위원, 용역수행주체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3) 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 지자체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모니터링 연구진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였으나, 시범사업 지자체 확정 이후 총괄계획가 선정이 모두 완료되어 워크숍을 개최하기 까지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계획 수립기간이 촉박해지고,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공모 계획서 작성 시 예비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참여시켜 지자체 선정과 동시에 총괄계획가를 선정함으로서 소요기간을 단축하였음(2013. 11. 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모니터링팀 인터뷰결과)

6) 총괄계획가 운영기간 및 보수

○ 디자인총괄계획가 제도와 디자인검토 제도는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단계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시공, 유지에 이르는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운영한다.
○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의 보수는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10내외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등을 준용하여 1개월 또는 2개월마다 지급하고, 2개월마다 보수지급 내역을 모니터링 연구진에게 제출한다.
○ 보수는 사전검토수당, 회의수당, 교통비로 구성되며,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사전검토, 회의참석 등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 적정 업무량은 사전검토 및 회의참석 각 4회를 권장하고 있으며, 디자인검토위원은 업무지침에 규정된 디자인검토회의의 참여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 사전검토수당: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기술사(건설 및 기타)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회의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
  - 교통비: 민간전문가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 지급

7) 기타(시범사업 홈페이지 운영)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행정 및 사업의 홍보를 지원하고, 참여주체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시범사업 지원, 평가, 선정, 질의응답과 같은 사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행정을 지원하며, 연도 및 개별사업별로 사업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 각 연도별 시범사업 컨텐츠는 시범사업 공모개요, 개별 시범사업 소개, 월별 추진실적보고,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월별 추진실적 보고는 지자체담당자가 정해진 양식에 맞춰 매월 첫째주에 지난달 추진사항 관련사항에 관한 주요내용 및 결과, 반영사항을 정리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연도별 컨텐츠 내용

<그림 3-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홈페이지

8) 모니터링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은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를 도출하여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차년도 시범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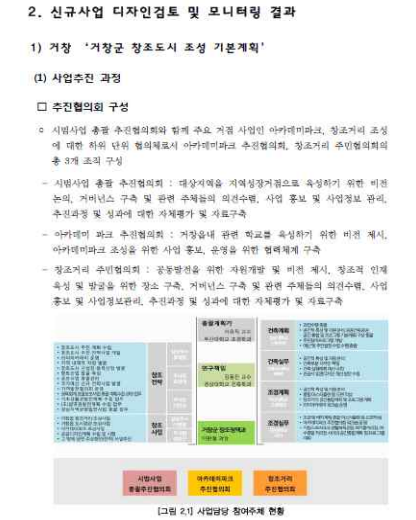

2. 신규사업 디자인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

1) 거창 '거창군 창조도시 조성 기본계획'

(1) 사업추진 과정

□ 추진협의회 구성

○ 시범사업 총괄 추진협의회와 함께 주요 거점 사업인 아카데미파크, 창조거리 조성에 대한 하위 단위 협의체로서 아카데미파크 추진협의회, 창조거리 추진협의회를 총 3개 조직 구성

- 시범사업 총괄 추진협의회 : 대상지역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 논의,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사업 홍보 및 사업정보 관리,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자료구축
- 아카데미 파크 추진협의회 : 거창읍내 관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비전 제시, 아카데미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 홍보,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창조거리 추진협의회 : 공동발전을 위한 자원개발 및 비전 제시, 창조적 인재육성 및 발굴을 위한 장소 구축,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사업홍보 및 사업정보관리,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자료구축

[그림 2.1] 사업담당 참여주체 현황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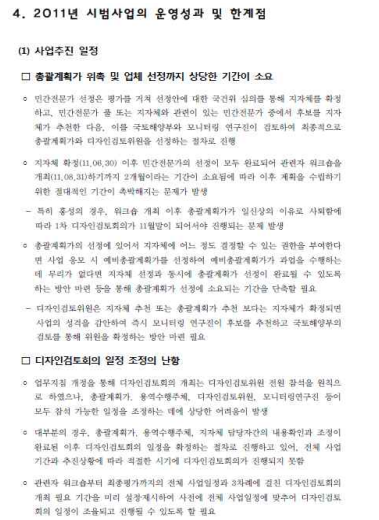

4. 2011년 시범사업의 운영성과 및 한계점

(1) 사업추진 일정

□ 총괄계획가 위촉 및 업체 선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 민간전문가 선정은 평가를 거쳐 선정안에 대한 국건위 심의를 통해 지자체를 확정하고, 민간전문가 풀 또는 지자체와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후보를 지자체가 추천한 다음, 이를 국토해양부와 모니터링 연구진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

○ 지자체 확정(11.06.30) 이후 민간전문가의 선정이 모두 완료되어 관련자 워크숍을 개최(11.08.31)하기까지 2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간이 촉박해지는 문제가 발생

- 특히 홍성의 경우, 워크숍 개최 이후 총괄계획가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1차 디자인검토회의가 11월말이 되어서야 진행되는 문제 발생

○ 총괄계획가의 선정에 있어서 지자체에 어는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사업 응모 시 예비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예비총괄계획가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부리가 없더면 지자체 선정과 동시에 총괄계획가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총괄계획가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

- 디자인검토위원은 지자체 추천 또는 총괄계획가 추천 보다는 지자체가 확정되면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즉시 모니터링 연구진이 후보를 추천하고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통해 위원을 확정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디자인검토회의 일정 조정의 난항

○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디자인검토회의 개최는 디자인검토위원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연구진 등이 모두 참석 가능한 일정을 조정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

○ 대부분의 경우, 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지자체 담당자간의 내용확인과 조정이 완료된 이후 디자인검토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어, 전체 사업기간과 추진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디자인검토회의가 진행되지 못함

○ 관련자 워크숍부터 최종평가까지의 전체 사업일정과 3차례에 걸친 디자인검토회의 개최 필요 기간을 미리 설정·제시하여 사전에 전체 사업일정에 맞추어 디자인검토회의 일정이 조율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모니터링에 따른 운영성과 및 한계점

<그림 3-6>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모니터링[4]은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업무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3명의 인원(박사 2명, 연구원 1명)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4) 염철호, 오주형, 차미희, 2012,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례집, 국토해양부, p.7 참조

- 사업추진조직 및 추진현황 관련 자료 분석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들의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명단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협의회 구성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체별 역할, 의견수렴과정, 논의과정 등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한다.
- 디자인검토(Design Review)회의 참석 및 현지실사
  디자인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진행사항, 회의 시 논의내용, 디자인검토위원이 작성한 디자인검토의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정취지와의 부합여부,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파악한다.
- 시범사업 홈페이지 온라인커뮤니티 운영사항
  시범사업 홍보, 관리를 위해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 공유, 사업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토록 하여 사업별 주요 진행사항 및 추진활동 등에 대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모니터링은 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와 설계단계, 시공단계별로 추진협의회 운영과 디자인검토, 사업추진내용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며, 각 단계별 자세한 모니터링 기준은 (표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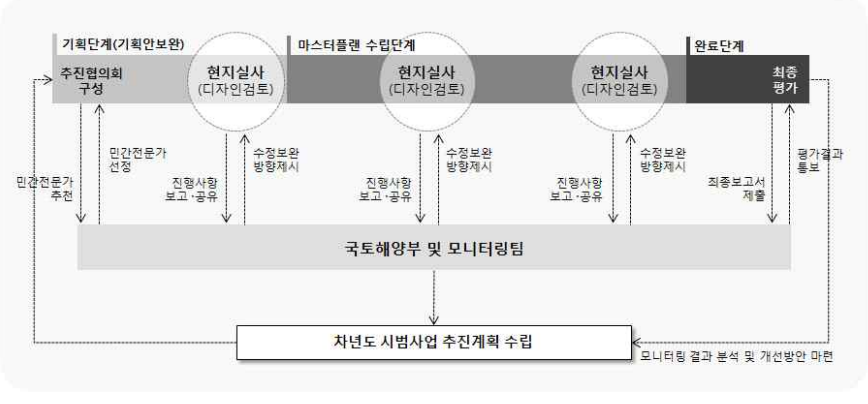

출처: 국토해양부(2012),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례집

<그림 3-7>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모니터링 수행체계

(표 3-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기준

구분		기준	지표
기획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	추진 협의회 운영	사업추진과정 기록의 충실성	추진협의회, 디자인검토, 실무진 협의 등 시범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의 기록 여부 및 작성한 기록물은 충실한지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충실성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부여가 적절하며, 각각의 참여주체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상호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디자인 검토	일정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이 계획수립에 있어서 무리가 있거나 불합리하지는 않은지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의 합리성	용역 발주방식이 합리적이고 발주시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기획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디자인검토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제시되었는지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의 충실성	디자인 검토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향후 추진계획의 적절성	디자인 검토 회의 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업추진 내용	지자체의 추진의지	시범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추진사항 보고의 충실성 및 홈페이지 활용도	월간추진실적 보고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보공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활발히 활용하였는지
		예산사용의 적절성	시범사업의 취지와 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설계 및 시공 단계	추진 협의회 운영	사업추진과정 기록의 충실성	추진협의회, 디자인검토, 실무진 협의 등 시범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의 기록여부 및 작성한 기록물은 충실한지
		추진협의회 운영의 충실성	각각의 참여주체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디자인 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내용이 상위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지
		일정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이 계획수립에 있어서 무리가 있거나 불합리하지는 않은지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의 합리성	용역 발주방식이 합리적이고 발주시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상위계획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디자인검토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제시되었는지
		향후 추진계획의 적절성	디자인검토회의 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구분		기준	지표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의 충실성	디자인검토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추진 내용	지자체의 추진의지	시범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시범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설계 매뉴얼 작성 등 시범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이 충분한지
		추진사항 보고의 충실성 및 홈페이지 활용도	월간추진실적보고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보공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활발히 활용하였는지
		예산사용의 적절성	시범사업의 취지와 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2.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1) 총괄계획가 도입배경

○ 영주시에서는 2008년 '장소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도심지 내 공공건축 통합관리와 장소중심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한 전략(통합마스터플랜[5]) 수립을 계기로 하여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행정조직 내에서 부서 간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총괄관리조직과 전담이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시장 지시 하에 영주시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장소중심의 핵심 전략사업을 총괄적으로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디자인관리단장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전담부서인 디자인관리단을 설치하였다 (서수정 외, 2012).

5)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계획(통합마스터플랜)은 공공건축을 통해 지역고유의 장소를 발견하여 장소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를 도시적 차원으로 확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을 장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적 차원의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방안과 재정조달 방식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조준배 외, 2008,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 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1)

(2) 용어정의 및 법적근거

① 용어정의[6)]

○ 공공디자인: 공공기관이 영주시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이미지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
○ 디자인관리단: 영주시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건축, 도시, 토목, 조경, 조명, 색채, 공공디자인 등 전문적인 디자인관리를 위해 조직한 관리조직
○ 디자인전문가: 디자인관리단의 운영과 영주시 디자인 관리를 위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법적근거

○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은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조례 제0823호)에 근거하여 디자인관리단의 설치 및 업무, 디자인전문가의 위촉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사업 추진주체 및 역할

○ 영주시 공공디자인 등의 전문적인 디자인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주체[7)]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상설조직: 디자인관리단장 1명
공공건축가 2명
디자인관리단 내 공공디자인담당 3명
디자인자문위원회 15명(임명직 2명, 위촉직 13명)
- 비상설조직: 주민협의회(현재 행안부 시범사업 7명)
총괄계획가(현재 국토부 사업 1명)

6)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조례 제0823호) 참조
7) 2013. 07. 25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인터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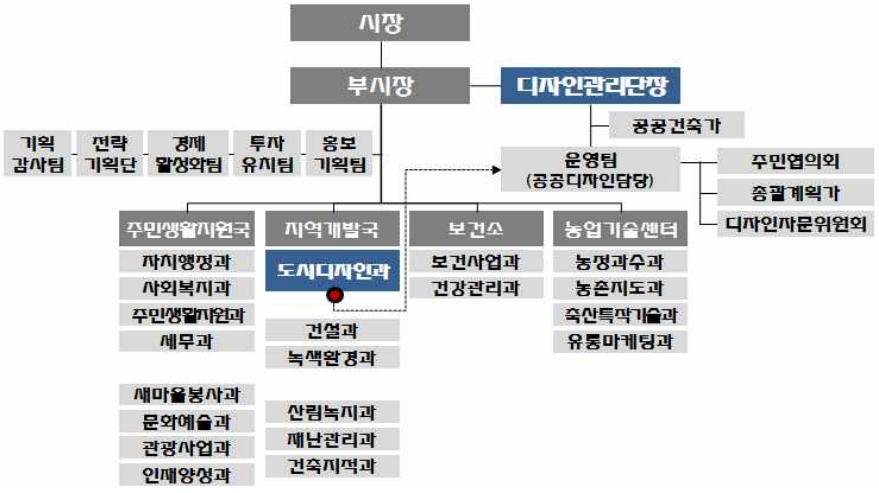

출처: (사)한국농촌계획학회, (사)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2013), 2013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2013.7월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인터뷰 후 재작성

<그림 3-8>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조직구성체계

○ 영주시 디자인프로세스 전 과정에 대한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은 디자인관리단장이, 프로젝트 단위의 코디네이터 역할은 공공건축가가 수행하며, 디자인자문위원회는 디자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내 공공디자인담당은 디자인관리단장을 보조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요 추진주체별 역할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5)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추진주체별 역할 및 권한

구분	역할	비고
디자인 관리단장	◦지자체 공공건축·공공공간사업 총괄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디자인 총괄관리 ◦중앙정부 지원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 지원 ◦각 부서의 프로젝트단위 기획업무 및 디자인 자문 ◦중앙부처 시범사업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한 영주시 전체 프로젝트의 정합성 확보 ■ 디자인관리단 업무(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조례 제0823호) ◦시각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간디자인 부문 등에 대한 디자인 업무지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함 ◦건축, 도시, 토목, 조경, 조명, 색채, 공공디자인 등 전문적인 디자인업무에 대해 자문으로 지원함	영주시 전체 총괄 코디네이터

구분	역할	비고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으로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495㎡ 이상 건축물과 부속물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 - 공공시설물의 기획 및 계획과 설계에 관한 사항 - 디자인 관련 각종 시범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따른 변경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 건축가	◦ 프로젝트 단위의 디자인 자문 ◦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계획기본설계 참여 (지역건축가와 연계)	프로젝트 단위 총괄 코디네이터
도시 디자인과 공공디자인 담당	◦ 디자인관리단장 보조 및 행정업무 수행	-
디자인 자문 위원회	◦ 영주시 소재의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디자인자문 관련 사항, 영주시 각종 위원회에서 디자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함 - 다양한 전공분야의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필요시 분야별로 자문회의에 참석함	-

○ 디자인관리단은 사업시행부서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관리 담당부서에서 디자인전문가에게 자문 7일전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자문회의는 사업시행부서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관리 담당부서에서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 디자인관리단의 자문은 사업예산 결정 전 디자인사업의 관리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계획, 설계단계 등 사업의 단계별 진행시 자문을 실시한다.
- 또한, 자문대상 중 시장 또는 디자인관리단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 사업은 시공단계와 관리운영 단계까지 자문을 실시한다.
- 디자인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유사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디자인관리단의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은 디자인관리단장 명의의 공문으로 관련 부서에 통보되어야 하며, 당해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8]. 또한, 디자인관리단장의 자문을 거친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시장보고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 직속 전담 자문위원으로서의 권위를 존중받고 있다.

8) 조성룡외, 2011,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시 고려사항 연구, 행정안전부,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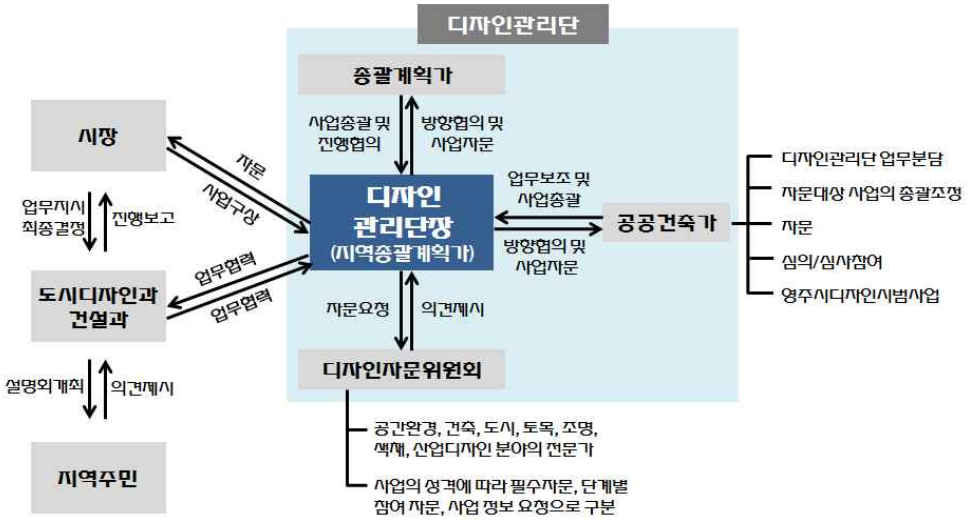

출처: (사)한국농촌계획학회, (사)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2013), 2013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2013.7월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인터뷰 후 재작성

<그림 3-9>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구성 및 역할

(4) 총괄계획가 자격 및 위촉

○ 시장은 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관리단을 두어 경관 및 디자인 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 디자인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종 회의 등 업무추진에 참여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은 영주시가 별도의 비상근 전문가로 위촉하여 주 2회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다.

(5) 총괄계획가 운영기간 및 보수

○ 디자인관리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위촉직이며, 직위는 부시장급이다.[9)]

○ 디자인관리단장의 보수는 영주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9) 처음에 디자인관리단장은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임명하려고 하였으나, 해당직위는 과장정도의 직위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관리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촉직으로 임명하게 되었음(2013. 07. 25 영주시디자인관리단장 인터뷰결과)

지급하고, 보수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기술사 단가를 준용하되 월 단위 혹은 일 단위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전검토나 회의참석, 출장비 등은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사전검토수당: 1건당 30,000원 이하
- 일비 및 여비:「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금액

○ 또한,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기본급이 70,000원, 사전검토수당 30,000원/건이며, 일비와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10)]

1) 총괄계획가 도입배경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문전성시사업)은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 사업으로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까지 총 25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 문전성시 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사업 공모에서부터 시장과 Project Manager(이하 PM)를 선정하여 예비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다. PM은 사업을 진행하는 책임자로서 자칫 문전성시사업을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오해하고 시장을 예술 활동의 대상화로 삼는 일을 금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다른 사업들에 도입되는 등의 좋은 영향을 미쳤다(문전성시사업단, 2012).

○ 또한, 문전성시 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선맞춤형 컨설팅 후 사업추진' 방식으로 시장별로 고유한 특성과 전통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컨설팅단은 문전성시 사업의 정책방향 자문, 시범시장 선정, 점검 및 모니터링, 평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0) 문전성시사업단(2012), 문전성시 컨설팅보고서 2008-2012 내용 참조

2) 용어정의

○ 총괄기획자(Project Manager:PM):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의 주체이자 상인과 주민, 상인과 참여작가, 단체를 연결하는 매개자
○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문전성시사업의 정책수립·사업실행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사업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3) 시범사업 선정

○ 문전성시사업의 경우 생활권 인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도에서 대상시장과 사업시행주체(PM), 예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사업 취지에 적합한 전통시장을 선정하고 PM 및 상인회와 함께 예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컨설팅단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선정한다.

(표 3-6) 문전성시 사업 선정기준

항목	기 준	세부내용
시장 여건	대상시장으로서 적합성	시장규모의 적정성, 이용객(관광객) 현황, 주요 취급품목, 매출액 추이, 시장유형과 입지여건(배후상권과 경쟁점포 현황)
	시장 내부 여건	상인조직형태, 상인회 조직력 및 결속력, 공공마인드
	공간 여건	문화사업 활용 가능공간 여부, 편의시설 구비 정도
지역문화 자원의 잠재력	지역 여건	지역에서 시장의 위치 및 시장 주변의 역사, 문화, 예술 자원
	지역 인적 자원	지역의 문화예술인력·단체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지자체 여건	연계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 사업 현황
예비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문전성시 사업이해도 및 목적의 적절성 지역특성의 분석 및 반영 정도,지역인력 자원 동원 가능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사업시행 주체의 역량 및 지속적인 추진가능성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을 위한 인적 자원 동원 능력
	기획의 참신성	PM의 창조적 역량, 목표지향적 인력 구축 가능성
정책 효과성	재원 확보	지방비 확보계획(확보시기 등) 지자체 재원 조달 계획
	지속가능성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시장 추진의지 및 사업 종료후 지속 사업 추진 의지
	파급효과	사업 추진의 기대 효과 및 지역 파급효과

○ 시범사업은 조기 사업 착수로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시기를 앞당겨 전년도에 사업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대상 공모(2010.10.11)	문화부 → 지자체
⬇	
사업설명회 개최(2010.10.28) * 시・도담당자 간담회 동시개최	문화부(컨설팅단) 지자체, 상인회, 문화예술인 등 참여
⬇	
사업 대상시장 추천(2010.11.25까지) * 사업예비계획, PM포함	지자체 → 문화부
⬇	
서류심사(2010.11.29) * 2배수 선정	문화부(컨설팅단)
⬇	
현장실사(2010. 12.6~10)	문화부(컨설팅단)
⬇	
최종심사(2010. 12중) * 선정결과, 선정조건 등 통지	문화부(컨설팅단)
⬇	
1차 워크숍(2010. 12중) *사업목적, 방향 공유, 주관단체 결정	문화부(컨설팅단) PM단, 지자체, 상인회 등 참여
⬇	
사전조사・실행예산 교부(2010. 12말) *국고 100%, 시장당 10백만원 예정	문화부 → 지자체 → 주관단체
⬇	
사업실행계획 수립(2010. 12~2011.2) *컨설턴트 승인후 실행계획 확정	컨설팅단, PM단 방문객수, 매출액 등 사전조사실시
⬇	
국고보조금 교부(2011. 2월) *국비 50%, 지자체 50% 매칭	문화부 → 지자체 → 주관단체
⬇	
사업착수보고회 개최(2011. 2~3) *시장별	주관단체, 지자체 문화부, 컨설팅단 참여
⬇	
사업시행(2011. 2~12)	주관단체
⬇	
사업성과평가(2011.2~12)	추진상황 지속 점검

<그림 3-10> 2011년도 문전성시 사업 추진일정

4) 사업 추진주체 및 역할

○ 문전성시 사업의 추진주체는 크게 행정적 지원주체와 내용적 지원주체, 사업실행주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행정적 지원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내용적 지원주체: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 사업실행 지원주체: PM, 지역단체, 주민, 전통시장(상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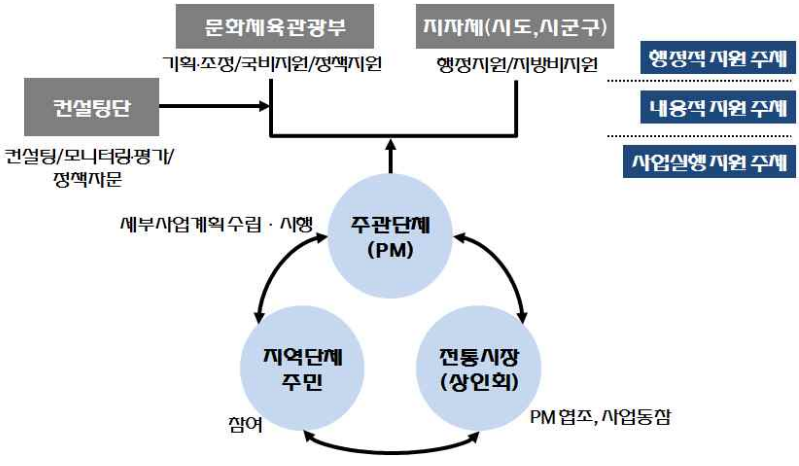

<그림 3-11> 문전성시 사업 추진체계

○ 행정적 지원주체는 계획수립, 주체간 협력체계 조정, 예산(국비/지방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내용적 지원주체는 시범시장 및 PM심사, 실행계획 컨설팅, 모니터링·평가를 지원하며, 사업실행 주체는 전통시장에서 사업 세부계획수립, 사업 협조 및 동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은 2011년 추가 사업시장 선정이 종료되면서 해체되었으나, 기존에 선정된 시장들의 지원과 관리, 홍보 요구가 계속되자 컨설팅 위주에서 지원 및 홍보중심으로 체계를 변경하여 새롭게 2012년 '문전성시사업단'을 조직하였다. 사업단에서는 문전성시시장의 네트워킹과 상인역량강화, 문전성시 시장 홍보 및 정책 확산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표 3-7) 문전성시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국비 지원 및 각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컨설팅단의 자문을 토대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컨설팅단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검토·자문 ◦시범사업 선정기준 마련, 시장실사 등 시범사업 심사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시 자문 - 시장별 책임 컨설턴트 지정, 실행계획 수립 집중 자문 - 분기별로 사업추진현황 보고받음 - 지자체와 PM간 갈등발생 시, 컨설팅단과 문광부와 협의하여 조치 ◦사업 모니터링·성과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검토·자문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대상(전통시장, PM 등) 추천 ◦상인회,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 지역 협조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 및 관리, 행정 지원 ◦사업 종료 후 지속화 방안 마련 및 시행
주관단체/PM (Project Manager)	◦컨설팅단 자문을 통해 사업실행계획 수립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추진 및 정산 ◦시장상인,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지역단체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 ◦시장 분석,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 수요조사, 워크숍 실시
전통시장/상인회	◦컨설팅단 및 사업시행주체(PM)과의 협력 관계 구축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 협의체 구성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협조 및 동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0),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 2010년 추진계획(안)

① PM(총괄기획자)

○ 문전성시사업은 각 시장별 PM단에 의해 시행되는데, PM단은 지자체와 문전성시 사업 준비 및 사업신청서 작성, 공모 준비 및 사업실행, 자체평가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업추진 단계별 PM의 주요업무는 (표 3-8)과 같다.

(표 3-8) 문전성시 사업 총괄기획자의 주요업무

단계				주요업무
기획단계	공모	공모 전 단계	시범사업 계획 수립	후보 시장 물색 및 지자체 건의, 사업구상 소개
		공모단계	지원신청 준비	사업설명회 참여, 대상시장 선정

단계				주요업무
			사업신청서 작성	시장 실태 및 현황조사 착수, 사업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
			현장실사 진행	현장실사 준비, 현장실사 진행
	계획	계획 컨설팅 단계	기본계획 준비	예비계획서 보완 작성 및 제출,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워크숍 참여, 기본계획서 작성 제출, 컨설팅 통한 기본계획 완성
			실행계획 확립	PM간 교류 워크숍 참여, 기본계획서 발표, 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컨설팅을 통한 실행계획 완성
		계획 확정단계	계획확정 공지	실행계획서 발표, 시장별 사업설명회 준비, 컨설팅단 사전 교육 참여 및 관리지침 습득
설계 및 시공 단계	실행	착수 전 단계	사업집행 준비	주관단체 확정 및 단체등록, 사업추진에 관한 지자체와의 협약서 작성 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PM단 사무국 설치, 인력 채용 및 조직구성
		착수 후 단계	사업실행	사업설명회 개최, 상인회와의 초기모임 추진, 상인주도 사업 발굴, 사안 발생 시 컨설팅 요청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 단위 사업의 단계별 운영 전개, 시장홍보 계획 및 기초조사 착수
			추진사업 관리	PM단 조직의 사업진행 관리, PM단 회의, 상인설명회, 프로그램 기획회의와 평가회의, 지자체 보고, 컨설팅단 요청서류 등 행정관리, 중간정산, 단계별예산 교부 등 회계관리
유지 관리 단계	평가	사업 평가단계	올해 사업정리	사업기록과 자료수집, 사업의 정보화와 출판물, 우편물을 통한 사후 홍보, 정산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PM단 자체평가 정리,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문화부 평가 협조
			다음해 사업준비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휴지기간 관리, 사업 종료 후 별도 사업 모색 등 사후관리 모색, 차년도 계획 수립, 사업 종료 후 상인 중심의 문화사업 유지계획
		환류단계	실행계획 재수립	2차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서작성 체결, 기본계획 수정 및 당해연도 목표재설정, 사업내용 결정 및 실행계획서 작성, 시장별 2차년도 사업설명회 개최

※ '문전성시 핸드북(PM단을 위한 가이드)-문화체육관광부,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을 참고하여 정리
자료: 서수정외, 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8

② 컨설팅단

○ 컨설턴트는 공모심사, 계획수립, 실행, 사업종료의 사업단계별로 PM단에게 지표를 제시하고 안내와 조력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 모니터링 수행 시에는 사업초기에 모니터링 횟수를 정하여 사업주체별로 면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컨설팅단 전체가 한꺼번에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경우와 책임컨설턴트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 또한, 1개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문광부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2012년에는 새롭게 '문전성시사업단'을 조직하면서부터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역할(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컨설팅단의 세부적인 역할은 (표 3-9) 같다.

(표 3-9) 문전성시 사업 컨설팅단의 주요업무

단계				주요업무
기획 단계	공모	공모 전 단계	시범사업 계획 수립	당해연도 시범사업계획 수립 자문, 당해연도 시장 선정기준 마련, 대상시장 심사 선정계획 수립
		공모단계	지원신청 준비	사업설명회 준비 및 실시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서 작성료령 및 구비서류 안내
			현장실사 진행	후보시장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후보시장 현장답사, 선정결과 통보
	계획	계획 컨설팅 단계	기본계획 준비	컨설팅 전 예비계획서 접수, 시장별 담당컨설턴트 결정,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워크숍 개최, 기본계획서 작성 제출 요청, 기본계획 컨설팅
			실행계획 확립	PM간 교류 워크숍 개최, 기본계획 발표회 개최, 실행계획서 작성제출 요청, 실행계획 컨설팅
		계획 확정단계	계획확정 공지	실행계획 발표회 개최, 컨설턴트의 사업계획 확정, 컨설팅단의 최종승인 및 문화부 제출, 시장별 사업설명회 진행, 문전성시 사전교육 진행, 사업기간 중 컨설팅 공지
설계 및 시공 단계	실행	착수 전 단계	사업집행 준비	PM단 조직에 관한 지원
		착수 후 단계	사업실행	시장별 컨설팅, 시장별 기타지원, 중앙홍보 및 평가계획 전달, 관리
			추진사업 관리	중앙홍보, PM의 기초조사와 자체평가 등 PM단에 요청, 지자체로부터 문화부로의 중간정산, 단계별 예산교부, 중간보고 등, 현황파악 및 미비사항 관리
유지 관리 단계	평가	사업 평가단계	올해 사업정리	문전성시 정책포럼 등 종합발표 실시, 컨설팅단 중앙홍보 자료집 제작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결과보고서 및 기타 자료 취합, 시장평가 진행, PM단·상인회·지자체에 대한 컨설턴트 정성평가 진행, 컨설팅단 평가원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문화부 제출, 차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컨설팅위원회 소집
			다음해 사업준비	휴지기 활동, 후속활동, 차년도 계획 등에 대한 정보 확보
		환류단계	실행계획 재수립	시장별 담당 컨설턴트 결정,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보완 컨설팅 실시, 담당 컨설턴트 확정, 컨설팅단 최종승인 및 문화부 제출, 2차년도 사업계획 발표회

※ '문전성시 핸드북(PM단을 위한 가이드)-문화체육관광부,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을 참고하여 정리
자료: 서수정외, 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8

○ 컨설턴트의 역할은[11] 사업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데, 2008년에는 전체 컨설턴트가 담당 없이 활동했지만 2009년부터는 시장별 담당 컨설턴트를 선정하여 컨설턴트가 책임지고 시장을 컨설팅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폭넓은 분야의 도움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와 2010년 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되는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컨설턴트제도를 보완하고 협동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원하는 분야와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였다(문전성시사업단, 2012).

5) 총괄계획가 자격 및 위촉

○ 문전성시 사업의 PM은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을 지닌 사람으로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실행의 주체이자 상인과 주민, 상인과 참여작가, 단체를 연결하는 매재자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다. PM은 가능하면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획안(예비계획서)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PM이 기관,단체(A)에 소속인 경우: 단체 내에 이를 담당할 책임자를 PM으로 지정, 사업계획수립 및 실행시 PM이 총괄책임(A는 주관단체)
  - PM이 개인인 경우: PM을 중심으로 하는 비영리임의단체(B) 구성 가능(신설 임의단체 B가 주관단체)
  - PM이 개인인 경우: 지역내 비영리기관, 단체(C)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공동추진 가능(C가 주관단체/이 경우에도 사업의 총괄책임은 PM임)
○ 컨설팅단은 지역문화, 공공미술, 문화예술교육, 스토리텔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구성하여 전공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현재 문전성시사업단은 사무국장과 직원 4명이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컨설팅단장은 주 3회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다[12].

11) 컨설턴트 역할에 대해 PM단의 불만도 종종 발생했는데 주요한 이유는 사업 진행에 지나치게 산섭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컨설턴트제도가 그 효용성을 발휘하는 계기가 된 사건도 있었는데…해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지역사업에 있어서 컨설턴트들의 역할(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게 하였다.(2012. '문전성시 컨설팅보고서 2008-2012', p.31)
12) 2013. 8. 19 문전성시사업단 사무국장 인터뷰결과

(표 3-10) 문전성시사업 총괄기획자 자격요건 및 선정

구분	PM	컨설팅단
자격 요건	◦지역문화, 커뮤니티아트, 시각예술, 공연예술, 공간설계 등 다분야에 대한 통합적 기획이 가능한 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단체 또는 개인	◦건축, 도시설계, 문화기획, 공공미술, 지역문화마케팅, 관광스토리텔링,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등 다분야의 전문가
선정	◦사업시행주체로서 적합한 기관단체를 컨설턴트가 추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3배수를 설정 ◦각각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종 1인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내의 추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전문가 위촉

출처: 서수정외, 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5

6) 총괄계획가 운영기간 및 보수

○ PM 및 컨설팅단은 사업의 공모단계부터 사업종료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서 비상근 형태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

○ 보수는 PM의 경우 제한된 인건비상한선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여 형태로 지급하며, 컨설팅단의 경우 컨설팅 횟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한다.

- PM이 기관인 경우 사업에 100% 참여하지 못하므로 참여기간을 감안하여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표 3-11) 문전성시사업 총괄기획자 보수 및 근무 형태

구분	PM	컨설팅단
보수	◦지인건비 상한선은 월 3,500천원으로 사업기간으로 적용 ※ 문전성시 사업 전체 형평성 및 PM 실투입률 고려	◦서면 컨설팅 200,000원/회 ◦방문 컨설팅 400,000원/회 ◦사업평가비용은 시장 당 8,500천원 (예산 항목으로 책정) ◦홍보비용은 시장 당 6,000천원으로 컨설팅단 혹은 컨설팅단이 선정한 홍보대행사와 홍보계약 체결
근무 형태	◦비상근 또는 상근 근무 (상근의 형태를 권장)	◦비상근 근무 (지자체의 요청 시에만 자문을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출처: 서수정외, 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06

제2절 국외사례

1. EU의 LEADER 프로그램[13)]

1) LEADER 프로그램의 도입배경

○ EU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의 한 구성부분이며 그 중요성은 점점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이 정책은 경제, 사회 및 환경문제와 더불어 EU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U 인구 절반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면적은 EU 지역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14)]. 1991년 출범한 LEADER 프로그램은 EU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혁신을 이끈 견인차라 할 수 있다.

○ 1990년대 이전까지 EU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은 전형적인 부문정책(sectoral) 이었으며, 주로 농장주나, 농업 내 구조개혁에 치중했다. 하지만 대부분 하향식 원칙(Top-Down)에 따라 재정 집행이 행해지고, 지역주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미래를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자발성과 지역 부존자원의 부가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는 지역주의원칙(territorial)과 상향식원칙(Bottom-up)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차츰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LEADER 프로그램은 이같은 가능성들을 EU 농촌지역 전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수단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 1980년대 후반 단행된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개혁의 주된 과제 중 하나는 “불리한 여건에 놓인 낙후지역들과 여타지역 간 발전격차를 줄이는[15)] 것”이었다. 그리고 1988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농촌사회의 미래(The future of rural society)에서 유럽 차원의 농촌 정책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새로운 원칙에 따르는 농촌

13) 프랑스어: „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que Rurale”; 영어번역은 “Links between A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우리말로 번역하면, “농촌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활동연대”

14) EU-25 기준; 리더 출범 당시 15개 회원국이던 EU-15는 2004년 5월에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28개국

15) Decisions Art. 87/100

지역 개발정책 프로그램의 탄생을 예고했다[16].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LEADER I 프로그램이 유럽구조기금의 2차 개혁시기인 1991-1994년까지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실험전략으로 도입되게 되었다[17].

○ 1991년 LEADER I 이 시작된 이후, 1994-1999년까지 제 2 단계 LEADER 프로그램인 LEADER II가 시행됐고, 2000-2006년까지 LEADER+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LEADER+는 단순히 LEADER I과 LEADER II의 연장이 아니라,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야심차고 더욱 높은 수준에서 지역적 전문성을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농촌지역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LEADER+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EU 농촌지역들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었다.

○ 2007-2013년 현재까지: 2005년 9월 20일 EU의회는 LEADER 차기년도 계획(2007-2013)을 공표했고, 이 기간 동안에 EU 지역개발기금의 혜택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각각 지원금 총액의 최소 5%를 LEADER 예비금으로 배정할 것을 의무화했다.

---

16) The future of rural society, Commission communication transmitted to the Council and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29 July 1988, COM (88) 501, S. 52ff.

17) 유럽구조기금은 창립 당시부터 부문주의적인 전통이 강하였으므로 각 기금 간의 연계성이 약하고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8년 유럽구조기금 개혁의 목표 중 하나는 구조기금 간의 통합성을 확보하여 재정투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었다. 각 지역은 구조기금과 공동농업정책의 관련 수단을 지역의 특성, 발전목표, 우선순위 등에 따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절차를 EU의 지원프레임워크(CSFs; Community Support Framewoks)라고 하며, EU와 개별회원국 및 지역 간 협상과 파트너쉽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위 상향식 원칙과 하향식 원칙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 지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지원 체계도 종합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 예로서 EU차원에서는 구조기금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이 출범했으며, 개별 회원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촌관련부서를 통합하거나 부처간 종합조정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구조기금의 단일종합지역 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광역단위(인구 100만에서 500만의 광역과 인구 약 30만에서 50만 중역범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작은 규모(인구 1만에서 10만 이하)의 농촌지역개발 지원정책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소규모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지역개발계획 프로그램 LEADER I이 도입되게 되었다. LEADER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 유럽구조기금의 농촌개발전략이 소단위 지역에서까지 종합적 계획 하에서 추진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아울러 이전까지 구조기금의 추진과정에서 장애가 되었던 각국의 부처별, 분산적, 횡적 행정체계도 LEADER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2) 리더 프로그램 단계별 비교

리더 프로그램	지역활동그룹 수	지역 규모	EU-지원금
LEADER I	217	367,000㎢	442백만 유로
LEADER II	906	1,375,144㎢	1,755백만 유로
LEADER+	893	1,577,386㎢	2,105.1백만 유로

2) LEADER 프로그램의 7가지 원칙과 추진체계

(1) LEADER 프로그램의 원칙[18)]

<그림 3-12> LEADER 프로그램 7가지 원칙

① 상향식 원칙 (Bottom-Up-Base)

○ 상향식 원칙은 전략적 결정이나 지역 내 주요 사안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지역활동가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활동가란 넓은 의미에서 지역 전체 주민, 경제, 사회영역의 이해그룹, 대표적인 공적기관이나 민간 조직 등을 망라한다. LEADER에서는 지역발전의 필요성과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LEADER는 지역 의회의 민주주의적 구성을 보완하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8) LEADER Toolkit

② 지역주의 원칙 (Territorial Base)

○ 이 원칙은 공통의 관습과 지역적 정체성, 소속감이나 공통의 요구, 기대 등등을 가진 단일한 소규모의 지역공동체가 LEADER 전략의 실현대상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공동체의 유리한 점은 지역 특유의 장단점, 위험요소나 기회요인, 내적 잠재성과, 장기적 발전전망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 등이 쉽게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LEADER-지역의 경계는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지만, 종종 관청의 관할영역이 그러하듯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중요한 것은 기능적 문제이다). 선택된 지역은 가능한 한 단일한 지역공동체여야 하며, 개발전략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적, 재정 및 경제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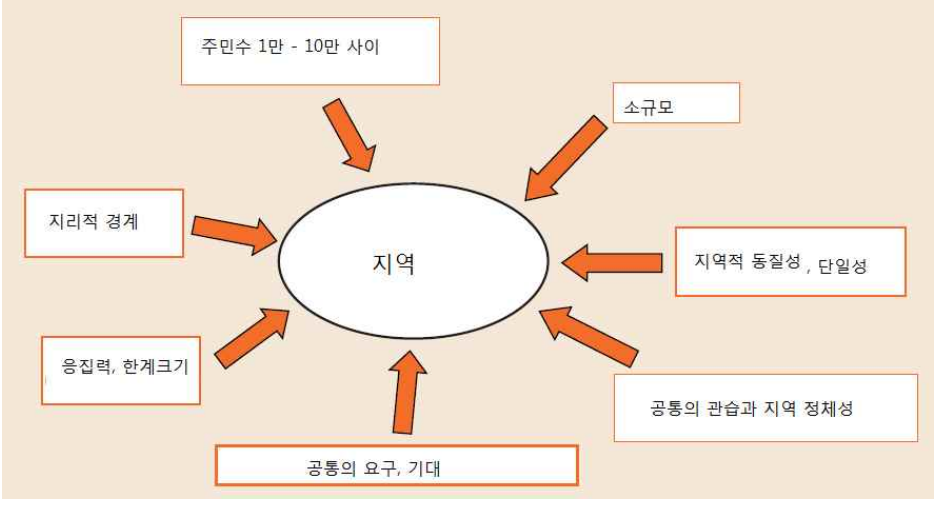

<그림 3-13> LEADER 지역주의 원칙

③ 지역 파트너쉽 (Local Partnership)

○ 지역활동그룹(LAG)은 공적 주체 및 사적 개인들을 파트너로서 규합하여야 하며 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구성된 지역 이해

집단들을 대리한다. 사적 개인들과 지역 파트너쉽의 사조직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 50%의 의결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LAG의 법적 적용 기준은 지역마다 차등적일 수 있지만, 상업적 이득에 구애받지 않는 조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

④ 다부문적 통합 (Multi-sectoral Integration)

○ LEADER는 부문개발프로그램이 아니다. 지역개발전략은 다부문적 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수의 활동부문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지역활동그룹들은 때때로 전혀 이질적인 활동주체들 조차 협력하게 만드는 용광로와 같다. 이같은 특징은 종종 혁신의 출발점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지역활동그룹은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상이한 관심과 이해를 한 지붕 아래 묶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⑤ 네트워크의 구성 (Networkbuilding)

○ 지역활동그룹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의 네트워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살펴서, 지역적, 지방적,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농촌개발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여타의 조직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 네트워크의 구성은 검증된 사업방법을 전수하고 혁신을 전파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네트워크는 인간과 프로젝트, 농촌지역을 하나로 결합시키며 몇몇 지역에서 겪는 고립성을 타파할 수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네트워크는 LEADER-그룹 간 협력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고, 연계활동을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⑥ 혁신 (Innovation)

○ 지역활동그룹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방법들을 자신의 지역개발에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발전략의 실행과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LAG은 일련의 리스크,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통의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사고들을 배제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⑦ 지역 초월적 및 국제적 협력 (Transloc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협력은 네트워크 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하나의 지역활동그룹이 다른 LEADER-그룹이나, 다른 지역, 회원국가, 제3국 등에서 활동하는 그룹과 상호 유사한 원칙들에 따르면서 하나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있다. 종종 이같은 협력은 지역 활동그룹의 혁신에 대한 영감을 자극하는 최고의 원천이 되곤 한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을 달리할 때 새로운 가능성들은 보다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농촌개발정책의 틀에서 이같은 국제적 협력은 LEADER사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표 3-13) 전통적 농촌정책과 LEADER 프로그램의 비교

구분	전통적 농촌정책	LEADER 프로그램
정책 대상	경제부문 (sector)	지역 (territory)
정책의 집행방식	하향식	상향식
지원 대상	개인	그룹, 파트너쉽
지원수단의 관계	분산적	통합적
관리방식 (재정 및 의사결정)	중앙집권적, 수직적	분권적, 수평적

(2) LEADER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 LEADER 프로그램은 지역활동그룹(LAG; Local Action Group), 국가나 주정부가 위임한 중간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IO), EU집행위원회 산하 농업위원회(Directorate General for Agriculture)의 세 단계의 추진체계로 구성된다[19].

○ LEADER 프로그램의 특징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다.
- 농촌 현장의 기본활동단위인 지역활동그룹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상층부의 추진단위 (중앙 및 주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업승인과 지원에만 그 기능을 국한한다.
- 국가에 따라서는 기존의 주류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와는 별도로 LEADER 프로그램을 위한 제도적 구조를 갖추어, 기존의 획일화된

19) 김정섭, EU의 리더 프로그램, Agroinfo Issue No. 5 2002. 07.

농촌개발정책 메커니즘의 통제와 간섭을 덜 받고 농촌지역 고유의 상황에 적절한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① EU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for Agriculture)

○ EU농업위원회는 LEADER 프로그램의 총괄책임을 지며, 전체 사업의 목적, 방향 등 기본지침을 정하고 회원국별 재정과 사업량의 배분을 담당한다. 또 사업 진행의 모니터링과 평가, 지역이나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의 역할을 맡는다[20].

② 중간조직 (Intermediary Organization)

○ EU농업위원회는 회원국별로 각국의 LEADER 계획을 담당할 관리기구 즉, 중간조직을 선정하여 국가별로 관련 사무를 위임한다. 이 중간조직이 일국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담당한다.

- EU회원국들마다 지방분권화 정도와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중간조직의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에서는 농업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서(농림부)가 중간조직이 되지만, 프랑스나 벨기에는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설립되어 있던 별도의 공공기관(예, 프랑스, 농업경영센터)이 담당하고 있다.
  · 반면, 독일은 주(州)가 중간조직의 역할을 담당한다.
  · 중앙이 관장하는 경우도 광역(region) 별로 다시 관리당국을 지정하여 광역별 관리를 맡기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에서는 환경식량농촌부 (DEFR)의 광역별 사무소가, 웨일즈에서는 유럽사업운영사업단(WEPE)이, 프랑스의 경우는 광역정부(Réion)가 담당한다.

20) 이 외에도 EU차원에서 네트워크기능을 가진 조직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농촌지역 국영네트워크 (National Rural Networks, NRN)는 모든 회원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산하조직이며, 네트워크구성과 국가 간 협력사업에서 가치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는 위와 동일한 역할을 유럽 차원에서 수행하며, 농촌지역의 국영네트워크와 지역활동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담당한다. EU 전체의 지역활동그룹 가운데 반 수 정도가 참가하고 있는 유럽 농촌개발 LEADER-연합 (European Leader Association for Rural Development, ELARD)은 NGO 기구로서 LEADER-지역에 공동활동에 관한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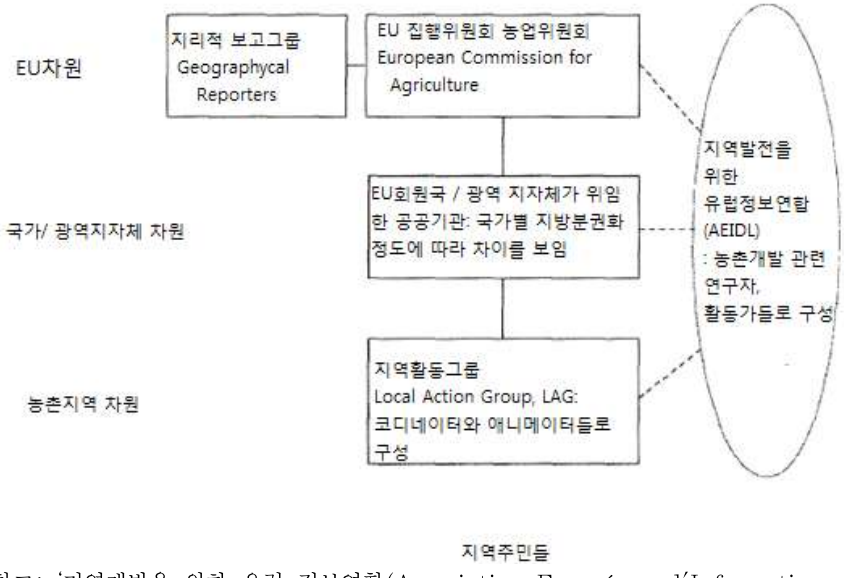

참고: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 정보연합(Association Européene d'Information sur le Dévelopment Local, 이하 AEIDL로 줄임)'은 LEADER에 참여하는 모든 기구, 조직들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함. AEDIL은 농촌개발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활동그룹(LAG)에 대한 기술적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세미나 및 포럼의 조직 및 지원, EU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공식문서 및 보고서 작성, 일반 대중들에 대한 LEADER 프로그램 홍보, LEADER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AEIDL은 개별 LAG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하며, 이들에게 풍부한 기술적, 조직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3-14> LEADER의 추진체계

- 중간조직은 국가 내 LEADER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 자문,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하고, 소요 재정을 분담하며, LEADER 프로그램의 중점사업 분야나 적용방식에서 독자성을 하용하기도 한다.
  · LEADER 프로그램은 EU 전체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국가별로 실시하는 방식이나 중점사업분야에서 약간의 독자성이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EADER 지역의 인구 기준이 10만 이하라고 되어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5만 이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민의 농촌이주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 또 지역별 관리 담당 중간조직은 지역별 특색에 맞도록 중점사업 분야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의 특성과 지역개발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농촌관광에 중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정보화에 중점을 두어 결정한다.

③ 지역활동그룹 (Local Action Group; LAG)

○ 지역활동그룹은 소농촌단위에서 LEADER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LEADER 프로그램의 가장 기반이 되는 조직이다.

○ LAG의 법적 성립조건[21)]

- 지역규정:
  · LAG의 활동지역은 명확한 경계를 가져야 하며, LAG와 전략의 정관사항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것은 행정구역의 경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한 지역은 오직 하나의 LAG에 속할 수 있다.
- 충분한 자원
  · LAG 지역규정은 충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이 활용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LEADER 대책은 농촌지역을 목표로 해야 한다.
- 활동가능한 주체
  · LAG은 활동가능한 주체여야 한다(즉, 등록 단체 등등). 지역의 모든 활동주체에게는 LAG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LAG은 충분한 숫자의 구성원을 보유해야 하고 구성원의 구성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져야 한다. 구성원은 공공기관장, 기업가, 단체장, 지역주민 등이다.
- 공공-민간 파트너쉽 원칙
  · 의장단의 의사결정과정은 민간부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쉽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의결권의 최소 과반수이상을 민간부문이 가지며, 이 원칙은 LAG의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

21) 예컨대 LEADER+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역선정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공 및 민간이 파트너쉽을 결성한 그룹 (LAGs)에게 지원하되, 적어도 민간이 50%를 차지해야 한다. 지역 인구가 1만에서 10만 사이인 곳 (일부 예외지역 인정) 이면서 지역의 인적, 재정적 자원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반드시 행정적으로 구획된 지역일 필요는 없고,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으로 동질적 단위를 구성하는 소규모 지역 (1만- 10만/ 120인km2)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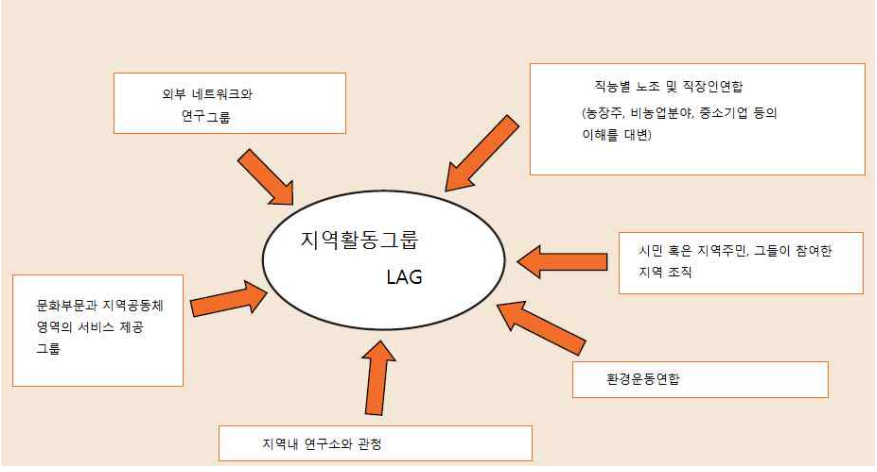

<그림 3-15> 지역활동그룹

○ LAG의 조직구성 및 역할

- 구성원

· LAG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주어지며, LAG의 활동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된다. 대부분의 지역활동그룹은 자금을 조달하고 구성원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액의 회원비를 받는다. 일반 개인이건 지역의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이건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구성원의 수는 LAG이 지역에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고 인정받고 있는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 전체구성원총회

· LAG은 반드시 해명의무를 가진 등록단체여야 하지만, 그 외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독자적인 정관에 따라 조직할 수 있다. 년 중 1-2회 전체 구성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LAG구성원 가운데 의장단과 부의장단을 선출한다. 선거는 공공-민간 파트너쉽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지역, 성별, 나이에 따르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총회의 또 다른 과제는 연례보고, 장부, 연중총괄보고서 작성이며, 총회는 LAG의 정관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 의장단

· 의장단은 LAG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 의장단은 LAG활동에 대해 법적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다. 의장단의 구성원 수는 정관에 명기되고

통상 10-15인이다. LAG의 의장은 1년에 6-12회 의장단 회의를 주재한다. 모든 의장단 구성원은 예컨대 프로젝트의 내용과 같은 정보와 관련된 비밀엄수의무가 있다. 가족이나 기업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을 경우에 해당 구성원은 프로젝트 선발결정에서 제외된다.

- 서브위원회 (지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의장단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들의 처리와 평가, 브리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서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브위원회는 프로젝트 평가와 동반, 협력활동의 경우 등에 투입된다. 서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주제들을 의장단 회의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다.

- 실무자

· 의장단은 LAG실무자를 고용한다. 비용은 LAG에 미리 책정된 예산범위에서 처리한다. 실무자의 고용비용은 LAG이 사용 가능한 공공수단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LAG마다 사용가능한 총액의 양이 가변적이므로 실무자의 수 또한 가변적이며, 통상 1년에 1인-5인 정도이다. 프로젝트 자문, 공동체 자문, 기업관련 자문, 초국가적 협력사업 코디네이터, 사무실비서 등이 전형적인 LAG 실무자의 역할이다.

- 회계 및 재정감사

· 회계업무는 LAG의 실무자가 담당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LAG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LAG의 성공적인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정감사 책임자와 더불어 LAG의 조직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영수증 발급에서 지원금 배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적 사안에서 회계내용이 보고되어야 비로소 자금이 인출된다. 재정감사 책임자는 년초의 회계감사 뿐 아니라 연중 내내 관련 자문요청에 응해야 한다.

3) 모니터링[22)]

○ 공동모니터링평가프레임워크(The Common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 CMEF)는 LEADER 프로그램 기간 동안 운용된 모든 농촌개발지원 수단에 대해 단일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공동 모니터링 평가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램 실행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가 되며, 프로그램의 전략적 선택과 평가, 목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회원국의 동의하에 작성된 일련의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 모든 회원국의 LEADER 담당 기관 및 모니터링위원회는 재정, 결과 및 산출 지표를 통해 각 농촌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다. 각 담당기관은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연차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EU 집행위원회에 보내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프로그램의 재정집행 상황 및 사업별 대상자에 대한 해당연도 지급자료
- 결과 및 산출에 대한 공동지표에 근거한 정량적 정보

○ EU집행위원회는 모든 모니터링 자료를 농촌개발정보시스템 (Rural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RDIS)에 저장한다.

○ 유럽농업농촌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지원하고, 각 회원국 및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혹은 대부분의 개별 조치들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자료를 생산한다.

2. 독일 바이에른 주(州) LEADER 사례 -지역활동그룹 알트뮐-유라(LAG Altmuehl-Jura)[23)]

○ 농촌지역활동그룹 알트뮐-유라는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 주 중앙에 위치한 11개 마을공동체로 구성되었으며, 천혜의 자연과 문화적 유산을 자랑한다. 바이에른의 주요 도시들인 뉘른베르크, 잉골슈타트, 레겐스부르크와 인접해 있고, 자연공원 알트뮐 계곡,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리메스(Limes)가 지나고 있다.

22) 조영수, EU의 농촌개발정책에서 재인용
23) Regionales Entwicklungskonzept Naturpark- und Welterberegion Altmuehl-Jura, 2008.

1) LAG 추진체계

○ 이 지역 추진체계의 특징은 과거에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두 개 지역 활동그룹이 하나로 통합하여 이전 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 두 지역의 지역개발컨셉(REKs)은 상호보완적이다.
- 세계유산 리메스와 자연공원 알트뮐 계곡과 같은 자연과 역사적 자산은 관광 및 문화적 측면에서 최고의 조합이며 상품가치가 높다.
- 지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원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물적 및 인적 풀(Pool)이 커졌다. 프로페셔널한 LAG매니지먼트가 새로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시너지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두 LAGs이 축적해 온 각각의 사업경험들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 2008년 4월 21일 발기인 대회를 통해 LAG Altmuehl-Jura e. V. 이 설립되었고, 26인의 공동의장단 및 지도위원회가 선출되었다. 그 밖에도 약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지역포럼에 참가, 새로운 공동조직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딛였다.

○ 지역활동그룹(LAG)의 조직구성[24)]
- LAG Altmuehl-Jura e. V. 의 조직구성은 아래와 같다.
  · 전체구성원대회: 1년에 최소 1회 이상 소집, 일반적인 정보전달과 토론,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전체 구성원 포럼이다.
  · 의장단: 2명의 시장 외에, 기존의 LAG jura2000 Landkultur e. V. 와 LAG ArGe Limesgemeinden 대표자들로 구성. LAG활동을 지역에 뿌리내리는 역할; 의장단은 LAG-매니지먼트 활동을 지원한다.
  · 지도위원회: 신청된 프로젝트 안들의 지원여부를 일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함. 아울러 지도위원회는 지역의 LEADER지원금 사용 및 관리책임을 진다.

24) LAG은 통상 공공, 경제, 문화, 사회 영역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되며, e. V. 즉 등록단체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있다.

활동주체	과제 및 관할영역
전체구성원대회	회 / LAG-정관 § 8 (의사결정영역)
◦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 ◦ 의결권이 없는 구성원	◦ 정관기초결정에 관한 권한 (정관기초 회 등) ◦ 의장단 선출권 ◦ 의장단 해임권 ◦ 조직운영비- 및 회계감사 논의
의장단	회 / LAG-정관 § 9 (의사결정- 및 관리영역)
◦ 전체구성원대회에서 선출: 정, 부의장 (Bgm. 직장보건관리), 경리 및 기록관 ◦ 2명의 참관회원 (지역출신인사): Jura2000 Landkultur e. V. 의장, ArGe Limensgemeinden 의장	◦ LAG-매니지먼트의 구성 ◦ 지도위원회와 공조 (아래 참고) ◦ LAG-매니지먼트를 통한 진행과정 관리(REK지도위원회와 피드백)
지도위원회 / LAG-정관 § 10 (의사결정- 및 관리영역), 전문위원회 / LAG-정관 § 11	

■ 지도위원회

○ 참가 지역의 시장(市長)들과 경제, 사회 영역을 대표하는 (최소) 12인의 인사들이 LAG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공공, 경제, 사회, 관광, 농업 등 양 지역과 제반 영역의 형평성을 배려한 것이다.

■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는 지역개발컨셉의 전략적 실천과 계속적인 발전에 대해 토의, 결정한다. LAG매니지먼트(아래참고)가 마련한 제안들과 컨셉에 기초해서 중점사업부분들을 연차계획에 맞게 결정한다. 또한 지도위원회는 결정된 전략 및 중점사업의 실행과정을 감시한다.

○ 그리고 지도위원회는 LEADER 지원금의 배분과 시간적 경과에 따르는 지원급 지급시점 등을 결정한다. 특히 초기단계에서 지역발전컨셉(REK)의 추진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지도위원회의 정기적인 관리역할이 필요하다.

○ 지도위원회 구성원은 의장단에 의해 임명되며 전문성을 가진 인사 외에도 의사결정의 지역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가 중요하다.

■ LAG-매니지먼트

○ LAG-매니지먼트는 LAG과 지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여기서 논의된 결정과 전략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지원금 지급, 프로젝트 관리, 공공활동 등의 과제들을 실행한다.

○ LAG 매니지먼트는 2개의 과제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 지역매니지먼트: 지역개발과정을 전문적, 내용적으로 구성
  · 지역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전문인력 (보좌역 1인)이 임명된다. 이들의 임무는 지역개발컨셉(REK) 실행과정을 주도하고, 프로젝트의 자문 및 지도, 지역내 이니시어티브들을 결속하며, 지역차원에 맞는 아이디어와 원칙들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일 등이다.
  · 그리고 LAG 의사결정과정을 준비, 타지역과 협력도 지역매니지먼트의 과제에 속한다.
- LAG의 사업지휘: 조직, 관리, 인증, 문서전송 등
  · LAG지휘부의 사업과제는 1인에 의해 지휘되어야 한다. LAG 매니지먼트의 재정은 REK의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표 3-14) LAG 프로젝트 팀과 LAG 부서의 관할영역

프로젝트 팀	리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책임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금 청구, 지원금 사용 내용증명, 기한의 준수 등)
LAG-매니지먼트	프로젝트 팀에 자문역할. 프로젝트의 진행, 신청서 작성 및 지원금 사용 내용증명 등 프로젝트 팀 활동을 지원
리더-매니저	LAG-매니저에 자문역할. 어떤 상황 혹은 선정기준에서 리더 프로젝트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다른 지원 수단이나 가능성 유무를 검토. 인허가 부서와 LAG-매니저 사이를 중재
인허가 부서	지원금 신청서, 자금 청구서, 지원금 사용 내용증명 등과 관련해서 전문적 및 형식상의 정확성 검토
LAG-지도위원회	지도위원회는 프로젝트가 지역발전컨셉에 부합하는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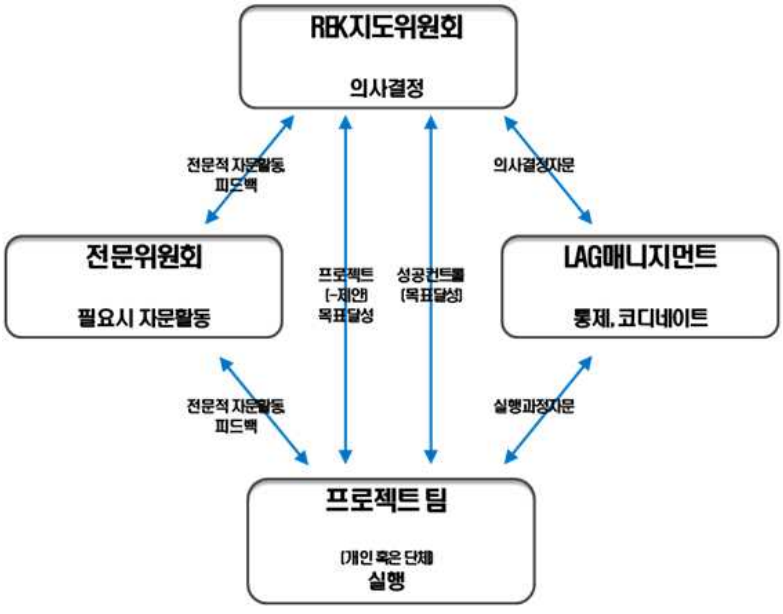

<그림 3-16> Altmuehl-Jura LAG 의사결정프로세스

2) LAG 알트뮐-유라 프로젝트의 4개 활동영역(HF)[25]

(1) 활동영역, 사회

○ 지역 내 생활공간의 질적 향상, 세대 간 네트워트의 강화, 알트뮐-유라 지역 내 젊은층과 노년층의 상호지원 및 연계성 촉진이 목표이다.

- 특히 작은 마을들과 공동체에서 아이들과 청소년, 가족, 노인층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이들과 청소년의 학교교육과정에 전공과목을 배정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공동체와 마을의 중심부, 시내가 원활하게 기능성(예, 일상용품의 원활한 공급)을 유지해야한다.
- 자원봉사조직이나 이웃돕기단체 등의 역할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25) 2008-2013년 동안 전체 활동영역에 소요된 총비용은 10 016 000 유로이며, 그 중에서 LAG 매니지먼트와 공공사업비로 600 000 유로가 지원되었다.

(2) 활동영역, 문화, 자연과 역사

○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보존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 - 이것이 알트뮐-유라 활동영역, 문화의 목표이다.

- 알트뮐-유라-지역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에서 뛰어난 잠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치들은 후대를 위해 보전해야 한다.
- 지역의 희귀한 동식물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일은 지속적인 관리가 따르며, 알트뮐 계곡의 상업적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 리메스의 보수관리가 필요하다.
-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어린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3) 활동영역, 관광

○ 매력적인 문화관광지이자, 휴양지, 세계유산 지정지역으로서의 자연적 특색을 살려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예컨대 산책로나 하이킹루트는 아이나 노인을 동반한 가족들에게 좋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인근의 휴가용 농가, 직판매장, 숙박업소 등 유사업종의 네트워크화를 촉진시킨다.
- 알트뮐-유라 지역은 또한 매력적인 휴양지로서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밀집지역인 뮌헨-잉골슈타트, 뉘른베르크와 레겐스부르크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가깝고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어필하기 쉽다.
- 지역내 다양한 관광자원들은 모든 마을공동체들의 합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활용, 개발되어야 한다.

(4) 활동영역, 경제

○ 기존 시설들의 네트워크화, 개선과 발전이 목표이다.

- 알트뮐-유라는 미식가를 위한 지역으로서 요식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내 수입원천(특히, 농업과 숙박업)을

확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유산 리메스나 플랑크스테텐 (Planksteten) 수도원은 주요 거점 역할에 용이하다.

- 수공업 혹은 약재용 식물재배 등은 알트뮐-유라-지역의 특산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3) LAG 프로젝트 선정기준

○ 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다.

- 2008년 4월 16일 리더 지도위원회에 의해 지원프로젝트 선정기준이 결정되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각 프로젝트는 아래의 항목에 표시된 최고 70점 중 최소한 45점을 받아야 하며, 점수를 받지 못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표 3-15) LAG 프로젝트 선정기준

프로젝트 명(名):
활동영역:

최대점수		실제점수
■네트워킹과 협력(15)		
5	다양한 주민계층과의 협력	
5	지역 네트워킹 (제반공급시스템, 인프라구조, 자연공간, 정보관련)	
5	초지역 내지 초국가적 차원의 활발한 공동활동	
■형식상의 경계조건 (18)		
5	지역조건에 맞는 개별적 대책이나 지역적 영향력	
5	다수의 파트너 및 공동체의 참가	
3	노련한 유경험자 (프로젝트팀의 노하우)	
5	프로젝트 재정 (투자자의 존재, 투자의 현실성, 프로젝트 팀의 자체경비)	
■장래성 (지속성), 지역적 부가가치와 혁신성 (23)		
3	프로젝트는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태학적 차원에서, 장래성원칙에 부합한다	
5	프로젝트는 지원기한 후에도 발전전망이 있다 (연계성과 독자적 발전가능성)	
5	프로젝트는 지역의 잠재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 한다	
5	프로젝트는 지역정체성을 제고함으로써 내적 외적 역량을 강화시킨다	
5	프로젝트는 모델적 성격 혹은 모범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활동영역 관련 유용성 (14)		
	프로젝트는 REK(지역발전컨셉) 활동영역의 주요 과제에 기여 한다	
	세대 간 네트워크와 생활공간의 질적 개선: 세대 상호 간의 관계개선과 생활공간의 기능적 여건의 개선	
	지역의 역사, 문화와 자연의 보전, 체험기회의 제공: 지역이 가진 역사, 문화와 자연의 잠재적 가치를 보전하고 체험하는 데 기여한다	
	관광자원의 개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여건들의 개선	
	지역경제의 가치창출과 경제적 네트워크의 확충: 지역경제의 가치창출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다	

70점 중 받아야 할 점수 총계 목표점수 총계: 점

프로젝트는 최소 점수 총계 45점을 획득함	예	아니오

평가 기관(명):

4) LAG 프로젝트 진행도

○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되며, LAG매니지먼트(매니저)는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구상단계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단계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서 프로젝트 진행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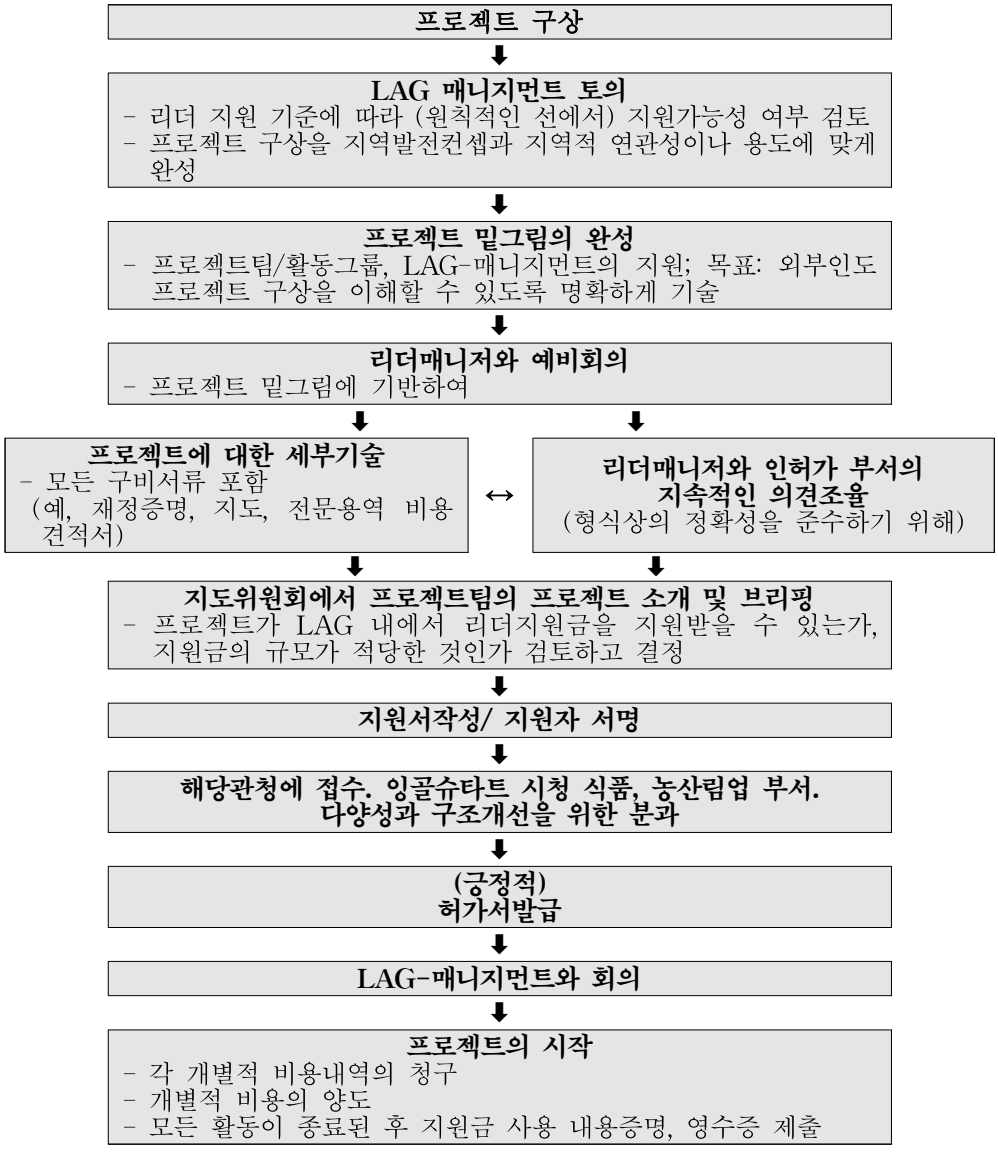

<그림 3-17> LAG 프로젝트 진행도

5) LAG 프로젝트의 평가

○ LEADER 활동주체들은 주로 전략구상이나 프로젝트 실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활동결과를 기록하는 일에는 소홀하기 쉽다[26]. 그러나 LEADER 전략페이퍼 안에 프로젝트 활동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와 목표 등을 미리 명확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결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일에 불필요한 시간소모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와 기록 작업을 체계화시켜 LAG 관리활동의 일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적당한 시점은 LAG이 최종 지원금신청, 결과보고 등을 받는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이다.

(1) 보고서 작성과 인터뷰

○ 프로젝트의 결과들을 LAG의 지표목록표에 기록하는 일은 LAG구성원이 최종 보고서를 보고 단순히 책상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모순점이 있을 때,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연락하고 물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지표기록용 LAG 문서형식을 만들고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내용을 채워서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부탁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전화인터뷰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결과의 입증

○ 프로젝트의 결과조사를 위해서 전화와 현장방문은 필수이다. 때때로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영향지표를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예컨대 개별 LEADER-프로젝트 하나가 지역의 전체 노동수요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진다고 보고된다면, 이것은 뭔가 과장을 의심할 만한 것이다. LAG 구성원은 보고된 프로젝트 지표의 정확성을 미리 검사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다.

○ 지역활동그룹은 자신들이 거둔 성과를 단지 연례 보고서를 통해 관청에 알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문방송매체를 활용하고 더욱 많은

26) 2010년 EU 회계감사처는 LAG 활동성과에 관한 정확한 기록정보들이 LEADER프로그램의 적법성과 가치창조의 증거로서 결정적인 근거임을 공표한 바 있다.

대중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공적 자금운용의 투명성도 아울러 높아질 수 있다.

(3) 효과적인 전략구현을 위한 자기평가

○ 자기평가는 LEADER 전략구현과 프로젝트의 추진에 도움이 됨. 그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 경험, 관점 등을 더욱 많이 얻게 된다. 다음의 3가지 관점들은 평가과정에서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① 목표: 목표들은 어느 정도까지 개발수요에 부합하도록 제시 되었는가
② 프로젝트 추진의 질적 수준, 효과, 조정력 그리고 (지표를 포함해서) 동반작업(관리 및 조정)의 방식과 유형
③ 전략이나 프로젝트의 성과 및 그것이 목표그룹에 미치는 영향

(4) LAG의 자기평가 과정

○ LAG의 입장에서 자기평가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① LAG은 평가의 필연성을 인지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자기평가를 우선하며, 자기평가를 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선택
② LAG은 평가질문지를 작성하고 잠정적으로 답변 일정 적시
③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사
④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평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결론 도출
⑤ LAG의 전략과 활동은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롭게 수립

(5) 외부평가기관에 위촉 (대학과 자문기관)

○ 외부평가 위촉은 LAG LEADER전략의 추진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더욱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견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위촉기관은 LAG과 상시적 관계를 가지지 않고, 위촉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자문기관, 여타의 전문조직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LAG은 이 같은 과제를 대학원생의 석사논문 주제로 위촉할 수도 있다.

○ 외부평가 위촉에서 요구되는 최소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피위촉자는 이 기간 동안 자문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평가되어야 할 주제나 대상들은 계약에 명시되며 평가 도중 바꾸지 말아야 한다.
③ 평가는 일반적으로 수량적 데이터에 의거한다.
④ 평가는 프로젝트와 실행환경을 비교한다. 외주평가는 특정 기간 혹은 프로젝트 마감시에 이 상황을 포괄적으로 그려내야 한다.
⑤ 평가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로 일반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6) 평가네트워크의 지원

○ 농촌발전 유럽 평가네트워크(“평가를 위한 전문가네트워크“)는 2007-2013년 EU 회원국에서 진행하는 농촌발전 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s, RDP)을 평가하고 평가의 질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다. 네트워크의 활동은 정부부서, 평가기관이나 기타 관련 단체들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도구를 지원하고 평가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한다.

제3절 소결

1. 국내사례

1) 총괄

○ 본 연구에서는 총괄계획가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과 영주시의 ‘디자인관리단장’,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을 조사하였다.
○ 각 사례별 총괄계획가는 역할범위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개별단위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총괄계획가와 지역의 전체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총괄계획가로 나눌 수 있다.

- 사업단위 총괄계획가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 국토해양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디자인총괄계획가, 영주시 공공건축가,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사업 PM
- 지역 총괄계획가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총괄계획가,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표 3-16) 사례별 총괄계획가 유형구분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영주시	문화체육관광부
	총괄계획가시범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관리단	문전성시사업
지역전체 총괄·관리	지역총괄계획가	-	디자인관리단장	-
사업 (프로젝트) 총괄·관리	총괄계획가	디자인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PM (Project Manager)

○ 총괄계획가는 전문지식이나 사업 관련 경험을 가진 전문가 1인을 선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비상근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주2회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다.

○ 특히 (사업)총괄계획가의 경우 사업공모단계부터 선정하여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활동하도록 함으로서 전문성 있고 일관성 있는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과 문전성시사업은 사업공모단계부터 지자체가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사업공모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사업의 전 과정에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총괄계획가와는 별도로 사업 추진과정상 이견조정 및 사업자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와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주체가 있으며, 각 사례별로 운영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 농식품부 및 국토부의 경우 사업 추진과정상 이견조정 및 사업자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와 모니터링 주체가 이원화 되어있으나, 문광부사업의 경우 컨설팅단에서 이견조정 및 사업자문·컨설팅·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함께 도맡고 있다.

(표 3-17) 사례별 운영주체 구분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영주시	문화체육관광부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관리단	문전성시사업
이견조정 및 사업자문, 컨설팅	조정자문위원회	디자인검토위원	디자인자문 위원회	문전성시 컨설팅단
모니터링	농어촌공사 기획기술지원단	모니터링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또한, 각 사례별로 사업 추진과정상 이견조정 및 사업자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업에 대한 자문 및 분쟁이나 이견 발생 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18) 사례별 사업자문 및 조정자 역할 수행주체 유형구분

사업명	명칭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시범사업	조정자문 위원회	◦분쟁발생 시 **조정**역할
		◦권역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 분석 및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사업지구 문제점 및 해소방안)
국토교통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 검토위원	◦사업 추진단계별로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조언자**역할
		◦이견발생 시 **조정자**역할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영주시 디자인자문위원회	디자인자문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 -영주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디자인자문 -영주시 각종 위원회에서 디자인자문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사업	컨설팅단	◦사업추진방안 및 추진계획 **검토자문**
		◦시범시장 선정기준마련, 시장실사, 심사선정
		◦시범시장 전담 PM추천
		◦PM 과업지시서 제시
		◦시범시장 사업실행 수립자문 및 실행 시 시행**자문 및 조언**
		◦사업 모니터링 담당자 인터뷰 및 평가
		◦다음해 사업계획 수립 **검토 및 자문**
		◦중장기 사업 계획 및 정책 방향 검토
		◦다음해 후보사업에 준비연구 사전조사
		◦마케팅, 스토리텔링, 공간, 커뮤니티 등 분야별 **진단 조언, 지원 활동**
		◦시범사업평가(만족도조사 및 현장 리서치)

○ 이 밖에 총괄계획가 업무 및 근무형태, 자격요건, 위촉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각 사례별로 정리하면 (표 3-19)와 같다.

(표 3-19) 국내 총괄계획가 관련 사례 비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영주시	문화관광체육부	
명칭	총괄계획가	조정자문위원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디자인관리단장	PM: Project Manager	컨설팅단
참여사업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영주시 공공건축 및 디자인관련 사업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계획수립 정착 및 농어촌 가치향상 도모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건축·도시 관련사업간 연계강화 및 통합적 도시경관 형성 도모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활성화	
위치	외부 전문가 위촉		외부 전문가 위촉		시장직속 전담 외부 전문가 위촉	외부 전문가 위촉	
업무	-계획수립과정 총괄 및 진행, 주요내용 검토·조정 -계획 수립관련 자료 수집 및 자료 요청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자문요청 -지역주민대상 계획 내용 설명 및 의견 청취 -시군구장 요청 사항 검토 및 의견제시 -역량강화사업 발주 요청 -지역여건 사전조사 시행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분쟁 발생시 조정 -권역 문제점 및 애로사항 조사·분석 -사업지구 문제점 및 해소방안관련 결과보고서 제출	-계획수립관련 제반 사항 총괄·조정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검토하여 최종 승인, 용역수행주체 선정과정 의견제시 -계획수립 및 조정방식, 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설계 및 시공단계의 설계변경 및 기타 계획안 수정변경 검토승인	-시범사업의 기획부터 시공단계까지 디자인검토를 통해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조언자 역할 -디자인총괄계획가, 지자체, 계획수립 업체 등과의 의견 발생시 조정자 역할 -모니터링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지자체 공공건축·공공공간사업 총괄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디자인 총괄관리 -중앙정부지원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지원 -각 부서의 프로젝트단위 기획업무 및 디자인자문 -중앙부처 시범사업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한 영주시 전체 프로젝트 정합성 확보	-사업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정산 -시장상인,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지역단체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 -시장 분석,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 수요조사, 워크숍 실시	-사업추진방안 및 추진계획 검토자문 -시범시장 선정기준 마련, 시장실사, 심사선정 -시범시장 전담 PM 추천 -PM 과업지시서 제시 -시범시장 사업실행 수립자문 및 실행 시 시행자문 및 조언 -사업 모니터링 담당자 인터뷰 및 평가 -다음해 사업계획 수립 검토 및 자문 -중장기 사업 계획 및 정책 방향 검토 -다음해 후보사업에 준비연구 사전조사 -마케팅, 스토리텔링, 공간, 커뮤니티 등 분야별 진단 조언, 지원 활동 -시범사업평가(만족도조사, 현장리서치)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영주시	문화관광체육부	
근무 형태	비상근 근무		비상근 근무		주2회 상근 근무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	비상근 근무
자격 요건	-농어촌계획지역개발관련 학과 교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박사학위 소지자면서 실무경력 7년이상 · 기술사 또는 건축사면서 실무경력 7년이상 ·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총괄계획가 유경험자 등	-총괄계획가 자격기준에 준하는 전문가	-건축·도시조성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의거하여 선임된 공공건축가, 코디네이터, 디자인 어드바이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 대학에서 건축·도시·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별도의 자격요건 없음	-지역문화, 커뮤니티아트, 시각예술, 공연예술, 공간설계 등 다분야에 대한 통합적 기획이 가능한 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 단체 또는 개인	-건축, 도시설계, 문화기획, 공공미술, 지역문화마케팅, 관광스토리텔링,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등 다분야의 전문가
위촉 방식 및 절차	-총괄계획가: 공개모집 및 사도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 시장·군수 위촉 -실무계획가: 총괄계획가와 전문분야가 겹치지 않도록 선정한 후 시장·군수 위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	-지자체에서 예비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 위촉	-시장이 위촉	-적합한 기관단체를 컨설턴트가 추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3배수 설정 -각각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종 1인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전문가 위촉
활동 기간	기획제안단계~기본계획 수립 종료까지 참여		기획단계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시공, 유지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참여		영주시 모든 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 전 과정에 참여	사업공모단계부터 사업종료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	
	월 8회 권장		월 4회 권장	디자인검토 2회 의무수행	주 2회 상근, 임기 2년		
보수 기준	-보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보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보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예산	-디자인검토위원은 업무지침에 규정된 디자인검토회의의 참여 실	-보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지인건비 상한선은 월 3,500천원으로 사업기간으로 적용	-서면 컨설팅 200천원/회 -방문 컨설팅 400천원/회 -사업평가비용은 시장 당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영주시	문화관광체육부	
	-자문 및 회의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자문비: 총괄계획가 300천원/1회, 실무계획가 200천원/1회 · 교통비: 공무원 여비 기준	-자문 및 회의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회의수당) : 70천원/1회 (횟수별 2시간 초과시 30천원 추가지급 가능)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사전검토수당: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기술사단가 기준 -회의수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원회 참석비 기준 -교통비: 공무원 여비기준 ※국고지원금의 100/10 내외에서 민간전문가 보수 지급	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함	기술사 단가 -사전검토수당: 1건당 30,000원 이하 -일비 및 여비: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금액	※ 문전성시 사업 전체 형평성 및 PM 실투입률 고려	8,500천원 (예산 항목으로 책정) -홍보비용은 시장 당 6,000천원으로 컨설팅단 혹은 컨설팅단이 선정한 홍보대행사와 홍보계약 체결
구성 인원	1개 사업지구당 총괄계획가 1인, 실무계획가 1인 구성	1개 사업지구당 조정자문위원회 2인 구성	1개 사업지구당 디자인총괄계획가 1인 구성	1개 사업지구당 디자인검토위원 2인 구성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 1인, 공공건축가 3인, 행정지원조직 3인 구성	1개 사업지구당 총괄계획가 1인 구성	1개 사업당 책임컨설턴트 2인 구성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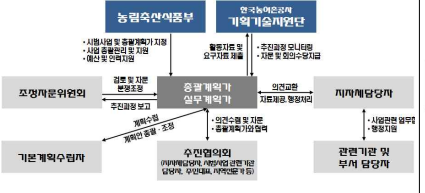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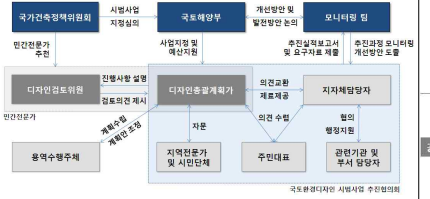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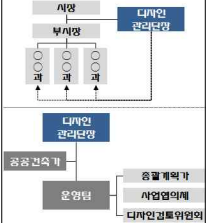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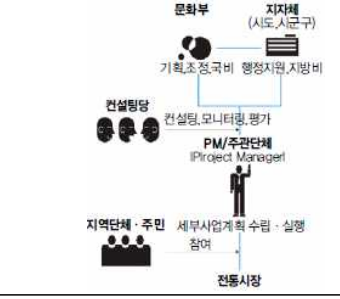

2) 시사점

▌사업 전 과정에서 총괄계획가가 참여함으로서 사업의 일관성 확보 필요

○ 총괄계획가는 사업 기획단계에서 종료단계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사례별 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참여시점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사업종료단계까지 참여함으로서 계획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시행 및 종료단계까지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총괄계획가에 해당하는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은 임기 2년의 위촉직으로 활동하는 동안 영주시의 중장기적 디자인 정책 방향에 맞게 중앙부처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부터 사업종료까지 지원하고 있다.
- (사업)총괄계획가에 해당하는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의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경우 시범사업 공모 시 예비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계획안작성부터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광부 문전성시사업에서의 PM과 컨설팅단은 사업 공모 준비단계부터 선정하여 사업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농식품부 총괄계획가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본계획수립 종료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총괄계획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식품부 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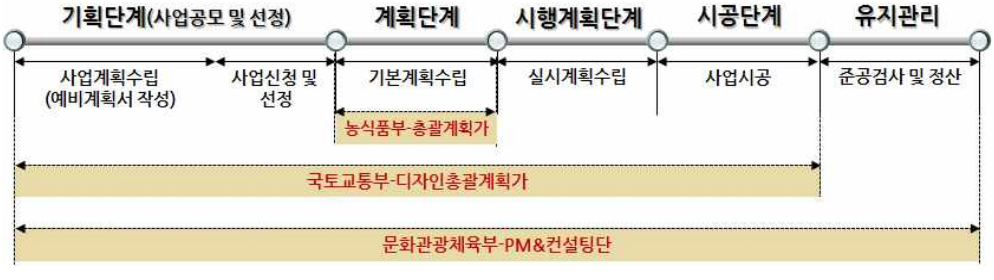

<그림 3-18> 각 사례별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마련 필요

○ 지역총괄계획가와 사업총괄계획가는 관장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영주시는 사업총괄계획가와 지역총괄계획가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사업총괄계획가에 해당하는 공공건축가의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해 자문을 통해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총괄계획가에 해당하는 디자인관리단장의 경우, 영주시 차원에서의 통합된 디자인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모든 프로젝트의 사업 전 과정에서 자문을 통해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디자인관리단장과 공공건축가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영주시 내 다양한 사업들 간의 연계와 통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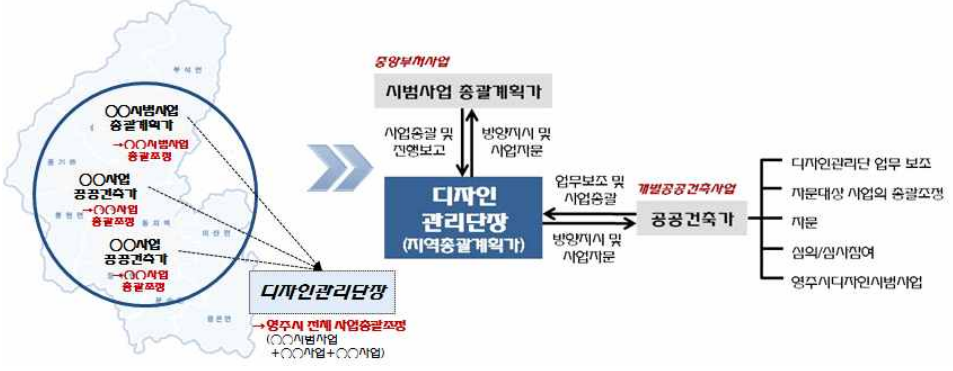

<그림 3-19> 영주시 지역총괄계획가 및 사업총괄계획가 운영 사례

○ 현재 농식품부는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의 지역총괄계획가의 경우, 업무지침상 역할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지역총괄계획가에 맞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제시하되 사업총괄계획가와는 다른 차별화된 역할이 부여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및 총괄계획가의 선정기간 재검토

○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및 총괄계획가를 사업시행 전 년도에 조기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선정하기까지 평균 2~2.5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시행 당해 연도에 시범사업 공모 및 최종선정을 하게 된다면 계획수립 등의 사업시행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은 지자체 확정 이후 민간전문가(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의 선정이 모두 완료되어 관련자 워크숍을 개최하기까지 2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을 조기 시행하고, 시범사업 선정과 동시에 총괄계획가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 총괄계획가를 공모단계부터 참여시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응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광부 문전성시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시기를 앞당겨 사업이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및 선정 시기를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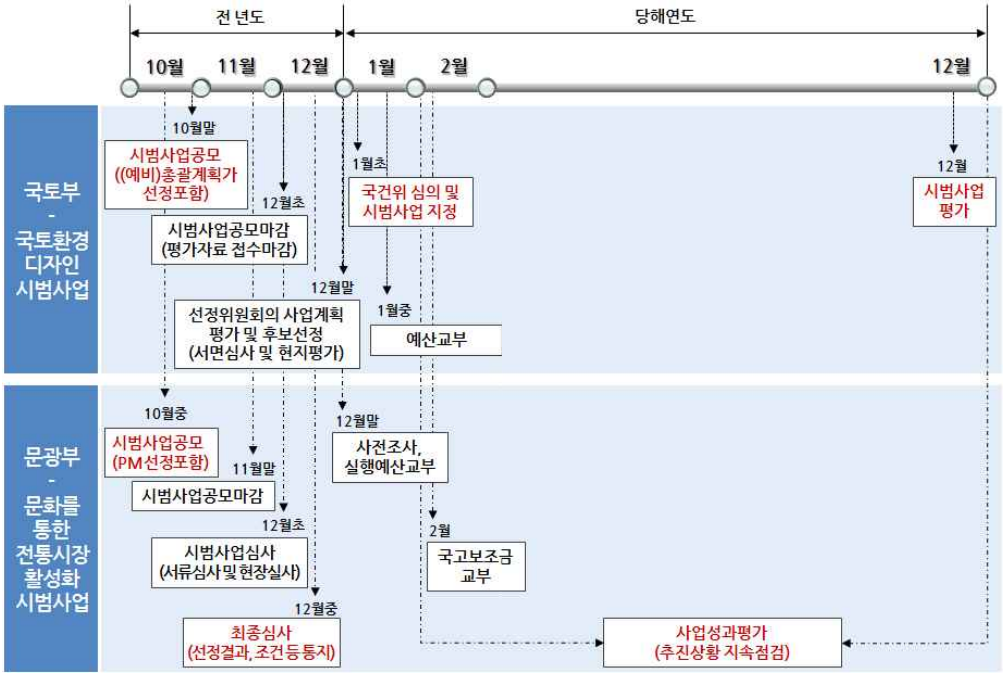

<그림 3-20>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및 문전성시 사업추진 일정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권한 제시필요

○ 총괄계획가는 사업의 방향설정 및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권한이 약하다면, 역할 수행 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영주시는 지역총괄계획가인 디자인관리단장을 시장이 선정·위촉하고 지위는 부시장급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서의 총괄계획가는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으며, 문전성시사업의 컨설팅단은 문광부에서 위촉하고 있다.

○ 또한,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의 경우 총괄계획가를 국토부에서 위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상 총괄계획가의 권한이 모호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

- 총괄계획가가 자문위원 수준으로 인식하거나 이견 발생 시 협의가 총괄계획가 주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자(염철호 외, 2012) 해마다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총괄계획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디자인총괄계획가가 발주방식 및 업체선정에 대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침 상 권한을 강화하였다.

> · 디자인총괄계획가는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지자체장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최종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함
> ·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용역수행주체의 선정과정에 참여하여 선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 설계 및 시공단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디자인총괄계획가가 검토·승인하여야 함

-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총괄계획가의 권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경고 조치하도록 업무지침에 제시하고 있다.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업무지침」 8-5-1
> ·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존중, 디자인검토회의 절차 엄수 등 본 업무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과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등)' 에 근거하여 기 지급된 국고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총괄계획가의 경우 사업과정 및 내용과 사업주체 간 조정과 협의, 갈등대응 등 사업추진 과정상의 총괄·조정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사업주체 간(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 주민 등)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위촉함으로서 일부 부서 또는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총괄계획가 위촉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주체의 명확한 역할정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선정부터 실행 및 사후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모니터링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토교통부와 해당 자치단체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행정지원 및 상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업무지침 상 모니터링 주체 및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시기에 따른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주체(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의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상시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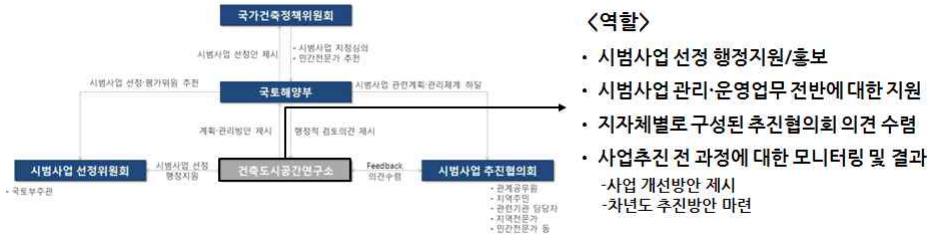

<그림 3-21>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모니터링 팀 역할

○ 모니터링은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총괄계획가 등의 사업추진 주체 간 가교역할 및 행정지원,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사업개선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방법은 업무지침 상 모니터링 시기, 방법들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향후에는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괄계획가 제도의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현재 지침 상의 모니터링 기준 및 운영방법, 시기 등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국외사례

1)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지역개발에서 지역중심의 통합적 개발, 주민참여, 파트너쉽, 유연성, 내생적 발전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간의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의 존재, 마을의 비전과 정기전망 수립, 주민간의 협력, 전문가의 자문, 외부로부터의 정책적인 계기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 그러나 유럽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 중에서 우선, 외부로부터의 정책적인 계기의 제공이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27].

○ LEADER 프로그램은 EU 차원에서 비록 위로부터 계획되었으나, 물적 및 인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원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이 주민참여 기반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을 만드는 데 효과가 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LEADER 프로그램과 같이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생력을 길러내는 정책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LEADER와 같은 정책을 도입한다면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상당기간 동안 지속성을 가진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향식, 내생적 정책 수단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활동그룹(LAG)과 같은 제도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유럽의 LEADER 프로그램의 경험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단이 된 것은 지역활동그룹의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지역활동그룹의 결성은 기존 행정의 부문중심정책, 관료주의를 탈피하고, 지역에 기반한 주민참여와 상향식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

---

27) 총괄계획가에 요구되는 역할은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리더쉽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LEADER의 기본단위인 지역활동그룹(LAG)의 '제도화된 리더쉽' - Bottom up 원칙과 정책적 지원이 결합된 - 에 가깝다.

○ 아울러 LEADER의 지역활동그룹은 LEADER 이외의 다른 농촌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농촌개발정책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핵심 대화 파트너이자, 코디네이터, 자문위원, 회의진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LAG매니저를 두어야 함

○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팀(계획수립자)과 지역주민, 지자체 사이에 LAG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실무자를 둠으로서 사업 초기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LAG 매니저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기 위해 프로젝트 팀에 자문역할, 프로젝트의 진행, 신청서 작성 및 지원금 사용 내용증명 등 프로젝트 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한다.

▌파트너쉽을 구성할 때 민간과 관이 공동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에도 주목해야 함

○ 민간만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성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공공의 협조를 받기 곤란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만이 주도하면 기존의 관료주의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관과 민간의 조화는 민간의 활력과 공공의 자원을 통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LEADER와 같은 정책을 도입할 경우 단계적 접근과 교류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시해야 함

○ LEADER 프로그램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단계적 성격을 보여주는데, 첫째,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전해왔으며, 둘째, LEADER 프로그램 자체가 계획 단계별로 수행되는 사업 활동이라는 것이다.
○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1991 년 LEADER I을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후, LEADER II, LEADER+ 로 프로그램이 전개되면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정책수단을 세련화해 왔다. 따라서 LEADER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우선 실험적 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차츰 전면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상향식 원칙을 갑자기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이 예상되며, 그 간 정부 의존적인 행태에 익숙한 주민들의 적응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한편 LEADER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양성, 특히 지역의 발전수준과 단계에 맞추어 유연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네 가지 사업계획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 제1단계: 기술의 습득 / 인재육성 → 제2단계: 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 제3단계: 공동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 제4단계: 지역전체의 네트워킹(정보와 노하우의 교환)

▌지역활동그룹은 사업계획 단계에 맞추어 LEADER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원용할 수 있음

○ 가) LEADER가 제공하는 기술의 습득 (지역현황의 분석, 주민 훈련, 전략의 작성과 재정의 획득 등) 나) 혁신 프로그램 (타지역에의 보급성이 높은 농촌개발전략 모델) 다) 초국가적 협력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경우에 디자인, 상품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라) 네트워킹 (각지에서 개발된 혁신모델을 EU전체에 전파) 등의 정책수단들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LEADER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지역의 능력발전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LEADER 프로젝트 선발기준[28]에 적용된 표준적 규정들을 참고해서 국내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주관적 판단을 제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정착시켜가야 할 것임

28) LEADER 프로젝트의 선발기준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최소 하나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업은 나열적이지 않고 하나의 주제 아래 통합성을 가져야 한다.
- 개척적 (pilot) 성격을 가져야 한다.
-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한다.
-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경제부문들을 결합시킨다.
- 의사결정과 활동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거나 독창적인 조직방식을 개발한다.
- 우선 지원계층으로는 여성과 청소년을 배려할 것을 권장한다.

제4장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방안

제4장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방안

제1절 총괄

○ 지금까지의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의 운영실태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 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소한 1회 교육과 2회 워크샵이 운영되어야 하고, 2회의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 교육, 워크샵, 모니터링 시기는 각 사업 단계별로 <그림 4-1>과 같이 적정시기·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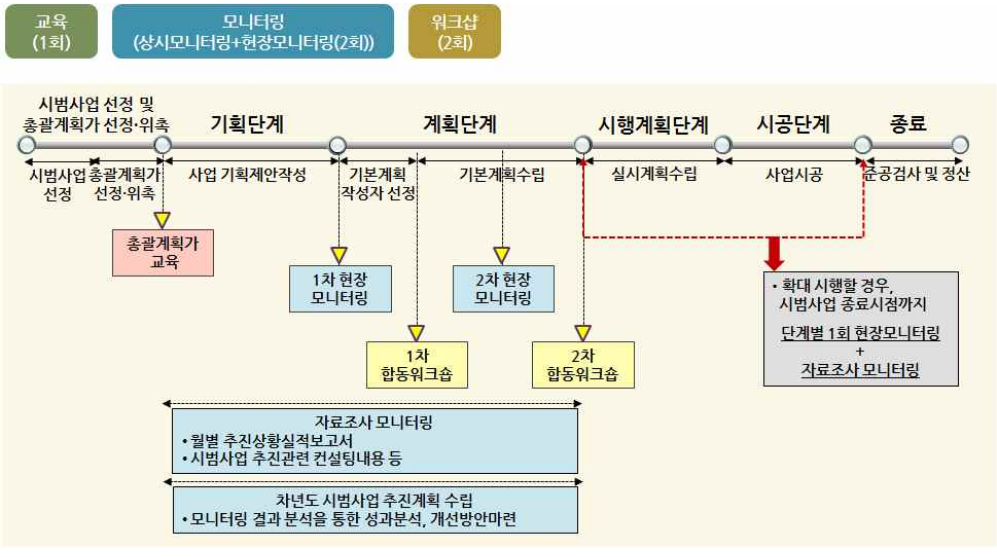

<그림 4-1>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 프로세스(안)

○ 총괄계획가 제도 주요 개선방안(안)은 크게 선정 및 위촉, 추진주체, 추진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선정 및 위촉부분에서는 인력풀제공,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 주체 일원화, 총괄계획가 선정 평가기준 구체화, 총괄계획가 충분한 활동기간 확보가 개선되어야 하고,

- 둘째, 추진주체 부분에서는 총괄계획가 권한 강화, 추진단계별 역할 명확화,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협의회 운영방식 개선, 실무계획가 역할 명확화, 지역총괄계획가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셋째,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기획제안서 제출방식 개선, 기본계획 수립자 선정과정 개선, 기본계획 승인절차 개선, 총괄계획가 활동횟수 및 보수기준 개선, 사업추진과정 관리강화,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 교육 및 워크숍, 시범사업 정보교류 장 마련,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방법은 (표 4-1)에서와 같이 업무지침, 모니터링, 컨트롤타워 지원 형식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 총괄계획가 제도 주요 개선방안(안)

구분	내용	개선방안	수단		
			업무지침	모니터링	컨트롤타워 지원
선정 및 위촉	총괄계획가 인력풀 제공	- 지자체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총괄계획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인력 풀 제공			○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주체의 일원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 및 위촉	○		
	총괄계획가 선정 평가기준 구체화	- 총괄계획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		
	총괄계획가 충분한 활동기간 확보	- 총괄계획가 선정시기 조정 -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사업종료시까지 확대	○		
추진 주체	총괄계획가 권한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하여 위상확보 - 지자체협조 미흡시 지침 준수토록 조치	○		○
	추진단계별 역할 명확화	- 교육시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명시, 참여주체별 총괄계획가 역할 명시	○		○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 시범사업 추진주체 이견발생 시 조정역할 - 시범사업 추진과정 자문 - 전문분야의 자문 - 컨트롤타워 현장 모니터링 시 모니터링 수행 - 사업지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

구분	내용	개선방안	수단		
			업무지침	모니터링	컨트롤타워 지원
	컨트롤타워 신설	- 사업일정, 예산, 추진주체 등에 관한 지구별 시범사업 추진과정 관리 -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 수시 행정지원 및 시범사업 실적보고 자료 관리 - 주민 및 지자체 사업 행정사항 지원 - 지자체담당자 및 주민대상 교육활동지원 - 조정자문위원회 운영 - 전문가 풀 제공 - 시범사업 성과 홍보 - 시범사업 백서발간 -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추진협의회 운영방식 개선	- 기존 구성된 위원회 및 협의회 활용	○		
	실무계획가 역할 명확화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 - 행정업무 수행 - 기타 세부 권한 및 역할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조정 가능	○		
	지역총괄계획가 활용방안 마련	- 역할 및 권한, 업무범위 등 제시	○		
추진과정	기획제안서 제출방식 개선	- 기획제안서 제출방법 및 제출시기 제시	○		
	기본계획수립자 선정과정 개선	- 용역발주방식에 대한 총괄계획가 권한 명기	○	○	○
	기본계획 승인절차 개선	- 시범지구에 한해 시·군·구청장 승인	○		
	총괄계획가 활동횟수 및 보수기준 개선	- 활동횟수 및 최대지급가능 수당 제시	○		
	사업추진과정 관리강화	- 지자체 월별 사업추진보고서 작성추가 (내용: 회의안건 및 조치결과 등)			○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지표 제시	○	○	○
	교육 및 워크숍	-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 - 교육시기 및 프로그램 마련			○
	시범사업 정보교류장 마련	- 시범사업 운영관련 제반사항 공유 -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인센티브 마련	-우 수한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	○

제2절 선정 및 위촉

1. 인력풀제공

○ 지자체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총괄계획가를 추천하고자 하나, 다양한 전문가 인력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추천 시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문가 풀 제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개선사항) 컨트롤타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나타낼 수 있다.

[컨트롤 타워 지원(안)]
○ 관련 전문가 풀 제공 예시

전공분야	활동내역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지역개발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심사위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자문위원	○○ 대학교	교수	○○○	000-0000 -0000

2. 총괄계획가 선정 및 위촉주체 일원화

○ 총괄계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하고 위촉은 지자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총괄계획가 위촉이 지연됨으로 인해 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장이 총괄계획가를 위촉함에 따라 총괄계획가의 위상이 약화되는 경향이 컸다.

○ (개선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위촉하여 이를 통한 총괄계획가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괄계획가 선정과 위촉관련한 업무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제2절 총괄계획가 구성과 위촉 및 해촉
3-2-2 총괄계획가는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써 공개모집 및 시·도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 및 위촉한다.

3. 총괄계획가 선정 평가기준 구체화

○ 총괄계획가 지원 시 이력카드 및 지원소견서(선정되어야하는 사유, 신청지구 개발계획, 참여가능일수, 실무계획가 운용계획) 등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6명의 외부전문가에 의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조사를 통해 선정되나 총괄계획가 선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개선사항) 총괄계획가 선정[1]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총괄계획가 평가 개정(안)]
○ 심사위원: 농식품부 3명, 외부 4명, 컨트롤타워 2명
○ 평가기준: 서류심사(30점), 면접심사(70점)
○ 전제조건: 시·군의 추천이 없으면 접수 불가능(2명까지 추천가능)
○ 총괄계획가 선정 평가기준(안)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서류 심사	농산어촌개발사업 참여 경력(실적)	10년/7년/5년/3년/1년	15
	관련 자격증 및 교육이수[2]	컨설턴트 자격증, 퍼실리테이터자격증 등 지역개발관련 교육이수경력 등	7.5
	기타사업 참여경력	타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	7.5
면접 심사	현장 접근성	1시간이내/2시간이내등	5
	해당 지역 이해도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5
	시범사업 활동 참여도	한 달에 5번 참여/4번/3번/2번/1번	10
	향후 계획성	추진절차 및 계획, 전문가 구성의 적합성, 실무계획가 구성의 적합성	25
	지자체 시범사업추진 의지	단체장과 행정의 지원의지, 전담지원부서 및 인력배치 여부	15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는 조언자·의사소통자·옹호자·행정가·계획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여 선정하기보다는 농촌 지역개발의 다양한 분야를 볼 줄 아는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선정함으로서, 총괄계획가 활동 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총괄계획가 충분한 활동기간 확보

○ 시범사업 및 총괄계획가 선정시기가 당해연도 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자 선정 후 총괄계획가가 위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취지에 맞는 기본계획수립자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3월~11월로 되어 있다. 그러나 11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려면 12월말 또는 2차년도 1월경이 되어야 가능하여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 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은 기획단계부터 기본계획수립 종료까지로써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이 실시설계과정에서 원안대로 명확하게 반영될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지속적인 참여 명시 및 유도가 필요하다.

○ (개선사항) 시범사업 공모 및 총괄계획가 선정시기를 전년도 12월로 조정하여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총괄계획가의 활동기간을 사업종료시까지로 확대함으로서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명시하고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일정 개정(안)]
사업공모(○○.12.1~5) → 평가(○○.12.8~10) → 선정결과 발표(○○.12.11) → 총괄계획가 공개 모집(○○.12.12~19) → 총괄계획가 서류심사(○○.12.22~24) 및 면접(○○.12.26) → 총괄계획가 대상자 확정 통보(○○.12.30)

[총괄계획가 활동기간 개정(안)]
제3절 총괄계획가 자격 및 운영기간
3-3-3 총괄계획가 운영은 시범지구 기획제안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수행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전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괄계획가를 시공단계까지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추진주체

1. 총괄계획가 권한 강화

○ 총괄계획가는 계획수립 과정의 총괄·진행 및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조정하는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였으나, 총괄계획가의 생각과는 다른 역량미흡의 용역업체 선정 등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역량강화 사업 등 포함)자와 지자체 담당자, 지역주민 등이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주민교육 및 워크샵, 업무지침 등을 통해 총괄계획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 있다.

○ (개선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괄계획가를 선정 및 위촉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상확보가 필요하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제2절 총괄계획가 구성과 위촉 및 해촉
3-2-2 총괄계획가는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써 공개모집 및 시·도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 및 위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총괄계획가의 권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에 경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3-7-1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존중, 시범사업 절차엄수 등 본 업무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추진단계별 역할 명확화

○ 추진단계별로 각 사업주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해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였다.

○ (개선사항) 교육 시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 명시와 참여주체별 총괄계획가 역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1. 사업추진 단계별 역할

① 시범사업 지구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지구 선정공고 및 심사·선정
	지자체	◦시범사업지구 신청 및 추천
	컨트롤타워	◦지자체 요청시 전문가 풀 제공(총괄계획가 추천관련)
② 총괄계획가 선정·위촉 및 추진협의회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계획가 모집공고 및 심사·선정 ◦총괄계획가 위촉 ◦총괄계획가 시범사업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최
	지자체	◦실무계획가 위촉 ◦추진협의회 구성
	컨트롤타워	◦총괄계획가 시범사업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최 준비
③ 시범사업 기획제안서 작성		
⬇	지자체	◦총괄계획가 사전조사 행정지원 ◦추진협의회 회의 행정지원 ◦기획제안서 협의
	총괄계획가	◦예비계획서 검토 ◦대상지 사전조사 ◦주민의견 수렴 ◦기획제안서 작성
	추진협의회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조정자문위원회	◦현장모니터링 참여(기획제안서 작성후) ◦총괄계획가 요청시 전문분야 자문
	컨트롤타워	◦현장모니터링 시행(기획제안서 작성후) ◦시범사업 추진관련 컨설팅 ◦월별추진실적보고서 취합 및 상시모니터링
④ 기본계획 설계방식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조정자문위원회 개최(현장모니터링 후) ◦제1차 합동워크숍 개최
	지자체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방식 결정 ◦계획수립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총괄계획가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검토·승인
	추진협의회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조정자문위원회	◦총괄계획가 요청시 전문분야 자문 ◦조정자문위원회 참석
	컨트롤타워	◦제1차 합동워크숍 개최 준비 ◦시범사업 추진관련 컨설팅 ◦월별추진실적보고서 취합 및 상시모니터링

⑤ 기본계획수립 작성	
농림축산식품부 ▌	◦제2차 조정자문위원회 개최(현장모니터링 후)
지자체 ▌	◦기본계획서 작성지원
총괄계획가 ▌	◦기본계획 총괄·조정·관리 - 합리적인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분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검토
⬇ 추진협의회 ▌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조정자문위원회 ▌	◦현장모니터링 참석 ◦총괄계획가 요청시 전문분야 자문 ◦조정자문위원회 참석
컨트롤타워 ▌	◦현장모니터링 시행 ◦시범사업 추진관련 컨설팅 ◦월별추진실적보고서 취합 및 상시모니터링

⑥ 시범사업 기본계획 승인	
농림축산식품부 ▌	◦제2차 합동워크숍 개최 ◦시범사업지구 기본계획 승인 ◦시범사업 완료보고서 평가 ◦총괄계획가 지속여부 결정
⬇ 지자체 ▌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제출 ◦시범사업 완료보고서 작성
총괄계획가 ▌	◦기본계획 총괄·조정·관리
컨트롤타워 ▌	◦제2차 합동워크숍 개최 준비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차년도 개선방안 마련

2. 참여주체에 따른 총괄계획가 역할

참여주체	총괄계획가 역할
지역주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및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지자체	관행타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고취
용역사	틀에 박힌 보고서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및 실행 유도
중앙부처	정책보완 및 개선방안 제시

3. 조정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 조정자문위원회는 추진협의회 분쟁발생시 조정역할 및 사업지구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 조정자문위원을 잘 활용하지 않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모니터링도 주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자문위원회 활동이 미흡하였다.

○ (개선사항) 업무지침 상 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총괄계획가의 조언자이자, 이해관계에 있어 조정자 등의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조정자문위원회 운영(안)]
○개념: 시범사업 추진방법 및 애로사항, 갈등 등에 대해 상시 자문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구성: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전문가로 구성
○운영: 정기자문회의(년2회)와 사업지구 등의 요청사항에 대해 수시 자문
○역할
· 시범사업 추진주체 이견발생 시 조정역할
· 시범사업 추진과정 자문
· 전문분야의 자문
· 컨트롤타워 현장 모니터링 시 모니터링 수행
· 사업지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4. 컨트롤타워 신설

○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추진 총괄 및 운영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총괄계획가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사업 지원 부족을 느꼈다. 1,2차 시범사업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는 사업 행정지원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 (개선사항)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담당하며 총괄계획가 교육 및 홍보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 신설(안)]
○목적: 총괄계획가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지원·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의 발전적 방향 마련
○역할
· 시범사업관리
- 사업일정, 예산, 추진주체 등에 관한 지구별 시범사업 추진과정 관리
-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 수시 행정지원 및 시범사업 실적보고 자료관리
· 현장지원
- 주민 및 지자체 사업 행정사항 지원

- 지자체담당자 및 주민대상 교육활동지원
- 조정자문위원회 운영
- 전문가 풀 제공

· 홍보

- 시범사업 성과 홍보
- 시범사업 백서발간
- 교육 및 워크숍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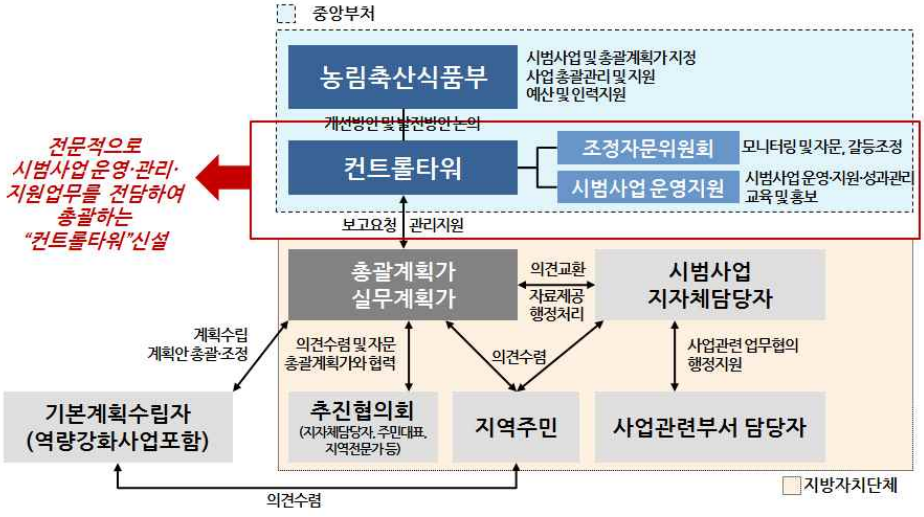

<그림 4-2>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추진체계(안)

5. 추진협의회 운영방식 개선

○ 시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읍면 및 권역발전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서 새롭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함에 따라 주민불만제기 및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 (개선사항)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협의회 필요성 및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제3장 추진협의회 및 총괄계획가 운영
3-1-5 추진협의회는 기존의 읍면단위 또는 권역단위 추진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읍면 및 권역발전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실무계획가 역할 명확화

○ 실무계획가의 역할은 '총괄계획가를 보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좌에 관한 명확한 역할 규정이 어렵고 자격조건 및 역할과 업무, 권한 등이 없어 실무계획가로서 역할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 (개선사항) 실무계획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지침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제4절 시범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3-4-5 실무계획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한다.
② 시범사업 추진과정 관련하여 행정업무(회의록 작성, 보수관련 증빙행정처리 등)를 수행한다.
③ 기타 세부 권한 및 역할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 조정이 가능하다.

7. 지역총괄계획가 활용방안 마련

○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업무범위 등이 지침에 제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지역총괄계획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지자체는 어느 부서에서 전담해야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였다.
○ (개선사항) 지역총괄계획가 역할, 업무범위 등에 대해 지침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총괄계획가 운영방안(안)]
○ 정의: 지역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해 지역의 농촌지역개발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
○ 업무범위: 지역의 농촌지역개발사업관련 정책 및 사업
○ 자격기준: 총괄계획가와 동일
단, 시범사업지구(지자체) 선발(면접) 시 지자체 심사추가(지역총괄계획가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할지, 전담인력은 어떻게 배치할지 등에 대한 심사 필요)
○ 보수기준: 총괄계획가와 동일
○ 운영기간: 2년
○ 인력구성: 지역총괄계획가 1인, 지역실무계획가 최대 2인까지 구성
○ 역할(연차별 단계별 운영)
· 1차년도: 지자체 전담인력지원 구축, 현재 추진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파악 및 자문, 차년도 신규사업 준비
· 2차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파악 및 자문, 차년도 신규사업 준비, 지역의 농촌지역개발사업 파악 및 공간정책·전략마련, 농촌지역개발관련 사업 등을 총괄·조정(타 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관리 추진) 등

제4절 사업추진과정

1. 기획제안서 제출방식 개선

○ 예비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역자원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검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짧은 기간 내에 2인의 인력으로 기획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자 선정 시 총괄계획가가 제시한 기획제안결과를 토대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제안이 늦어지면 과업발주가 지연되어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개선사항) 기획제안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부분 지침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제4절 시범지구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2-4-1 (사업 기획제안)
④ 기획제안은 추진사업의 과업범위 및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초안 등을 포함한다.
⑦ 총괄계획가는 지역주민과 다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제안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기획제안서는 총괄계획가 위촉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수립자 선정과정 개선

○ 기본계획수립자가 선정된 후 총괄계획가가 선정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총괄계획가가 기획제안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우며, 기본계획수립을 총괄·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부실한 계획수립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또한, 기본계획수립자의 선정 시 총괄계획가가 계약방식, 선정 등의 권한을 강조할 경우 지자체 및 일괄수탁을 담당한 농어촌공사에서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갈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 (개선사항) 우수한 기본계획수립자 선정은 계획의 질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계획가가 발주방식검토 및 업체 선정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의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기본계획수립자 선정 시 총괄계획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2-4-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계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총괄계획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3-4-2 총괄계획가의 기본역할은 다음과 같다.
③ 기본계획 발주방식·과업지시서 검토 및 최종승인, 용역수행주체 선정과정 참여
④ 역량강화사업의 시기 및 내용 검토, 발주방식·과업지시서 검토 및 최종승인, 용역수행주체 선정과정 참여
3-7-2 시장·구청·구청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⑨ 계획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결정에 있어 총괄계획가의 의견을 수용하며, 용역주체 선정과정에 총괄계획가 등을 적극 참여시킨다.

3. 기본계획 승인절차 개선[3)]

○ 시범지구의 기본계획 승인은 시·군청장이 심의하고 시·도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이 자칫 부족한 결과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도의 의견과 상충될 경우 사후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3)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본계획승인절차를 시·도→시·군으로 변경할 예정임

○ (개선사항) 시범지구에 한해 기본계획은 시·도지사와 기본계획안을 사전협의하고, 시·군·구청장이 심의·승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제3절 추진절차
2-3-7 (시범사업 기본계획 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계획가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시·도지사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총괄계획가 활동횟수 및 보수기준 개선

○ 현재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월 8회로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상황에 맞지 않은 실정이다.
○ (개선사항) 총괄계획가 보수지급 구분 명확화, 총괄계획가 활동횟수는 5회로 제시하되 최대지급가능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개정(안)]
제5절 보수기준
3-5-1 (공통사항) ⑤ 총괄계획가 및 실무계획가의 보수는 자문, 회의참석 등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 적정업무량은 자문 등 각 월 5회를 권장한다. 단, 보수는 월 8회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사항: 2차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지구 활동사항 내역(2013.10.17 기준)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문	회의	자문	회의	자문	회의	자문	회의	자문	회의	자문	회의	자문	회의	자문	회의
월평균자문	5	1	5	0	4	1	4	1	4	1	5	0	3	0	4	1

[활동내역근거 제출서류 양식(안)]

○○읍면(권역) 총괄계획가 활동내역
■ 개요 -일시, 장소, 참석자
■ 주요 활동내용 -회의 및 자문내용
■ 활동사진

※ 회의록 첨부, 단 활동내역서는 참여 일자별로 작성하여 시범사업 홈페이지 제출

5. 사업추진과정 관리강화

○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은 매월 총괄계획가가 제출하는 보수 관련 증빙자료와 조정자문위원의 현장방문 모니터링 외에 사업추진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절차 및 수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개선사항) 지자체는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정리한 월간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서 사업추진일정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서 시범사업 간 진행과정, 문제해결 과정 등의 정보제공기능 마련이 필요하다.

[월간추진실적보고서(예시)]
1. 사업 추진현황 진행사항 체크
2. 사업관련 추진실적(당월에 실시한 각종 회의와 각종행사 기재)
3. 사업추진상의 건의 및 기타사항(시범사업 추진기간 동안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성과, 컨트롤타워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 작성)

회 의 명(실무진회의, 추진협의회 등)	
■ 개요 -일시, 장소, 참석자	
■ 주요 안건	■ 논의 결과
사진 1	사진2

6.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운영주체가 부재하고 시기와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개선사항) 모니터링은 시범사업의 추진과정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방법 마련을 통한 효율적 사업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안)]

○ 목적: 모니터링은 시범사업의 추진과정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의 개선방안 제시

○ 시기: 사업추진단계별 1회

○ 방법: 자료조사(월별 사업추진실적보고서), 현장조사

○ 참석자: (현장조사의 경우)지자체담당자,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기본계획 수립자, 권역별 담당 조정자문위원, 컨트롤타워 등

○ 내용: 지침에 수록된 체크리스트와 점검기준 활용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및 제출

·1차 현장 모니터링 평가지표(안)

기준	지표
기획제안 협의 유무	기획제안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였는지
발주방식 합리성	용역발주방식이 합리적이고 적합한지
과업지시서의 합리성	발주시 과업지시서 내용이 기획제안의도가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협의회 구성유무	추진협의회 구성이 됐는지
추진협의회 구성 적정성	추진협의회 구성인력이 기획제안에 부합한지
지자체 역할의 충실성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는지

·2차 현장 모니터링 평가지표(안)

기준	지표
입찰업체 제안서 평가 참여유무	용역업체 선정 시 총괄계획가가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였는지
기본계획수립의 적절성	상위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지, 합리적인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이 설정되었는지,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분이 적절한지
유지관리 계획의 적절성	계획에 유지관리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유지관리계획 내용이 적절한지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협의회 운영의 충실성	각 참여주체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추진협의회 운영이 활발한지
지자체 역할의 충실성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는지
사업추진과정 기록의 충실성	추진과정 상의 기록여부 및 기록물 내용이 충실한지
네트워킹 협력 충실성	사업추진 주체의 구성 및 참여가 활발한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합리적 의견수렴	주민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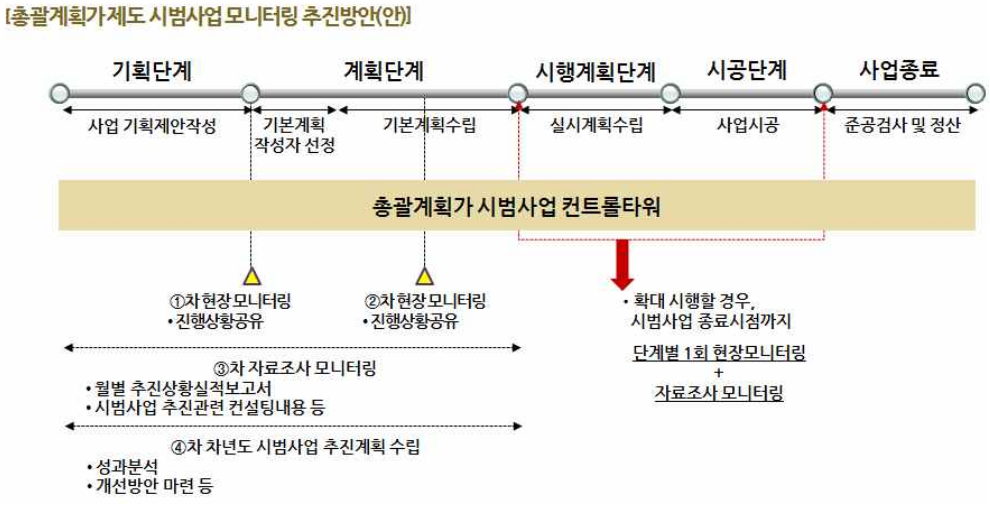

<그림 4-3>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안)

7. 교육 및 워크숍

○ 총괄계획가 선정 후 개최된 교육내용은 일반적인 이론교육에 치우치고, 워크숍의 경우 단기개최로 인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공유 시간이 충분치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생산적인 효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 (개선사항) 시범사업 및 총괄계획가 선정 후[4]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시범사업 단계별로 각 주체별 역할과 검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추진 독려, 시범사업 질의응답 시간 마련하여 총괄계획가 및 지자체 소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예비총괄계획가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은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인된 교육과 연계(ex: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농어촌지역개발관련 '농어촌개발컨설턴트' 교육 등)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 선정된 총괄계획가에 한하여 선정 후의 교육과정에 관하여만 기술하고자 한다.

8. 시범사업 정보교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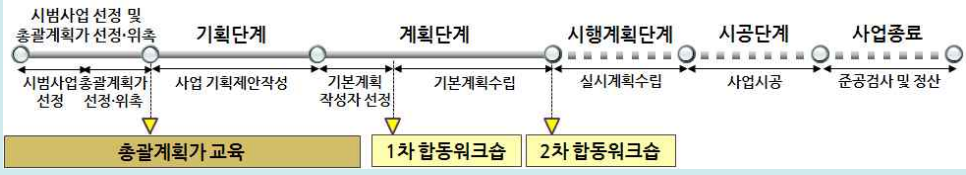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안)]

○ 목적: 총괄계획가 제도 이해도 증진 도모,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 개최시기 및 기간: 1월 초, 2박 3일

○ 참석자: 농식품부, 지자체담당자,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조정자문위원, 컨트롤타워, 시범지구 추진위원장 등

○ 워크숍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개발 정책방향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내용 및 기준, 기본계획수립절차상 유의사항,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행정사항, 계약관련 요령, 관련법률 등)
- 총괄계획가 제도 업무지침
  - 시범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에 따른 주체별 역할 등
- 리더로서 사업주체자(지자체, 기본계획수립자, 지역주민 등) 등을 대상으로 소통방법 및 자세에 관한 학습
- 읍면, 또는 권역단위사업에 대한 사례발표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한 사업이해
- 시범사업별 추진계획 분임논의 등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합동워크숍(안)]

○ 개최횟수 및 기간: 2회, 1박 2일

○ 참석자: 농식품부, 지자체담당자,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조정자문위원, 컨트롤타워 등

○ 워크숍 주요내용

- 1차 합동워크숍
  - 목적: 사업지구 상호간 추진상황 발표 및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마을개발 지원
  - 주요내용: 사업단계별 추진상황 발표(지자체, 총괄계획가 각각 발표), 당해 읍면 또는 권역의 사업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논의 등
- 2차 합동워크숍
  - 목적: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운영결과 발표 및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례를 서로 논의함으로써, 차년도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시범사업 추진과정 및 사례 최종발표(지자체, 총괄계획가 각각 발표),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성과 및 한계, 총괄계획가 제도의 문제점 및 차년도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

○ 시범사업 운영실태 분석 결과, 사업추진 초기 지자체와 기본계획수립자, 지역주민 등이 총괄계획가 제도취지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범사업 추진과정 상 주체별 역할인식 부족으로 참여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총괄계획가의 역량에 따라 사업진도 및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총괄계획가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총괄계획가와 지자체는 시범사업별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과정 상의 어려움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나 워크숍이 아닌 이상 의사소통방법이 부재하였다.

○ (개선사항) 총괄계획가제도 홍보 및 행정지원, 의사소통 장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커뮤니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 상에는 시범사업 공모 및 지정 관련 자료, 선정된 사업 주요내용, 시범사업 추진내용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료등재, 추진실적 보고서 등재, 질의응답 컨텐츠 마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진행하고 사업 참여주체의 사업이해도 제고 및 소통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커뮤니티)구축 사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홈페이지 운영 사례

· 시범사업의 지원, 평가, 선정 및 질의응답 등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 구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 마을카페 사례

· 공공, 해당주민, 전문가(MP,실무자)가 서로 정보제공 및 의견교류 장소로서 온라인 카페 개설. 다양한 정보 공유 및 토론장소로 활용

인터넷 마을카페 메뉴 사례

기본메뉴	
공지사항	공식일정 또는 행사 공지 - 실무워크숍 또는 주민워크숍 / 일정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내용 등
출석체크/가입인사	카페 출석체크, 신규가입자 인사
마을만들기 이해 돕기	
마을만들기란?	마을만들기 개요와 취지 / 마을만들기와 지구단위계획 ⇒ 주민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으로 간략히
마을만들기 좋은 사례	담장허물기, 그린피킹, 한 평 공원만들기, 생태마을조성, 환경친화마을 등 전국 각지 그리고 외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 수법, 선진사례 소개 ⇒ 간단한 멘트와 사진 위주
마을 이야기	
마을 소개	마을의 유래, 마을 또는 주변지역과 관계된 역사적 스토리, 관련계획
마을 소식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세요! 예) 우리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 마을 누구누구 집에 3년 만에 사과꽃이 폈어요. 우리 마을에 가장 오래 살고 계신 할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등등
마을 자랑거리	자랑하고 싶은 마을의 좋은 점,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마음껏 올려주세요. 예) 우리 마을은 이러이러해서 정말 좋아요. 우리 마을은 꽃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등등
마을만들기 워크숍	
워크숍 자료실	마을만들기를 위해 실시하는 실무워크숍 또는 주민워크숍 관련 자료 공개 ⇒ 주민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으로 간략히
워크숍 사진	마을만들기를 위해 애쓰는 주민들, 공무원들, 실무자들, 학생들의 고생하는 모습, 즐거운 모습 공개
워크숍 결과보고	해당 워크숍 종료 후,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여 공개 ⇒ 주민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모으기	
궁금합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올려주세요.
건의할게요!	마을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 개선사항, 제안사항 등 의견을 올려주세요.

9.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지자체 및 총괄계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 (개선사항) 시범사업추진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 매년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장관상 수여) 및 해외선진사례 견학기회 부여
- 신규사업 선정 시 유사사업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우선선정)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2012,「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업무지침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4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2012 AURI 건축도시포럼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포럼자료
4. 김정섭, 2002, 유럽의 농촌발전전략과 LEADER 프로그램, 농정연구센터 논집, 제2호, 63-111
5. 농림수산식품부, 2012, 총괄계획가 시범지구 활동결과 보고회 자료
6.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어촌지역의 계획적·통합적 개발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합동 워크숍 교재
7. 농림축산식품부, 2013, 시범사업 분석을 통한 2013년도 총괄계획가 제도 확대 운영계획(안)
8. 사)한국농촌계획학회, (사)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13, 농촌활력화 동력으로서 농촌리모델링, 2013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9.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 2010년 추진계획(안)
10. 문전성시사업단, 2012, 문전성시 컨설팅보고서 2008-2012
11. 서수정, 김영현, 조시은, 이언화, 류현숙, 정지범, 2012,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2. 염철호, 오주형, 차미희, 조은경, 2012,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리·운영·평가 및 개선연구, 국토해양부
13. 염철호, 오주형, 차미희, 2012, 2011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례집, 국토해양부
14. 조성룡, 김경완, 김동희, 강상영, 노윤선, 2011, 지자체 공공디자인 추진시 고려사항 연구, 행정안전부
15. 조준배, 임현성, 서수정, 권미주, 2008, 영주시 공공건축 통합 계획,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6. European Co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7, Fact sheet: The Leader approach - a basic guide
17. LAG Altmuehl-Jura, 2008, Regionales Entwicklungskonzept Naturpark- und Welterberegion Altmuehl-Jura
18. LEADER Tool-kit : http://enrd.ec.europa.eu/leader/leader/leader-tool-kit/en/index_en.cfm

부록1 총괄계획가 지원 제출서류-①총괄계획가 이력카드

<table>
<tr><td colspan="2">*위촉명*</td><td colspan="5">농어촌 지역개발 총괄계획가(신청지구 :)</td></tr>
<tr><td colspan="2" rowspan="4">사 진</td><td rowspan="2">성명</td><td>한글</td><td></td><td>나이(만)</td><td></td></tr>
<tr><td>한자</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현주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E-mail</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직 업
(직장명)</td><td colspan="2"></td><td>가 족 사 항</td><td colspan="2">기혼( ), 미혼( )</td></tr>
<tr><td colspan="2">직장 주소</td><td colspan="2"></td><td>연 락 처
(전 화)</td><td colspan="2">자택:
직장:
H.P):</td></tr>
<tr><td rowspan="5">학
력</td><td>기 간</td><td colspan="2">학 교 명</td><td>전공학과</td><td colspan="2">학위</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경
력</td><td>기 간</td><td colspan="2">부 서 및 직 위</td><td>직 급</td><td colspan="2">비 고</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 .~ . .</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상훈</td><td>수상일자</td><td colspan="2">상훈명</td><td>시행처</td><td colspan="2">비고</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td></tr>
</table>

부록1 **총괄계획가 지원 제출서류-②지원소견서**

총괄계획가 지원에 대한 소견서

1 (주제 1) 시범사업지구에 대하여 귀하께서 선정되어야 하는 사유는?

2 (주제 2) 귀하께서 신청한 사업지구에 총괄계획가로 위촉시 어떻게 당해 지구를 개발할 계획이신지?

3 (주제 3) 총괄계획가로 시범사업지구에 매월 참여 가능한 일수는?

○ 3일이만/월( ), 5일미만/월( ), 7일미만/월( ), 9일미만/월( ), 9일 이상방문( )

4 (주제 4) 실무계획가(총괄계획가 보조자) 운용계획은?

부록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1,2차 모니터링 조사표-①총괄계획가

Ⅰ.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3년 월 일 : ~ :	지구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참석자			

Ⅱ. 조사내용

- 본 권역사업에서 총괄계획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어떻게 본 사업을 끌고 나갈 계획이셨습니까?

- 총괄계획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지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되지 못하였다
  ⑤ 매우 도움되지 못하였다
  → ④,⑤번에 한해,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총괄계획가의 입장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면담횟수: 회)
  ① 매우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낮다
  -지자체 (면담횟수: 회)
  ① 매우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낮다

- 예비계획서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이 권역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② 적절하지 않다.
  → 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한 권역의 장기발전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비계획서의 내용과 사업비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합리적이다.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② 합리적이지 않다.
  → 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비계획서에서 대상지 자원발굴은 권역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② 적절하지 못하다.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까?
① 현장조사 수행(횟수: 회)
② 주민면담(횟수: 회)
③ 현장조사(횟수: 회)+주민면담(횟수: 회)
④ 기타

- 예비계획서가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 등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
② 연계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 및 작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① 예비계획서 내용으로 보완
② 지자체담당자 면담으로 보완(부서: ,횟수: 회)
③ 예비계획서내용+군담당자 면담으로 보완
④ 기타

- 예비계획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반영되었다 ② 잘 반영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반영되지 못하였다
⑤ 매우 반영되지 못하였다
→ ④,⑤번에 한해, 향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 예비계획서에서 유지관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고려하였다 ② 잘 고려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고려하지 못하였다
⑤ 매우 고려하지 못하였다
→ ④,⑤번에 한해,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 예비계획서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제안서는 작성하였습니까?
① 예
→ 예비계획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보완작업으로서의 기획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보완내용은 무엇입니까?
② 아니오
→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까?
① 예
→ 누구를 대상으로 발표하였습니까?
( )

② 아니오

→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기획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작업을 지원하였습니까?

① 지원했다

→ 지원했다면, 과업지시서의 작성시기 및 작성지원을 위한 회의는 개최하였습니까?

–작성시기:

–회의횟수:

–내용:

② 지원하지 않았다

- 사업의 성격에 합당한 업체선정 발주방식에 대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였습니까?

① 협의하였다

→ 협의하였다면, 누구와 몇 번이나 개최하였습니까?

–협의주체:

–협의횟수:

–내용:

② 협의하지 않았다

(이유:)

- 용역업체는 정해졌습니까?

① 정해졌다

② 정해지지 않았다

→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발주는 나갔습니까?

① 나갔다

② 나가지 않았다

→ 나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추진협의회는 구성되었습니까?

① 예(구성시기: , 총인원수: 명)

→ 구성되었다면, 구성현황은?

–시의원: 명

–전문가: 명

–공무원: 명

–주민 : 명

-기타 : 명 ② 아니오
• 추진협의회 발족이후, 총괄계획가는 추진협의회와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까? ( )회
• 추진협의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예(운영횟수: 회) ② 아니오 →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실무계획가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부록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1,2차 모니터링 조사표-②시범사업 지역주민

Ⅰ.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3년 월 일 : ~ :
지구명	
조사대상자	

Ⅱ. 조사내용

- 사업에 대한 설명(취지,목표,내용 등)을 공식적(회의 등)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습니까?
  ① 총괄계획가 ② 지자체공무원 ③ 용역업체 ④ 마을이장 ⑤ 기타( )
  ② 아니오
- 공식적으로 마을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이나 소득증대 등의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누구와 협의하였습니까?
  ( )
  ② 아니오
-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누구와 얘기하였습니까?
  ( )
  ② 아니오
- 몇몇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들은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
  ② 아니오
- 색깔있는마을만들기 현장포럼이나 여타 사업을 통해서 주민역량 강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기타사업을 수행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사업명: 사업개수: 개)
  ② 아니오

• 총괄계획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총괄계획가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 어떠한 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아니오 →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총괄계획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사업추진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1,2차 모니터링 조사표-③지자체공무원

Ⅰ.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3년 월 일 : ~ :
담당지구명	
조사대상자	시/군 과

Ⅱ. 조사내용

- 권역사업/읍면소재지사업 등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① 예
  -과이름:
  -구성인원: 명
  -업무내용:
  ② 아니오

- 사업에 대한 지자체 장의 열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교육횟수: 회/년)
  ② 아니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기간: 년 개월
  -업무내용:
  ② 없다

- 올해 총괄계획가와의 협의는 몇 회 진행되었습니까?
  ( )회

- 올해 총괄계획가와의 협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전화통화 ② 회의 ③ 공문 ④ e-mail ⑤ 기타(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행 시 총괄계획가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 된다 ② 도움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 되지 않는다
  ⑤ 매우 도움 되지 않는다
  → ①,②,③ 번에 한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④,⑤번에 한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행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① 지역역량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계획수립이 어려움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범위 및 내용 등이 어려움 ③ 추진매뉴얼(사업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움 ④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움 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와 총괄부서 간 역할 및 협력미흡 ⑥ 주민의견수렴의 어려움 ⑦ 기타 ( )
• 총괄계획가가 사업수행 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주기를 바라십니까?
• 총괄계획가 제도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부록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1,2차 모니터링 조사표-④계획수립자

Ⅰ.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3년 월 일 : ~ :
담당지구명	
조사대상자	

Ⅱ. 조사내용

- 올해 총괄계획가, 지자체담당공무원, 주민 등과의 협의는 총 몇 회 진행되었습니까?
  ( )회
  → 이 중, 총괄계획가+지자체담당공무원+주민과 동시에 만난 적은 몇 회입니까?
  ( )회
  → 어느 시점에서 만나셨습니까?
  ① 공청회 ② 착수보고회 ③ 기타( )
- 올해 총괄계획가와의 협의는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전화통화 ② 회의 ③ 공문 ④ e-mail ⑤ 기타( )
- 기본계획 수립 시 총괄계획가 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 된다 ② 도움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 되지 않는다
  ⑤ 매우 도움 되지 않는다
  → ①,②,③ 번에 한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④,⑤번에 한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본계획 수립 시에 총괄계획가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① 예
  →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② 아니오
- 총괄계획가가 기본계획 수립 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 주기를 바라십니까?
- 총괄계획가 제도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부록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1,2차 모니터링 조사표-⑤지역총괄계획가

Ⅰ.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3년 월 일 : ~
해당사업지구	
참석자	

Ⅱ. 조사내용

- 지역총괄계획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차년도에는 총괄계획가로, 2차년도에는 지역총괄계획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괄계획가와 지역총괄계획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총괄계획가로 위촉된 후 활동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지역총괄계획가 업무수행 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지역총괄계획가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① 매우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낮다

  -지자체

  ① 매우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낮다
- 실무계획가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부록3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설문조사지-①총괄계획가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총괄계획가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

1. (사업)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비계획 수립 전
② 기본계획 수립 전
③ 실시계획 수립 전
④ 기타( )

2. 바람직한 (사업)총괄계획가 활동기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비계획서 수립 단계까지만
②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까지만
③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까지만
④ 전체 사업기간 동안(예비계획단계~준공단계)
⑤ 기타( )

3. 총괄계획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주민역량이 부족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음
② 사업절차 및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③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④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역할 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음
⑤ 총괄계획가를 지원해 주는 조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⑥ 지자체의 협조(행정, 법적 검토)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⑦ 기타 ( )

4. 1개 사업당, (사업)총괄계획가의 적정 구성인원(실무계획가 포함하여 산정)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4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4-1. 1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업무추진 용이 ② 인건비절감 ③ 전문식견의 신속한 의견반영

④ 기타( )

4-2. 1인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전문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4-3. 1인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분야의 경력(현장경력)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7년 ④ 7년-9년 ⑤ 9년 이상

※4번 문항에서 ②,③,④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4-4. 2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독단적 의견반영 방지

②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③ 행정적 지원 필요

④기타( )

4-5. 2인 이상으로 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5. 바람직한 (사업)총괄계획가의 선정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해당 지자체 위촉(현행)

②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

③ 해당 지자체 선정 및 위촉

④ 기타( )

6. (사업)총괄계획가의 업무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6-1. (업무형태) ① 상근직 ② 비상근(현 체제) ③ 기타( )

6-2. (활동빈도수) ① 월 2회 ② 월 4회 ③ 월 6회 ④ 월 8회 ⑤ 기타( )

7. (사업)총괄계획가의 1회 활동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재 활동비 유지 ② 개선필요

※7번 문항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7-1.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활동비(자문비, 회의비) 구분이 모호

② 기타 ( )

8. (사업)총괄계획가의 적정한 자격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업무지침(3-3-1)

제3절 총괄계획가 자격 및 운영기간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②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① 현재 자격조건 유지

② 기타( )

<실무계획가>

9. 실무계획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9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9-1. **실무계획가의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행정업무보좌

②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③ 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④ 기타( )

10. 실무계획가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 )

① 도시공학(도시계획, 설계 등)　② 농학(농촌계획, 농업경제 및 경영 등)

③ 건축공학　④ 조경학　⑤ 기타( )

11. 실무계획가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해보았거나 참여한 현장 경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 ( )

① 없음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이상

12. 업무지침 상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별도의 자격조건이 없는 현 체제로 되어야 함

② 자격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12번 문항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2-1.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은? ( )

① 총괄계획가와 동일

② 농어촌 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실무경력(현장경험)이 있는 자

③ 기타 ( )

▣ 시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운영사항

<사업 기획제안단계>

13. 기획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 ( )

① 어려움이 있었다. ② 어려움이 없었다.

※13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3-1. 어떠한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 )

① 기획제안서 내용구성방법 ② 짧은 기획제안서 작성 소요시간

③ 지역현황 파악 ④ 기타( )

14. 기획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 ····· ( )

① 3일 이내 ② 7일 이내 ③ 2주일 ④ 1개월 ⑤ 2개월

⑥ 기타( )

15. 기획제안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비계획서 검토 후 사업방향만 제시

② 예비계획서 검토 후 사업방향 제시 및 사업내용 일부 변경

③ 향후 사업지역에 대한 총괄계획가의 계획(일정, 회의방식, 발주방식 등)제시

④ 기타( )

16. 기획제안서가 언제쯤 작성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비계획서 수립전 ② 예비계획서 수립후 ③ 기본계획 수립전
④ 기타( )

<기본계획 작성자의 선정>

17. 기본계획, 경관계획, 지역역량강화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3일 ② 1주일 ③ 2주일 ④ 3주일 ⑤ 한달 ⑥ 기타( )

18. 지자체에서는 총괄계획가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문을 반영하셨습니까? ····· ( )

① 모두 반영 ② 발주방식만 반영 ③ 과업지시서 자문만 반영 ④ 반영 못함

※18번 문항에서 ②,③,④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8-1. 일부반영 또는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x: 행정적 절차, 새로운 아이디어제시로 인한 부담, 책임소재 등

19. 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 제안평가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까? ····· ( )

① 참여 ② 미참여(사유:)

<기본계획수립 단계>

20. 기본계획수립

20-1. 총괄계획가께서는 기본계획단계에서 회의에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
① 거의 모든 회의(주민, 지자체 협의 포함) 참석
②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정도만 참석
③ 기타( )

20-2. 회의진행 시 항시 참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 지자체 ② 기본계획수립자(H/W, S/W, 경관계획) ③ 지역주민
④ 외부전문가 ⑤ 추진협의회 ⑥ 기타( )

20-3. 회의진행시 총괄계획가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① 사업주체간 갈등조정
② 행정 및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
③ 회의록 작성
④ 계획수립 내용 보완 및 조정
⑤ 다양한 주체(주민, 지자체, 계획수립자 등) 의견 수렴 및
⑥ 기타 ( )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기타 개선사항>

21.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21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21-1.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 1회
② 분기별 1회
③ 사업단계별 1회
④ 기타( )

22.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22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22-1.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에 총괄계획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포함되어야 한다
(사유:)
② 포함되지 말아야한다
(사유:)

23. 조정자문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시범사업 사업추진 주체 간 분쟁발생시 조정역할
② 기본계획수립 시 조정자문위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자문
③ 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
④ 기타( )

<표 1> 2013년도 총괄계획가 관련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지역개발총괄계획가 교육(2013.2.20~23)	총괄계획가 합동워크숍(2013.3.13)
◦ 농어촌지역개발 정책방향 ◦ 총괄계획가제도 도입취지 ◦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 총괄계획가 활동사례 ◦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 ◦ 지역역량강화 추진방향 ◦ 갈등의 이해와 관리 ◦ 퍼실리테이터 기법 ◦ 계획수립방향토론 ◦ 계획수립기법 ◦ 통섭의 리더쉽	◦ 농산어촌지역개발 정책방향 ◦ 총괄계획가 제도 운용에 따른 주체별 역할 및 추진업무 설명 ◦ 총괄계획가와 지자체 등의 업무추진절차에 대한 설명 ◦ 2012년 총괄계획가 운용사례 발표
	총괄계획가 합동워크숍(2013.10.24~25)
	◦ 2013년 총괄계획가 활동성과 ◦ 현장에서 바라본 총괄계획가 제도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방향 분임토의

24. 총괄계획가 교육 및 워크숍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5. 향후, 총괄계획가 교육 시 추가되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26.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의견공유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6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26-1. 의견공유창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온라인 커뮤니티(홈페이지, 블로그 등)
② 유선전화
③ e-mail
④ 정기적인 회의
⑤ 컨트롤 타워 자문
⑥ 기타( )

27. 향후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둔다면 컨트롤 타워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사업 발주방식에 대한 지원 및 자문(기본계획, SW, 경관계획 수립 발주 등)
②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자문(기본계획단계의 내용 수준범위 등)
③ 총괄계획가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제공
④ 백서 발간
⑤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⑥ 지속적인 워크샵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⑦ 총괄계획가 교육
⑧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
⑨ 기타( )

28.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다음은 설문 응답자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 ( )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2. 귀하의 직장 및 소속기관은 무엇입니까? ····· ( )

① 학계(대학교, 교육기관) ② 연구소 ③ 공공기관(공무원, 공사)
④ 민간기업 ⑤ 기타( )

3.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 )

① 도시공학(도시계획, 설계 등) ② 농학(농촌계획, 농업경제 및 경영 등)
③ 건축공학 ④ 조경학 ⑤ 기타( )

4. 귀하의 농촌지역개발관련 경험기간은? ····· (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7년 ④ 7년-9년 ⑤ 9년 이상

부록3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설문조사지-②지자체담당자(총괄계획가 시범사업)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총괄계획가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의 효과성

1.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지역특성 및 관련사업 연계 등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② 사업추진 기간단축
③ 사업주체(지자체,기본계획수립자,주민)간 갈등조정
④ 다양한 주체(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참여기회 확대
⑤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가능
⑥ 기타( )

2.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단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기존(총괄계획가 도입 전) 기본계획과 차이 없음
② 사업추진 기간연장
③ 사업주체(지자체,기본계획수립자,주민)간 갈등확대
④ 기타( )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

3. 적절한 (사업)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비계획 수립 전
② 기본계획 수립 전
③ 실시계획 수립 전
④ 기타( )

4. 바람직한 (사업)총괄계획가 활동기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비계획서 수립 단계까지만
②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까지만
③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까지만
④ 전체 사업기간 동안(예비계획단계~준공단계)
⑤ 기타( )

5. 1개 사업당, (사업)총괄계획가의 적정 구성인원(실무계획가를 포함한 인원산정)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5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5-1. 1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업무추진 용이 ② 인건비절감 ③ 전문식견의 신속한 의견반영
④ 기타( )

5-2. 1인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전문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5-3. 1인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분야의 경력(현장경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7년 ④ 7년-9년 ⑤ 9년 이상

※5번 문항에서 ②,③,④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5-4. 2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독단적 의견반영 방지
②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③ 기타( )

5-5. 2인 이상으로 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5-6. 2인 이상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분야의 경력(현장경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7년 ④ 7년-9년 ⑤ 9년 이상

6. (사업)총괄계획가의 적정한 자격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업무지침(3-3-1)
제3절 총괄계획가 자격 및 운영기간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②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① 현재 자격조건 유지
② 기타( )

7. 바람직한 (사업)총괄계획가의 선정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해당 지자체 위촉(현행)
②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
③ 해당 지자체 선정 및 위촉
④ 기타( )

8. (사업)총괄계획가의 업무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1. (업무형태) ① 상근직 ② 비상근(현 체제) ③ 기타( )
8-2. (활동빈도수) ① 월 2회 ② 월 4회 ③ 월 6회 ④ 월 8회
⑤ 기타( )

9. (사업)총괄계획가의 1회 활동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재 활동비 유지 ② 개선필요

※9번 문항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9-1.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활동비(자문비, 회의비) 구분이 모호
② 기타 ( )

<실무계획가>

10. 실무계획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10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0-1. 실무계획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행정업무보좌
②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③ 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④ 기타( )

11. 귀하의 지자체는 실무계획가를 어떠한 역할을 위해 위촉하셨습니까? ····· ( )

① 총괄계획가의 행정업무보좌
②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③ 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④ 기타(

12. 귀하의 지자체는 누구의 추천을 받아 실무계획가를 위촉하셨습니까? ····· ( )

① 총괄계획가 추천
② 주변 전문가의 추천
③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서
④ 기타( )

13. 업무지침 상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 체제유지(별도의 자격조건없음)
② 별도의 자격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13번 문항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3-1.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은? ( )
① 총괄계획가와 동일
② 농어촌 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실무경력(현장경험)이 있는 자
③ 기타 ( )

14.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14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4-1.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에 총괄계획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포함되어야 한다
(사유:)
② 포함되지 말아야한다
(사유:)

▣ 시범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운영사항

<사업 기획제안>

15. 기획제안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예비계획서 검토 후 사업방향만 제시
② 예비계획서 검토 후 사업방향 제시 및 사업내용 일부 변경
③ 기타( )

16. 총괄계획가가 기획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3일 이내 ② 7일 이내 ③ 2주일 ④ 1개월 ⑤ 2개월
⑥ 기타( )

17. 기획제안서

17-1. 총괄계획가는 누구에게 기획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까? ( )
① 지자체담당자 ② 시장·군수·구청장 ③ 주민 ④ 기타( )
17-2. 총괄계획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까? ( )
① 공문 ② e-mail ③ 발표(보고회) ④ 기타( )

<기본계획 작성자의 선정>

18. 지자체에서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는데 걸린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① 3일 ② 1주일 ③ 2주일 ④ 3주일 ⑤ 한달 ⑥ 기타( )

19. 지자체에서는 총괄계획가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문을 반영하셨습니까? …… ( )

① 모두 반영 ② 발주방식만 반영 ③ 과업지시서 자문만 반영 ④ 반영 못함

※19번 문항에서 ②,③,④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9-1. 일부반영 또는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기본계획수립>

20. 기본계획수립

20-1. 담당자께서는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월 몇 회나 회의에 참여하셨습니까?

① 모두 참석 ② 격주로 ③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정도만

④ 기타( )

20-2. 회의진행 시 항시 참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 지자체 ② 기본계획수립자(H/W, S/W, 경관계획) ③ 지역주민

④ 외부전문가 ⑤ 추진협의회 ⑥ 기타( )

20-3. 회의 참석 시 지자체담당자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견 청취 ② 행정 및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 ③ 회의록 작성

④ 기타 ( )

<총괄계획가 만족 및 제도 개선사항>

21.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1번 문항에서 ④,⑤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21-1. 불만족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행정절차 및 내용관련 사항, 총괄계획가 업무 및 태도 등에 대한 사항, 총괄계획가 시범사업관련 워크숍 및 교육에 대한 사항 등

22.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의견공유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2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22-1. 의견공유창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온라인 커뮤니티(홈페이지, 블로그 등)
② 유선전화
③ e-mail
④ 정기적인 회의
⑤ 컨트롤 타워 자문
⑥ 기타(　　)

23. 향후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둔다면 컨트롤 타워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① 사업 발주방식에 대한 지원 및 자문(기본계획, SW, 경관계획 수립 발주 등)
②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자문(기본계획단계의 내용 수준범위 등)
③ 총괄계획가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제공
④ 백서 발간
⑤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⑥ 지속적인 워크샵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⑦ 총괄계획가 교육
⑧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
⑨ 기타(　　)

24.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

※24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24-1.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월 1회
② 분기별 1회
③ 사업단계별 1회
④ 기타(　　)

25.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총괄계획가 제도를 활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② 없다
(사유:)

26.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일반사항

• 소속	시(군) 과(팀)
• 담당업무	
• 농어촌지역개발 업무관련담당기간	약 ( )년 ( )개월

부록3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설문조사지-③지역총괄계획가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총괄계획가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778)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

1. 지역총괄계획가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주민역량이 부족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음
② 사업절차 및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③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④ 총괄계획가의 지위 및 역할 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음
⑤ 총괄계획가를 지원해 주는 조직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⑥ 지자체의 협조(행정지원, 법적검토 등)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⑦ 기타 ( )

2.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3.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활동기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기타( )

4. 1개 시·군당, 지역총괄계획가(실무계획가 포함)의 적정 구성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4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4-1. 1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업무추진 용이 ② 인건비절감 ③ 전문식견의 신속한 의견반영

④ 기타( )

4-2. 1인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전문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4-3. 1인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분야의 경력(현장경력)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7년 ④ 7년-9년 ⑤ 9년 이상

※4번 문항에서 ②,③,④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4-4. 2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독단적 의견반영 방지

②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③ 행정적 지원 필요

④기타( )

4-5. 2인 이상으로 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5.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의 선정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해당 지자체 위촉(현행)

②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

③ 해당 지자체 선정 및 위촉

④ 기타( )

6.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6-1. (업무형태) ① 상근직 ② 비상근(현 체제) ③ 기타( )

6-2. (활동빈도수) ① 월 2회 ② 월 4회 ③ 월 6회 ④ 월 8회 ⑤ 기타( )

7. 지역총괄계획가의 1회 활동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재 활동비 유지 ② 개선필요

※7번 문항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7-1.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활동비(자문비, 회의비) 구분이 모호

② 기타 ( )

8. 지역총괄계획가의 적정한 자격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업무지침(3-3-1)
제3절 총괄계획가 자격 및 운영기간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②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① 현재 자격조건 유지
② 기타( )

9. 지역총괄계획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시 · 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 자문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별단위)신청 및 관리
③ 포괄보조 5개년 사업 총괄 관리
④ 타 부처와 연계사업 발굴 및 관리
⑤ 기타( )

<실무계획가>

10. 실무계획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10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0-1. 실무계획가의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행정업무보좌
②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③ 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④ 기타( )

11. 현재 위촉된 실무계획가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 )

① 도시공학(도시계획, 설계 등) ② 농학(농촌계획, 농업경제 및 경영 등)
③ 건축공학 ④ 조경학 ⑤ 기타( )

12. 실무계획가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해보았거나 참여한 현장 경력은 어느정도 됩니까? ····· ( )

① 없음 ② 2년 ③ 3년 ④ 4년 ⑤ 5년 이상

13. 업무지침 상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별도의 자격조건이 없는 현 체제로 되어야 함
② 자격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13번 문항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3-1.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은? ( )

① 총괄계획가와 동일
② 농어촌 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실무경력(현장경험)이 있는 자
③ 기타 ( )

▣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기타 개선사항

14.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14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4-1.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 1회
② 분기별 1회
③ 사업단계별 1회
④ 기타( )

15.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15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5-1.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에 총괄계획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포함되어야 한다
(사유:)
② 포함되지 말아야한다
(사유:)

16. 조정자문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시범사업 사업추진 주체 간 분쟁발생시 조정역할
② 기본계획수립 시 조정자문위원의 전공분야에 대한 자문
③ 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
④ 기타( )

<표 1> 2013년도 총괄계획가 관련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지역개발총괄계획가 교육(2013.2.20~23)	총괄계획가 합동워크숍(2013.3.13)
◦ 농어촌지역개발 정책방향 ◦ 총괄계획가제도 도입취지 ◦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 총괄계획가 활동사례 ◦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 ◦ 지역역량강화 추진방향 ◦ 갈등의 이해와 관리 ◦ 퍼실리테이터 기법 ◦ 계획수립방향토론 ◦ 계획수립기법 ◦ 통섭의 리더쉽	◦ 농산어촌지역개발 정책방향 ◦ 총괄계획가 제도 운용에 따른 주체별 역할 및 추진업무 설명 ◦ 총괄계획가와 지자체 등의 업무추진절차에 대한 설명 ◦ 2012년 총괄계획가 운용사례 발표
	총괄계획가 합동워크숍(2013.10.24~25)
	◦ 2013년 총괄계획가 활동성과 ◦ 현장에서 바라본 총괄계획가 제도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방향 분임토의

17. 총괄계획가 교육 및 워크숍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향후, 총괄계획가 교육 시 추가되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9.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의견공유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19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9-1. 의견공유창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온라인 커뮤니티(홈페이지, 블로그 등)
② 유선전화
③ e-mail
④ 정기적인 회의
⑤ 컨트롤 타워 자문
⑥ 기타(　　)

20. 향후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둔다면 컨트롤 타워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① 사업 발주방식에 대한 지원 및 자문(기본계획, SW, 경관계획 수립 발주 등)
②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자문(기본계획단계의 내용 수준범위 등)
③ 총괄계획가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제공
④ 백서 발간
⑤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⑥ 지속적인 워크샵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⑦ 총괄계획가 교육
⑧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
⑨ 기타(　　)

21.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일반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 (　　)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2. 귀하의 직장 및 소속기관은 무엇입니까? ····· ( )

① 학계(대학교, 교육기관)　② 연구소　③ 공공기관(공무원, 공사)

④ 민간기업　⑤ 기타( )

3.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 ( )

① 도시공학(도시계획, 설계 등)　② 농학(농촌계획, 농업경제 및 경영 등)

③ 건축공학　④ 조경학　⑤ 기타( )

4. 귀하의 농촌지역개발관련 경험기간은? ····· (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7년　④ 7년-9년　⑤ 9년 이상

부록3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설문조사지-④지자체담당자[지역총괄계획가 시범사업]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총괄계획가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자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의 효과성

1.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장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 지역특성 및 관련사업 연계 등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② 사업추진 기간단축
③ 사업주체(지자체,기본계획수립자,주민)간 갈등조정
④ 다양한 주체(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참여기회 확대
⑤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가능
⑥ 기타( )

2.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후 단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 기존(총괄계획가 도입 전) 기본계획과 차이 없음
② 사업추진 기간연장
③ 사업주체(지자체,기본계획수립자,주민)간 갈등확대
④ 기타( )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의 효율성

3. 적절한 지역총괄계획가 선정(위촉)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시범사업(2013년), 지역총괄계획가 위촉시기: ( )년 ( )월 ( )일
실무계획가 위촉시기: ( )년 ( )월 ( )일

4.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 활동기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기타( )

5. 지역총괄계획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시 · 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 자문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개별단위)신청 및 관리
③ 포괄보조 5개년 사업 총괄 관리
④ 타 부처와 연계사업 발굴 및 관리
⑤ 기타( )

6. 1개 시·군당, 지역총괄계획가(실무계획가 포함)의 적정 구성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6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6-1. 1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업무추진 용이 ② 인건비절감 ③ 전문식견의 신속한 의견반영
④ 기타( )

6-2. 1인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전문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6-3. 1인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분야의 경력(현장경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7년 ④ 7년-9년 ⑤ 9년 이상

※6번 문항에서 ②,③,④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6-4. 2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독단적 의견반영 방지
②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③ 기타( )

6-5. 2인 이상으로 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전문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 니까?
( )

6-6. 2인 이상으로 할 경우, 바람직한 농촌지역개발분야의 경력(현장경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7년 ④ 7년-9년 ⑤ 9년 이상

7. 지역총괄계획가의 적정한 자격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 업무지침(3-3-1)
제3절 총괄계획가 자격 및 운영기간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②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자와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① 현재 자격조건 유지
② 기타( )

8. 바람직한 지역총괄계획가의 선정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해당 지자체 위촉(현행)
②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및 위촉
③ 해당 지자체 선정 및 위촉
④ 기타( )

9.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형태 및 적정 활동 빈도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1. (업무형태) ① 상근직 ② 비상근(현 체제) ③ 기타( )
9-2. (활동빈도수) ① 월 2회 ② 월 4회 ③ 월 6회 ④ 월 8회
⑤ 기타( )

10. 지역총괄계획가의 1회 활동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재 활동비 유지 ② 개선필요

※10번 문항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0-1.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활동비(자문비, 회의비) 구분이 모호
② 기타 ( )

<실무계획가>

11. 실무계획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11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1-1. 실무계획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행정업무보좌
②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③ 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④ 기타( )

12. 귀하의 지자체는 실무계획가를 어떠한 역할을 위해 위촉하셨습니까? …… ( )
① 총괄계획가의 행정업무보좌
② 총괄계획가와 다른 전문분야로서 전문지식 보완
③ 총괄계획가 부재 시 업무대행
④ 기타(

13. 귀하의 지자체는 누구의 추천을 받아 실무계획가를 위촉하셨습니까? …… ( )
① 지역총괄계획가 추천
② 주변 전문가의 추천
③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서
④ 기타( )

14. 업무지침 상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현 체제유지(별도의 자격조건없음)
② 별도의 자격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14번 문항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4-1. 실무계획가의 자격조건은? ( )
① 총괄계획가와 동일
② 농어촌 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실무경력(현장경험)이 있는 자
③ 기타 ( )

15.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15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5-1.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에 총괄계획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포함되어야 한다
(사유:)

② 포함되지 말아야한다
(사유:)

▣ 총괄계획가 제도 만족도 및 제도 개선사항

<총괄계획가 만족 및 제도 개선사항>

16. 총괄계획가 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번 문항에서 ④,⑤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6-1. 불만족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ex: 총괄계획가 제도관련 행정절차 및 내용관련 사항, 총괄계획가 업무 및 태도 등에 대한 사항, 총괄계획가 시범사업관련 워크숍 및 교육에 대한 사항 등

17.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의견공유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17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7-1. 의견공유창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온라인 커뮤니티(홈페이지, 블로그 등)
② 유선전화
③ e-mail
④ 정기적인 회의
⑤ 컨트롤 타워 자문
⑥ 기타( )

18. 향후 총괄계획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둔다면 컨트롤 타워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① 사업 발주방식에 대한 지원 및 자문(기본계획, SW, 경관계획 수립 발주 등)
②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대한 자문(기본계획단계의 내용 수준범위 등)
③ 총괄계획가 위촉을 위한 전문가 풀 제공

④ 백서 발간
⑤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⑥ 지속적인 워크샵 운영 및 개선사항 도출
⑦ 총괄계획가 교육
⑧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
⑨ 기타( )

19.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필요하다
(사유:)
② 필요하지 않다
(사유:)

※번 문항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들의 경우만,
19-1. 적절한 모니터링 시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 1회
② 분기별 1회
③ 사업단계별 1회
④ 기타( )

20. 향후 지역총괄계획가를 활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② 없다
(사유:)

21. 총괄계획가 제도 관련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일반사항

• 소속	시(군) 과(팀)
• 담당업무	
• 농어촌지역개발 업무관련담당기간	약 ( )년 ( )개월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농촌 마을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총괄계획가 운용 실태평가 및 향후 발전모델 연구	
발행일	2013. 12
발행인	박 정 환
발행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안로 870번지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